고 창 군

군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군 보

선람	기관(부서)의 장

제673호 2023. 2. 15.(수)

【규 칙】

○ 고창군 규칙 제1212호 고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1

○ 고창군 규칙 제1213호 고창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30

【고 시】

○ 고창군 고시 제2023-23호 고창 군계획시설(홍덕공원) 조성계획 변경(경미한 변경)에 따른 지형도면고시 32

○ 고창군 고시 제2023-27호 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 (변경)지정 공고 36

【공 고】

○ 고창군 공고 제2023-227호 고창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추가) 41

○ 고창군 공고 제2023-231호 주택건설공사 감리자(건축) 모집공고 47

○ 고창군 공고 제2023-250호 2023년 어업용 면세유 가격안정 지원사업 모집 공고 101

○ 고창군 공고 제2023-255호 고창군 아이돌봄지원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104

○ 고창군 공고 제2023-267호 공공하수도(하수관로) 사용개시 공고 111

회람								

발행 고 창 군(편집 행정지원과 ☎ 063-560-2326)

【공　　고】

○ 고창군 공고　제2023-277호 세대주명단 작성비용 공시　112

○ 고창군 공고　제2023-288호 고창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3

【휘　　보】

○ 2022 종합민원과 신축신고-114 (2023.2.8.)　(대산면 박동호)도로지정　118

고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고 창 군 수

2023년 2월 15일

고창군 규칙 제 1212 호

고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고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사 무 분 장 표(제3조관련)

국별	부서별		팀 사무	비고
	기획예산실	1.	군 행정전반에 관한 기획	
	기획예산실	2.	국정리제 대응	
	기획예산실	3.	정책개발 및 집행 점검	
	기획예산실	4.	정책개발과 관련된 용역 심사	
	기획예산실	5.	실 소관업무의 기획	
	기획예산실	6.	대통령·지사·군수 지시 사항	
	기획예산실	7.	군수공약사업	
	기획예산실	8.	국가예산	
	기획예산실	9.	홍보부처 등 홍보사업 관리	
	기획예산실	10.	지적재산권관련 업무 총괄	
	기획예산실	11.	고창군 캐릭터 관리	
	기획예산실	12.	통계자료의 심사·분석·공표	
	기획예산실	13.	인구동태 통계조사	
	기획예산실	14.	사업체기초통계조사 ·광업제조업·사회지표조사	
	기획예산실	15.	농림어업·서비스업 총조사, 산업 총조사, 인구주택총조사	
	기획예산실	16.	통계연보 발간·행정지도 제작·행정자료실 운영	
	기획예산실	17.	실 업무 종합기획·조정 및 예산회계·일반서무	
	기획예산실	18.	정부 3.0	
	기획예산실	19.	그 밖의 군정기획에 관한 사항	
	기획예산실	20.	예산편성	
	기획예산실	21.	예비비	
	기획예산실	22.	예산배정계획 수립 및 배정	
	기획예산실	23.	투자심사	
	기획예산실	24.	기금총괄	
	기획예산실	25.	중기지방재정계획	
	기획예산실	26.	특별교부세	
	기획예산실	27.	지방교부세 신청자료	
	기획예산실	28.	지방채	
	기획예산실	29.	예산의 성과관리	
	기획예산실	30.	주민참여예산	
	기획예산실	31.	지방보조금	
	기획예산실	32.	예산의 이·전용, 이체	
	기획예산실	33.	지방재정분석	
	기획예산실	34.	지방재정공시	
	기획예산실	35.	그 밖의 예산에 관한 사항	
	기획예산실	36.	감사계획 수립 및 시행	
	기획예산실	37.	자체감사	
	기획예산실	38.	공무원 징계, 소청, 소송에 관한 사항	
	기획예산실	39.	감사정보시스템 운영	
	기획예산실	40.	상급기관 감사 수감	
	기획예산실	41.	공직자 재산등록 업무 전반	
	기획예산실	42.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및 공무원행동강령	
	기획예산실	43.	군민감사관제 및 감사위원회 운영	
	기획예산실	44.	군민불편행정 민원 조사	
	기획예산실	45.	부패유발제도개선	
	기획예산실	46.	공직기강 감찰활동	
	기획예산실	47.	특별지시사항 처리	
	기획예산실	48.	상급기관 조사지시 이행	
	기획예산실	49.	상급기관 이첩민원 처리	
	기획예산실	50.	비위조사 및 예방활동	
	기획예산실	51.	진정 및 탄원 처리	
	기획예산실	52.	사정기관 통보사항 처리	
	기획예산실	53.	건설공사 기동감찰	
	기획예산실	54.	반부패,청렴정책 업무	
	기획예산실	55.	일상감사수행	
	기획예산실	56.	계약심사운영	
	기획예산실	57.	법무행정 종합계획	
	기획예산실	58.	조례·규칙의 심사 공포	
	기획예산실	59.	훈령·예규 등 중요문서 심사	
	기획예산실	60.	법제자료의 조사·수집·연구	
	기획예산실	61.	자치법규의 편찬	
	기획예산실	62.	소송사무 검토 및 통제	
	기획예산실	63.	소송사건의 연락 및 지도	
	기획예산실	64.	행정심판 지도	
	기획예산실	65.	지방분권 업무 총괄	
	기획예산실	66.	열린혁신 총괄 기획	
	기획예산실	67.	균형발전 총괄 기획	
	기획예산실	68.	행복실현정책 추진	
	기획예산실	69.	납세자보호관	
	기획예산실	70.	군의회 운영지원	

[별표 1]

사 무 분 장 표(제3조관련)

국별	부서별		팀 사무	비고
	기획예산실	71.	국제협력 및 대외협력 관련업무	
	기획예산실	72.	자치단체간 자매결연	
	기획예산실	73.	국외여행	
	기획예산실	74.	공무원노조·노사협의회 업무	
	기획예산실	75.	갈등관리	
	기획예산실	76.	군정 주요업무 심사분석 및 확인평가	
	기획예산실	77.	공무원 성과평가제 운영(BSC 운영)	
	기획예산실	78.	정책실명제	
	기획예산실	79.	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 업무 총괄	
	기획예산실	80.	행정규제정비	
	기획예산실	81.	지방자치단체 규제등록 및 관리 총괄	
	기획예산실	82.	기업 등 지역현장 규제애로 발굴 및 제도개선	
	기획예산실	83.	지방자치단체 규제완화 추진실적 평가 대응	
	기획예산실	84.	상위법령과 불일치한 자치법규 등 발굴 및 개선	
	기획예산실	85.	중앙부처 법령 규제개선 건의 과제 발굴	
	종합민원실	1.	민원창구운영 및 환경개선	
	종합민원실	2.	생활민원 시책 및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	
	종합민원실	3.	민원접수(고충·단순·복합·즉결그 밖에 등) 및 여권접수대행	
	종합민원실	4.	주민등록·인감·외국인등록사실증명 발급	
	종합민원실	5.	고창군 홈페이지 민원정보센터 운영	
	종합민원실	6.	전자민원 G4c 운영(어디서나 민원처리),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종합민원실	7.	외국인관련 조사	
	종합민원실	8.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및 사용승인	
	종합민원실	9.	건축허가(신고) 및 사용승인	
	종합민원실	10.	건축공사현장 시공지도	
	종합민원실	11.	각종 건축관련 통계조사	
	종합민원실	12.	건축사 대행업무 접검	
	종합민원실	13.	건축행정 건실화 및 건축행정정보 전산운영(AIS)	
	종합민원실	14.	지방건축위원회관리	
	종합민원실	15.	건축물대장 작성및 관리	
	종합민원실	16.	건축물대장 발급	
	종합민원실	17.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종합민원실	18.	국민주택용자금관리	
	종합민원실	19.	공동주택 관리	
	종합민원실	20.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	
	종합민원실	21.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	
	종합민원실	22.	건축 임대사업자 등록 및 관리	
	종합민원실	23.	불법건축물 지도 단속	
	종합민원실	24.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	
	종합민원실	25.	전원마을 조성계획 수립 및 시행	
	종합민원실	26.	주거급여 업무	
	종합민원실	27.	주거현물급여 주택 재보수 사업	
	종합민원실	28.	농어촌장애인 주택 재보수 사업	
	종합민원실	29.	저소득계층 전세자금 지원사업	
	종합민원실	30.	저소득계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종합민원실	31.	이동식 주택지원사업	
	종합민원실	32.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종합민원실	33.	지적측량기준점관리 및 지적측량결사	
	종합민원실	34.	지적재조사 사업	
	종합민원실	35.	토지이동신청 지적공부정리 및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종합민원실	36.	지적공부 열람 및 등본발급	
	종합민원실	37.	지적통계관리 및 국토정보센터 운영	
	종합민원실	38.	법인 이닌 사단·재단의 등록번호부여	
	종합민원실	39.	토지(임야)대장 소유권 변동사항 정리	
	종합민원실	40.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 운영 총괄(서버관리)	
	종합민원실	41.	지적(임야)도 전산자료 관리	
	종합민원실	42.	공간정보시스템(GIS) 구축 및 관리	
	종합민원실	43.	공간정보 보안관리	
	종합민원실	44.	지적서고 운영·관리 및 지적공부 보존·관리	
	종합민원실	45.	지형지물 및 국가기준측량원표 조사,관리	
	종합민원실	46.	도로명 주소부여 및 접용지원	
	종합민원실	47.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운영	
	종합민원실	48.	고창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종합민원실	49.	개별공시지가 결정 및 이의신청 처리	
	종합민원실	50.	개발이익환수제 운영	
	종합민원실	51.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종합민원실	52.	지가정보 관련기관 제공	
	종합민원실	53.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발급	
	종합민원실	54.	부동산중개업소 지도·감독	
	종합민원실	55.	부동산실명제운영	

[별표 1]

사 무 분 장 표(제3조관련)

국별	부서별	팀 사무		비고
	종합민원실	56.	토지거래규제	
	종합민원실	57.	개별공시지가확인원 발급	
	종합민원실	58.	부동산거래계약서 접인	
	종합민원실	59.	부동산실거래 업무 전반	
	종합민원실	60.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운영·관리	
	종합민원실	61.	부동산 거래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종합민원실	62.	외국인 토지관리업무	
	종합민원실	63.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운영·관리	
	종합민원실	64.	개발행위 신고허가 및 지도감독	
	종합민원실	65.	농지전용 신고허가에 관한 처리	이관
	종합민원실	66.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협의	이관
	종합민원실	67.	농지조성비 및 부과금 부과·징수	이관
	종합민원실	68.	배출업소 인허가(폐수, 기타수질)	이관
	종합민원실	69.	환경오염물질(대기,소음진동)배출시업장 인허가	이관
	종합민원실	70.	가축분뇨 재활용시설 인허가	이관
	종합민원실	71.	가축분뇨 관련 영업허가	이관
	종합민원실	72.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련 영업허가	이관
	종합민원실	73.	오수처리시설 설치 신고에 관한 처리	이관
	종합민원실	74.	가축분뇨배출시설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처리	이관
	종합민원실	75.	분뇨수집운반업 허가	이관
	종합민원실	76.	개인하수처리시설 시설관리업 인허가	이관
	종합민원실	77.	산지전용 허가 및 협의 신고처리	이관
	산림해양경제과	1.	과 업무 종합기획·조정 및 예산회계·일반서무	
	산림해양경제과	2.	실업대책 종합기획	
	산림해양경제과	3.	노정업무 및 노동조합 건전육성	
	산림해양경제과	4.	직업소개소 지도·감독	
	산림해양경제과	5.	공공근로사업 추진	
	산림해양경제과	6.	청년취업2000사업	
	산림해양경제과	7.	일자리지원센터 및 취업정보센터 운영 등	
	산림해양경제과	8.	일자리공시제, 지역맞춤형 지원사업	
	산림해양경제과	9.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추진	
	산림해양경제과	10.	사회적기업, 사회적 경제 업무	
	산림해양경제과	11.	마을기업, 마을공방, 마을공동체 사업	
	산림해양경제과	12.	청년정책 관련업무 전반	
	산림해양경제과	13.	창업 관련업무 전반	
	산림해양경제과	14.	관내 기업인 애로해소대책 수립	
	산림해양경제과	15.	관내 기업체 산업인력 수급 대책 강구	
	산림해양경제과	16.	중소기업육성기금지원	
	산림해양경제과	17.	선도기업 및 유망중소기업 육성 지원	
	산림해양경제과	18.	투자유치 활성화 종합대책 수립	
	산림해양경제과	19.	국내외 기업 유치	
	산림해양경제과	20.	산업단지내 기업 유치	
	산림해양경제과	21.	농공단지 시설 유지 관리	
	산림해양경제과	22.	농공단지 입주 계약	
	산림해양경제과	23.	신규 농공단지 조성 및 분양	
	산림해양경제과	24.	창업지업계획 승인 및 완료신고 처리	
	산림해양경제과	25.	공장설립 승인 및 완료신고 처리	
	산림해양경제과	26.	이전기업 지원 및 관리	
	산림해양경제과	27.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	
	산림해양경제과	28.	기업유치관련 집단민원 처리	
	산림해양경제과	29.	지역경제 활성화대책 추진	
	산림해양경제과	30.	저축업무 및 금융지원 지도·감독	
	산림해양경제과	31.	물가관리	
	산림해양경제과	32.	소비자 보호 관련 업무	
	산림해양경제과	33.	통신,방문판매업 관련 업무	
	산림해양경제과	34.	공산품, 원산지, 위조상품 지도·감독에 관한 업무	
	산림해양경제과	35.	대부업, 복권업 관련 업무	
	산림해양경제과	36.	담배소매업 관련 업무	
	산림해양경제과	37.	과학기술 진흥육성에 관한 업무	
	산림해양경제과	38.	시장시설현대화 사업 및 활성화 사업	
	산림해양경제과	39.	전통시장 관리 및 지원	
	산림해양경제과	40.	상인회 및 대규모 점포에 관한 업무	
	산림해양경제과	41.	소상공인 지원 관련 업무	
	산림해양경제과	42.	BUY 전북 관련업무	
	산림해양경제과	43.	무등록 제조업체 파악 및 등록추진	
	산림해양경제과	44.	액화석유가스 인·허가 및 관리	
	산림해양경제과	45.	고압가스 인·허가 및 관리	
	산림해양경제과	46.	도시가스 공급추진 및 관리	
	산림해양경제과	47.	석유판매업 등록 신고 및 관리	
	산림해양경제과	48.	계량기 검사 및 관리	

[별표 1]

사 무 분 장 표(제3조관련)

국별	부서별	팀 사무		비고
	산림해양경제경제과	49.	신·재생에너지 관련업무	
	산림해양경제경제과	50.	지역에너지 관련업무	
	산림해양경제경제과	51.	열관리 업무	
	산림해양경제경제과	52.	전기일반	
	산림해양경제경제과	53.	석연탄 제조업 관리 및 지원 업무	
	산림해양경제경제과	54.	농어촌 전기공급 관련업무	
	산림해양경제경제과	55.	광업권 설정 공익협의 업무	
	산림해양경제경제과	56.	산업단지 조성사업 준공인가 업무	
	산림해양경제경제과	57.	사후환경 영향평가 실시(개발 중, 개발 후)	
	산림해양경제경제과	58.	산업단지 관련 국가예산 발굴 및 예산 확보	
	산림해양경제경제과	59.	산업단지 개발계획 관련 중앙부처, 도청 및 유관기관 협의 업무	
	산림해양경제경제과	60.	산업단지 내 영농보상 협의 업무	
	산림해양경제경제과	61.	산업단지 관련 주민 동향 및 민원해결 업무	
	산림해양경제경제과	62.	산업단지 단계별 준공, 정산 및 시설물 인계, 인수 업무	
	산림해양경제경제과	63.	산업단지 조성사업 지적확정측량 업무	
	산림해양경제경제과	64.	산업단지 전용 진입도로 개설 사업 공사 업무	
	산림해양경제경제과	65.	산업단지 분쟁 관련 행정심판, 소송 등 송사업무	
	산림해양경제경제과	66.	복분자특화농공단지 시설유지 관리	
	산림해양경제경제과	67.	복분자특화농공단지 기업유치 및 공장등록	
	산림해양경제경제과	68.	노출대교 건설	
	산림해양경제경제과	69.	연계 교통망 구축	
	산림해양경제경제과	70.	전력에너지4차산업클러스터조성	
	산림해양경제경제과	71.	생태복합관광지조성(심원옐전)	
	산림해양경제경제과	72.	노출전망대 설치	
	산림해양경제경제과	73.	치유생태관광클러스터 조성	
	산림해양경제경제과	74.	서해안 정도 국가계획반영	
	산림해양경제경제과	75.	고향사랑 기부제	
	산림해양경제경제과	76.	인구정책	
	산림해양경제경제과	77.	관계인구 정책	
	산림해양경제경제과	78.	지역내 폐쇄산	
	행정지원과	1.	본청·직속기관·사업소·읍·면 지도·감독	
	행정지원과	2.	기반행정 육성	
	행정지원과	3.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	
	행정지원과	4.	반상회 운영	
	행정지원과	5.	행정실적 종합평가	
	행정지원과	6.	각종위원회 관리	
	행정지원과	7.	지역여론관리	
	행정지원과	8.	사회봉사명령 집행	
	행정지원과	9.	고창비전다짐의날, 시무식, 종무식 운영	
	행정지원과	10.	장록회(식당·매점)운영	
	행정지원과	11.	직장금고 운영	
	행정지원과	12.	기록관 관리	
	행정지원과	13.	행정사 업무처리	
	행정지원과	14.	공인등록 및 폐기·대장정리	
	행정지원과	15.	군수,부군수,과·팀·소장,읍·면장 사무인계 인수	
	행정지원과	16.	군 산하 공무원 복무관리	
	행정지원과	17.	당직운영	
	행정지원과	18.	선거 및 주민투표	
	행정지원과	19.	행정구역 개편·광역행정	
	행정지원과	20.	행정서비스현장 총괄지도 감독	
	행정지원과	21.	시장·군수 정책협의회	
	행정지원과	22.	군민의장	
	행정지원과	23.	회의실, 상황실운영	
	행정지원과	24.	일제강점하 피해조사 및 접수 처리	
	행정지원과	25.	과거사 진상조사 및 접수 처리	
	행정지원과	26.	군정시책 발굴 및 추진	
	행정지원과	27.	유관기관장 간담회 운영	
	행정지원과	28.	군 본청 및 산하기관 업무검열	
	행정지원과	29.	재외군민회 및 향우회 관리	
	행정지원과	30.	과관소장, 읍면장 등 각종간부회의(주간,월중업무 등) 지원	
	행정지원과	31.	주민과의 대화 운영	
	행정지원과	32.	군 산하기관 태극기 관리	
	행정지원과	33.	공무원 후생복지	
	행정지원과	34.	행정정보공개 접수 창구 운영	
	행정지원과	35.	새마을운동고창군지회, 바르게살기고창군협의회등 관련 단체 업무	
	행정지원과	36.	격십자 회비수납	
	행정지원과	37.	송년 및 새해 맞이 행사(해넘이, 해맞이)	
	행정지원과	38.	타 부서에 속하지 않는 업무	
	행정지원과	39.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사업 총괄	
	행정지원과	40.	공무원 임용·징계·소청 업무 전반	

[별표 1]

사 무 분 장 표(제3조관련)

국별	부서별		팀 사무	비고
	행정지원과	41.	인사(징계)위원회·조직관리위원회 설치 운영	
	행정지원과	42.	공무원 근무평정 및 성과상여금 제도 운영	
	행정지원과	43.	공무원 훈·포장·표창	
	행정지원과	44.	공무원 교육·훈련	
	행정지원과	45.	공무직근로자 채용 및 인사, 기간제근로자 채용 협의	
	행정지원과	46.	기구·정원 및 조직관리 업무	
	행정지원과	47.	기준인건비제 및 재정영향분석 관리	
	행정지원과	48.	자치단체 기구·인력 모델설정 및 중기기본 인력운용계획의 수립	
	행정지원과	49.	인사행정정보시스템 연계 관리	
	행정지원과	50.	공무원 연금 및 대한지방행정공제회 업무 전반	
	행정지원과	51.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행정지원과	52.	4대보험 관리(국민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국민연금)	
	행정지원과	53.	지방이양추진위원회 업무전반 협력	
	행정지원과	54.	군정홍보계획 수립시행	
	행정지원과	55.	홍보자료 수집·제공 관영	
	행정지원과	56.	홍보매체제 보급·육성	
	행정지원과	57.	군보·군정 신문 발간	
	행정지원과	58.	국정업무에 관한 홍보	
	행정지원과	59.	국제협력 및 대외협력관련 홍보	
	행정지원과	60.	홍보·광고 업무에 관한 사항	
	행정지원과	61.	보도자료 게재	
	행정지원과	62.	한국지역진흥재단 운영	
	행정지원과	63.	그 밖의 군정홍보에 관한 사항	
	행정지원과	64.	정보통신 중합계발계획 수립 및 시행	
	행정지원과	65.	행정종합정보 고도화사업 및 전자민원서비스 지원	
	행정지원과	66.	지역정보화촉진사업 발굴 및 추진	
	행정지원과	67.	정보화 마을조성 운영	
	행정지원과	68.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통신보안업무 추진	
	행정지원과	69.	전자문서, 문서유통시스템 운영 관리	
	행정지원과	70.	행정전자서명 운영 관리	
	행정지원과	71.	인터넷 홈페이지, 웹메일시스템 운영	
	행정지원과	72.	공무원 및 주민 정보화 교육 추진	
	행정지원과	73.	행정전산장비 및 업무용 S/W 보급관리	
	행정지원과	74.	공통기반시스템 구축 및 운영관리	
	행정지원과	75.	부서별 정보화사업 협의조정 및 지원	
	행정지원과	76.	모사전송기를 이용한 문서사무 처리	
	행정지원과	77.	본청 음향시설 및 옥외행사용 방송기기 관리 및 운영	
	행정지원과	78.	정보통신통합망 운영에 관한 사항	
	행정지원과	79.	행정정보통신시설 및 회선 유지관리	
	행정지원과	80.	행정 및 지역초고속망 구축확대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행정지원과	81.	정보통신 민원사무처리	
	행정지원과	82.	TV난시청 해소 관련 업무 중재	
	행정지원과	83.	군정 홍보를 위한 전광판 운영	
	행정지원과	84.	교환실 및 팩스실 운영	
	행정지원과	85.	데이터기반행정 업무추진	
	행정지원과	86.	공공데이터 발굴, 제공, 품질관리	
	행정지원과	87.	공공와이파이 구축 및 운영관리	
	행정지원과	88.	영상회의시스템 운영관리	
	행정지원과	89.	영상정보처리 통합관제센터 운영	
	행정지원과	90.	CCTV설치 및 유지보수	
	행정지원과	91.	영상정보 보호 및 보안대책 수립	
지치행정국	관광산업과	1.	관광진흥 기본계획 수립	
지치행정국	관광산업과	2.	관광상품개발	
지치행정국	관광산업과	3.	관광객 통계 및 모니터링·관광안내·관광객 유치에 관한 사항	
지치행정국	관광산업과	4.	관광진흥법에 의한 업체 등록·지도·관리	
지치행정국	관광산업과	5.	국내외 관광전·설명회·박람회	
지치행정국	관광산업과	6.	관광숙박업소 관리	
지치행정국	관광산업과	7.	관광여행사 등록 및 관리	
지치행정국	관광산업과	8.	대표축제(고창모양성제) 추진	
지치행정국	관광산업과	9.	지역축제 평가용역 및 고창군축제추진위원회 운영관리	
지치행정국	관광산업과	10.	문화관광해설사 및 통역안내원 운영관리	
지치행정국	관광산업과	11.	관광안내소 등 운영관리	
지치행정국	관광산업과	12.	한옥 및 전통옛거리 체험마을 관리	
지치행정국	관광산업과	13.	관광협정회 사업 추진	
지치행정국	관광산업과	14.	관광홍보(팸투어 등) 및 관광마케팅사업 추진	
지치행정국	관광산업과	15.	서남권 관광행정 협의회 공동사업 운영	
지치행정국	관광산업과	16.	유원시설업 및 기타유원시설업 관리	
지치행정국	관광산업과	17.	전라북도시공마을축제 및 무장읍성 축제 추진	
지치행정국	관광산업과	18.	관광지 수용태세 개선사업 추진	
지치행정국	관광산업과	19.	관광안내체계 구축지원사업 추진	

[별표 1]

사 무 분 장 표(제3조관련)

국별	부서별		팀 사무	비고
자치행정국	관광산업과	20.	마이스산업 및 웰니스 관광사업 추진	
자치행정국	관광산업과	21.	대형음식점시설개선사업 추진	
자치행정국	관광산업과	22.	스마트관광 사업추진	
자치행정국	관광산업과	23.	관광개발사업 계획수립	
자치행정국	관광산업과	24.	관광개발 관련사업 전반	
자치행정국	관광산업과	25.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 추진	
자치행정국	관광산업과	26.	관광자원화사업 추진	
자치행정국	관광산업과	27.	복분자유원지 개발 관리	
자치행정국	관광산업과	28.	석정온천 관광지 개발·관리	
자치행정국	관광산업과	29.	세계문화유산 고인돌 정비계획 수립	
자치행정국	관광산업과	30.	세계문화유산 고인돌 보존관리	
자치행정국	관광산업과	31.	세계문화유산 고인돌 학술사업	
자치행정국	관광산업과	32.	세계문화유산 고인돌 활용 및 홍보	
자치행정국	관광산업과	33.	세계문화유산 도시협의회 및 도시기구 업무추진	
자치행정국	관광산업과	34.	고인돌박물관 국가귀속문화재 보관처 운영 및 관리	
자치행정국	관광산업과	35.	고인돌박물관 내외부 전시 및 관리	
자치행정국	관광산업과	36.	고인돌공원 정비에 관한 사항	
자치행정국	관광산업과	37.	고인돌공원 유원지설 관리	
자치행정국	관광산업과	38.	고인돌공원 및 고인돌박물관 운영 및 관리	
자치행정국	관광산업과	39.	고인돌공원 탐방객 관리 및 질서유지, 입장료 징수	
자치행정국	관광산업과	40.	죽림천자전거길마을 운영 및 관리	
자치행정국	관광산업과	41.	세계자연유산 고창갯벌 관리 계획 수립 및 시행	
자치행정국	관광산업과	42.	고창갯벌 세계유산지구 지정	
자치행정국	관광산업과	43.	세계자연유산 고창갯벌 보존관리 활동 실태 점검	
자치행정국	관광산업과	44.	갯벌 세계자연유산 보전본부(지역센터) 건립	
자치행정국	관광산업과	45.	세계자연유산 고창갯벌 보존관리 사업 추진	
자치행정국	관광산업과	46.	세계자연유산 고창갯벌 홍보 및 활용 사업 추진	
자치행정국	관광산업과	47.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업무	
자치행정국	관광산업과	48.	세계유산 관련 위원회 운영	
자치행정국	관광산업과	49.	관리계획 수립 및 발굴과제 추진 및 관리	
자치행정국	관광산업과	50.	로고 관리 및 브랜드 활용 사업	
자치행정국	관광산업과	51.	국내외 네트워크 협력사업	
자치행정국	관광산업과	52.	MAB한국위원회 및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업무협력	
자치행정국	관광산업과	53.	정기평가 업무	
자치행정국	관광산업과	54.	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자치행정국	관광산업과	55.	5개 핵심지역 학술조사 및 모니터링	
자치행정국	관광산업과	56.	생물권보전지역 주민교육 사업	
자치행정국	관광산업과	57.	생물권보전지역 학생교육 지원사업	
자치행정국	관광산업과	58.	생물권보전지역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	
자치행정국	관광산업과	59.	운곡습지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	
자치행정국	관광산업과	60.	민간협의체 지원사업(사)고창군생태환경보전협의회)	
자치행정국	관광산업과	61.	기타 생태홍보와 관련된 업무	
자치행정국	관광산업과	62.	기타 생물권보전지역 보전/활용/지원에 관한 업무	
자치행정국	관광산업과	63.	운곡습지 생태관광지 조성사업	
자치행정국	관광산업과	64.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 추진	
자치행정국	관광산업과	65.	운곡습지 보호지역 관리	
자치행정국	관광산업과	66.	인천강 하구 습지 보호지역 관리	
자치행정국	관광산업과	67.	동림저수지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자치행정국	관광산업과	68.	노동저수지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자치행정국	관광산업과	69.	인천강 병바위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자치행정국	관광산업과	70.	운곡습지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자치행정국	관광산업과	71.	선사문화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자치행정국	관광산업과	72.	예향천리마실길 관리 및 운영	
자치행정국	관광산업과	73.	전북 1000리길 활성화 사업	
자치행정국	관광산업과	74.	고창생물권보전지역관리센터 관리 및 운영	
자치행정국	관광산업과	75.	고창군지역환경교육센터 운영 지원	
자치행정국	관광산업과	76.	인천강 기수역 훼손지 복원사업	
자치행정국	관광산업과	77.	람사르습지도시(운곡)업무	
자치행정국	관광산업과	78.	고창운곡습지생태관광협의회 운영 지원	
자치행정국	관광산업과	79.	습지보호지역 주민 역량 강화 사업	
자치행정국	관광산업과	80.	자연환경해설사 및 에코매니저 운영 지원	
자치행정국	관광산업과	81.	운곡습지 생태관광지 지정 육성 사업	
자치행정국	관광산업과	82.	운곡습지 유스호스텔 관리 및 운영	
자치행정국	관광산업과	83.	운곡습지 탐방열차 관리 및 운영	
자치행정국	관광산업과	84.	운곡습지 생태체험학습장 관리 및 운영	
자치행정국	관광산업과	85.	운곡습지 생태공원 관리 및 운영	
자치행정국	관광산업과	86.	국가지질공원 탐방기반구축 공사	
자치행정국	관광산업과	87.	국가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	
자치행정국	관광산업과	88.	지질공원 교육·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자치행정국	관광산업과	89.	지오드림 프로그램 관리 및 운영	

[별표 1]

사 무 분 장 표(제3조관련)

국별	부서별		담당사무	비고
자치행정국	관광산업과	90.	지질공원 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	
자치행정국	관광산업과	91.	지질공원 해설사 관리 및 운영	
자치행정국	문화예술과	1.	국·과 업무 종합기획·조정 및 예산회계·일반서무	
자치행정국	문화예술과	2.	문화재 보존정책 수립	
자치행정국	문화예술과	3.	문화재 지정·해제(국가지정, 도지정, 향토문화유산 등)	
자치행정국	문화예술과	4.	문화재 사업조사(학술연구용역 등)	
자치행정국	문화예술과	5.	향토문화유산 위원회 운영,관리	
자치행정국	문화예술과	6.	무장현 관아와 읍성 유지관리	
자치행정국	문화예술과	7.	문화재 지정,보호구역 제초관리	
자치행정국	문화예술과	8.	중요목조문화재 안전경비인력 운영	
자치행정국	문화예술과	9.	문화재 특별관리인력 운영	
자치행정국	문화예술과	10.	무형문화재 보전 및 보호관리	
자치행정국	문화예술과	11.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및 전수활동 지원	
자치행정국	문화예술과	12.	향교 일요학교·석전대제·기로연 지원	
자치행정국	문화예술과	13.	매장문화재 무허가 발굴 및 반출행위 단속	
자치행정국	문화예술과	14.	천연기념물 보호관리(동물)	
자치행정국	문화예술과	15.	천연기념물 보호관리(식물)	
자치행정국	문화예술과	16.	문화재지역 등 불법현상변경 지도감독	
자치행정국	문화예술과	17.	문화재 매매업 허가 및 지도감독	
자치행정국	문화예술과	18.	매장문화재 보존·관리	
자치행정국	문화예술과	19.	문화재 발굴조사	
자치행정국	문화예술과	20.	전통사찰 지정,해제	
자치행정국	문화예술과	21.	비지정문화재 조사·관리	
자치행정국	문화예술과	22.	문화재 현상변경 등 인·허가 업무	
자치행정국	문화예술과	23.	고창읍성 운영 관리	
자치행정국	문화예술과	24.	고창읍성 관람료·주차료 징수	
자치행정국	문화예술과	25.	고창 유교문화체험관 운영 지원	
자치행정국	문화예술과	26.	문화재 돌봄사업	
자치행정국	문화예술과	27.	건축·개발행위 등 인·허가 관련 문화재 업무	
자치행정국	문화예술과	28.	문화재 활용사업	
자치행정국	문화예술과	29.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정비 및 시설 운영 관리	
자치행정국	문화예술과	30.	동학농민혁명 녹두대상제 운영	
자치행정국	문화예술과	31.	동학농민혁명기념행사	
자치행정국	문화예술과	32.	동학농민혁명 정신선양 및 학술진흥	
자치행정국	문화예술과	33.	농악전수관 운영지원	
자치행정국	문화예술과	34.	지역 문화예술 기본계획 수립	
자치행정국	문화예술과	35.	문화예술(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건축, 국악, 사진, 어문, 출판, 만화) 업무 총괄	
자치행정국	문화예술과	36.	지역문화진흥계획 수립 및 시행	
자치행정국	문화예술과	37.	문화콘텐츠 산업육성	
자치행정국	문화예술과	38.	지역문화예술사, 향토문화 시설 및 유적 관리	
자치행정국	문화예술과	39.	문화원, 한국예총(문인협회, 국악협회, 미술협회, 음악협회)고창지회,문화예술단체 활성화	
자치행정국	문화예술과	40.	음악산업, 게임산업, 영화 및 비디오에 관한 사항	
자치행정국	문화예술과	41.	인쇄산업, 출판문화산업, 저작권에 관한 사항	
자치행정국	문화예술과	42.	작은영화관 운영지원	
자치행정국	문화예술과	43.	문화복지, 지역문화(생활문화, 문화도시·지구 육성)활성화	
자치행정국	문화예술과	44.	고창학 정립 업무추진	
자치행정국	문화예술과	45.	생활문화센터 운영지원	
자치행정국	문화예술과	46.	전통사찰 보수·정비	
자치행정국	문화예술과	47.	중요목조문화재 방재시스템 설치 및 유지관리	
자치행정국	문화예술과	48.	향토문화유산 보수·정비	
자치행정국	문화예술과	49.	무장현 관아와 읍성 복원	
자치행정국	문화예술과	50.	문화재 재난·재해관리	
자치행정국	문화예술과	51.	문화재 지정,보호구역 토지매입 및 관리	
자치행정국	문화예술과	52.	문화재 안내표지판 설치	
자치행정국	문화예술과	53.	문화재 보수·정비(국가지정, 도지정)	
자치행정국	문화예술과	54.	문화재 종합정비계획 수립 및 기록화·정밀실측	
자치행정국	문화예술과	55.	고창 봉계리 정자 요지 정비사업(문화유적공원 조성)	
자치행정국	문화예술과	56.	고창·무장읍성 방재시스템 설치 및 유지관리	
자치행정국	문화예술과	57.	동학농민혁명 성지화 사업	
자치행정국	문화예술과	58.	공공도서관 신축 및 리모델링 조성 등	
자치행정국	문화예술과	59.	군립미술관 건립	
자치행정국	문화예술과	60.	문화유산 및 문화예술 관련 시설 확충	
자치행정국	문화예술과	61.	군립도서관 운영관리	
자치행정국	문화예술과	62.	성호도서관 운영관리	
자치행정국	문화예술과	63.	작은도서관 운영관리	
자치행정국	문화예술과	64.	선운초서문화관 시설관리	
자치행정국	문화예술과	65.	미당시문학관 시설관리	
자치행정국	문화예술과	66.	동리 선양사업 및 판소리 육성	
자치행정국	문화예술과	67.	동리국악당 운영 및 관리	
자치행정국	문화예술과	68.	판소리전수관 운영 및 관리	

[별표 1]

사 무 분 장 표(제3조관련)

국별	부서별	팀 사무		비고
자치행정국	문화예술과	69.	문화의 전당 운영 및 관리	
자치행정국	문화예술과	70.	판소리박물관 운영 및 관리	
자치행정국	문화예술과	71.	김소희, 서정주 평가 및 진혜선 평가터 관리	
자치행정국	문화예술과	72.	야외전통문화공간 시설관리	
자치행정국	문화예술과	73.	환경생태공원, 분수대 시설관리	
자치행정국	사회복지과	1.	보훈업무(보훈단체, 보훈행사, 현충시설 관리 등)	
자치행정국	사회복지과	2.	호국보훈수당 지원 및 관리	
자치행정국	사회복지과	3.	행려자 관리 및 무연고사망자 장제처리	
자치행정국	사회복지과	4.	재해구호(구호금품 및 임시주거시설, 전문인력교육)	
자치행정국	사회복지과	5.	자활지원계획 수립, 시행	
자치행정국	사회복지과	6.	자활사업 및 지역자활센터 지원 관리	
자치행정국	사회복지과	7.	사회복지기금(자활기금, 사회복지장학기금)	
자치행정국	사회복지과	8.	사회복지시설 및 법인 총괄	
자치행정국	사회복지과	9.	군민종합복지회관 운영 및 관리	
자치행정국	사회복지과	10.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수립 시행	
자치행정국	사회복지과	11.	사회복지전달체계 운영지원(교육 및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자치행정국	사회복지과	12.	사회복무요원 관리	
자치행정국	사회복지과	13.	외국인 관련 업무 총괄	
자치행정국	사회복지과	14.	사회서비스원 관련 업무	
자치행정국	사회복지과	15.	충효회 지원	
자치행정국	사회복지과	16.	생활공감정책 참여단 운영지원	
자치행정국	사회복지과	17.	코로나19 임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사업	
자치행정국	사회복지과	18.	과 업무 총괄기획, 조정 및 예산회계, 일반서무	
자치행정국	사회복지과	19.	면지역 작은 목욕탕 운영지원	
자치행정국	사회복지과	20.	면지역 공공빨래터 운영지원	
자치행정국	사회복지과	21.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계획 수립 및 평가	
자치행정국	사회복지과	22.	주민생활현장의 공공서비스 연계강화 사업	
자치행정국	사회복지과	23.	지역사회복지평가 총괄	
자치행정국	사회복지과	24.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및 평가	
자치행정국	사회복지과	25.	주민주도 마을복지계획 수립 및 실행지원	
자치행정국	사회복지과	26.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자치행정국	사회복지과	27.	이웃돕기(연말연시 위문금 모금 등)	
자치행정국	사회복지과	28.	자원봉사	
자치행정국	사회복지과	29.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	
자치행정국	사회복지과	30.	기부식품 제공사업 관련 업무	
자치행정국	사회복지과	31.	차상위계층 및 사회취약계층 지원	
자치행정국	사회복지과	32.	통합사례관리 및 공공부분 사례관리 연계협력	
자치행정국	사회복지과	33.	희망복지지원단 및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자치행정국	사회복지과	34.	복지자원 관리 및 민간서비스 연계	
자치행정국	사회복지과	35.	지역보호체계 운영	
자치행정국	사회복지과	36.	읍면 복지사업 지원 및 관리	
자치행정국	사회복지과	37.	긴급지원, 129콜센터	
자치행정국	사회복지과	38.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자치행정국	사회복지과	39.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관리	
자치행정국	사회복지과	40.	맞춤형급여(복지멤버십) 운영	
자치행정국	사회복지과	41.	복지급여대장자 신청조사 및 사후관리	
자치행정국	사회복지과	42.	기초생활수급자 등 복지급여 지급 업무	
자치행정국	사회복지과	43.	기초생활보장사업 및 생활보장위원회 구성 운영	
자치행정국	사회복지과	44.	의료급여 수급권자 관리 및 의료급여특별회계 운영 및 관리	
자치행정국	사회복지과	45.	의료급여 사례관리사업	
자치행정국	사회복지과	46.	의료급여 현금급여지원사업	
자치행정국	사회복지과	47.	의료급여 중증 및 희귀난치성 질환자 등 산정특례 등록 및 관리	
자치행정국	사회복지과	48.	의료급여 상한일수 관리에 관한 업무	
자치행정국	사회복지과	49.	의료급여 사후관리 및 권익구제에 관한 업무	
자치행정국	사회복지과	50.	노인복지 정책 기획	
자치행정국	사회복지과	51.	고창군노인복지관 운영 지원	
자치행정국	사회복지과	52.	대한노인회고창군지회 지원관리	
자치행정국	사회복지과	53.	경로당 운영 지원	
자치행정국	사회복지과	54.	기초연금사업	
자치행정국	사회복지과	55.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자치행정국	사회복지과	56.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자치행정국	사회복지과	57.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자치행정국	사회복지과	58.	고창군후모의집 지원관리	
자치행정국	사회복지과	59.	고창군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	
자치행정국	사회복지과	60.	고창군노인요양원 지원관리	
자치행정국	사회복지과	61.	노인학대 예방 교육 및 인권교육	
자치행정국	사회복지과	62.	결식 우려 노인 무료급식 지원	
자치행정국	사회복지과	63.	노인교실 지원관리	
자치행정국	사회복지과	64.	노인건강진단사업	
자치행정국	사회복지과	65.	노인복지관련 법인관리	

[별표 1]

사 무 분 장 표(제3조관련)

국별	부서별		팀 사무	비고
자치행정국	사회복지과	66.	노인복지(주거, 의료, 재가)시설 지원관리	
자치행정국	사회복지과	67.	독거노인 공동생활홈 서비스	
자치행정국	사회복지과	68.	자연장 설치 조성 및 운영 지원	
자치행정국	사회복지과	69.	고령자복지주택 관리	
자치행정국	사회복지과	70.	100세 어르신 만수무강 축하지원 사업	
자치행정국	사회복지과	71.	어버이 날, 노인의 날 및 경로의 달 행사	
자치행정국	사회복지과	72.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사업	
자치행정국	사회복지과	73.	어르신 이·미용비 지원 사업	
자치행정국	사회복지과	74.	거동불편 어르신 보행보조기 지원	
자치행정국	사회복지과	75.	장사정책 추진 및 행정지원(공설,공동묘지 관리, 불법묘지 단속 등)	
자치행정국	사회복지과	76.	소나무 청춘공방 운영 지원관리	
자치행정국	사회복지과	77.	노인복지관 설치·운영	
자치행정국	사회복지과	78.	경로당 설치 및 기능보강 사업	
자치행정국	사회복지과	79.	실종노인의 발생예방 및 찾기 사업	
자치행정국	사회복지과	80.	노인복지기금 운영관리	
자치행정국	사회복지과	81.	노인통합돌봄사업	
자치행정국	사회복지과	82.	장애인복지시설 지원 및 관리	
자치행정국	사회복지과	83.	장애인등록관리 및 관련 복지업무추진	
자치행정국	사회복지과	84.	장애인 단체 운영 지원	
자치행정국	사회복지과	85.	장애인자립지금	
자치행정국	사회복지과	86.	장애인일자리 사업	
자치행정국	사회복지과	87.	장애인 활동지원 및 장애아동재활치료	
자치행정국	사회복지과	88.	장애인복지관 운영관리 및 추진	
자치행정국	사회복지과	89.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관리 및 추진	
자치행정국	사회복지과	90.	장애인직업적응훈련시설 운영관리 및 추진	
자치행정국	사회복지과	91.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관리 및 추진	
자치행정국	사회복지과	92.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	
자치행정국	사회복지과	93.	장애인등 편의증진 관련 사업	
자치행정국	사회복지과	94.	장애인 급여 대상자 관리 및 지원	
자치행정국	사회복지과	95.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보급 및 관리	
자치행정국	사회복지과	96.	장애인 의료비 지원	
자치행정국	사회복지과	97.	여성장애인출산비용지원	
자치행정국	사회복지과	98.	장애아동가족지원사업	
자치행정국	사회복지과	99.	발달장애인지원사업	
자치행정국	사회복지과	100.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및 관리	
자치행정국	인재양성과	1.	장학재단 및 장학숙 관련 업무	
자치행정국	인재양성과	2.	초중고 학교의 지원·연계 사업 추진	
자치행정국	인재양성과	3.	전북대학교 고창캠퍼스 관련 업무	
자치행정국	인재양성과	4.	농생명과학과 등 인력양성지원	
자치행정국	인재양성과	5.	평생학습 지원	
자치행정국	인재양성과	6.	교양강좌 운영	
자치행정국	인재양성과	7.	진암장학금	
자치행정국	인재양성과	8.	여성정책 기획 수립	
자치행정국	인재양성과	9.	가족센터 운영관리, 다문화가정 지원	
자치행정국	인재양성과	10.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지원	
자치행정국	인재양성과	11.	한부모가정 지원 관리	
자치행정국	인재양성과	12.	여성평생교육 및 여성회관 운영 관리	
자치행정국	인재양성과	13.	새일센터 지원 관리	
자치행정국	인재양성과	14.	성별영향평가 과제 추진	
자치행정국	인재양성과	15.	가정폭력·성폭력, 성희롱 관련업무	
자치행정국	인재양성과	16.	양성평등기금 관리 운영	
자치행정국	인재양성과	17.	여성단체협의회 사업 지원 관리	
자치행정국	인재양성과	18.	여성친화도시 조성 및 가족친화인증 관리	
자치행정국	인재양성과	19.	아동지역연대	
자치행정국	인재양성과	20.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자치행정국	인재양성과	21.	드림스타트 운영 및 지원	
자치행정국	인재양성과	22.	아동 보건, 교육, 복지 프로그램 운영	
자치행정국	인재양성과	23.	취약계층 아동 발굴 및 서비스 연계	
자치행정국	인재양성과	24.	취약계층 아동 통합사례관리	
자치행정국	인재양성과	25.	자원발굴 및 연계	
자치행정국	인재양성과	26.	아동수당 지원	
자치행정국	인재양성과	27.	아동정책 영향평가	
자치행정국	인재양성과	28.	어린이날 행사 지원	
자치행정국	인재양성과	29.	결식아동 급식지원 및 관리	
자치행정국	인재양성과	30.	다자녀(셋째이) 출산가정 육아용품 지원	
자치행정국	인재양성과	31.	소년 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입양아동 지원 및 관리	
자치행정국	인재양성과	32.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	
자치행정국	인재양성과	33.	아동복지시설 지원 및 관리	
자치행정국	인재양성과	34.	지역아동센터 지원 및 관리	
자치행정국	인재양성과	35.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지원	

[별표 1]

사 무 분 장 표(제3조관련)

국별	부서별	팀 사무		비고
자치행정국	인재양성과	36.	무장모두놀이터 운영 지원	
자치행정국	인재양성과	37.	아동학대 예방 업무 전반	
자치행정국	인재양성과	38.	아동학대 피해아동, 행위자 등 조사 업무	
자치행정국	인재양성과	39.	아동학대 피해아동 즉각분리(일시보호) 등 보호조치	
자치행정국	인재양성과	40.	e아동행복지원시업 추진 업무	
자치행정국	인재양성과	41.	만3세 가정양육아동 안전 전수조사 업무	
자치행정국	인재양성과	42.	아동학대 고위험 아동 유관기관 합동 점검	
자치행정국	인재양성과	43.	아동학대 대응 유관기관(법원,병원, 경찰 등)협업	
자치행정국	인재양성과	44.	실종아동 보호 및 지원	
자치행정국	인재양성과	45.	요보호아동 점수 조사·보호조치	
자치행정국	인재양성과	46.	보호아동 개별 보호계획 수립 및 양육상황점검	
자치행정국	인재양성과	47.	보호종료아동 사후관리	
자치행정국	인재양성과	48.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사례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자치행정국	인재양성과	49.	보호아동 원가정복귀· 시설전입 등 보호변경	
자치행정국	인재양성과	50.	보호아동 면접교실 계획 수립 및 실시	
자치행정국	인재양성과	51.	보육사업 및 보육시설(어린이집) 관리	
자치행정국	인재양성과	52.	영아수당 및 가정양육수당 지원	
자치행정국	인재양성과	53.	공공형어린이집 운영지원	
자치행정국	인재양성과	54.	시간제보육 사업 추진	
자치행정국	인재양성과	55.	열린어린이집 선정 및 지원	
자치행정국	인재양성과	56.	어린이집 평가인증 시설 지원	
자치행정국	인재양성과	57.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	
자치행정국	인재양성과	58.	보육인한마음대회 행사 지원	
자치행정국	인재양성과	59.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자치행정국	인재양성과	60.	결혼중개업 관리	
자치행정국	인재양성과	61.	청소년보호 종합대책 수립·시행	
자치행정국	인재양성과	62.	청소년권익시설 위탁운영·청소년시설 신고처리	
자치행정국	인재양성과	63.	청소년 단체 지도·감독 및 청소년지도자 육성·교육	
자치행정국	인재양성과	64.	청소년 관련행사 개최·지원	
자치행정국	인재양성과	65.	어려운 청소년 보호·지원	
자치행정국	인재양성과	66.	청소년 진로·경력 상담 및 비행청소년 선도·보호	
자치행정국	인재양성과	67.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운영	
자치행정국	인재양성과	68.	청소년 출입제한 구역 지정·관리 및 유해업소표 목록관리	
자치행정국	인재양성과	69.	청소년 보호법 위반업소 현장지도·관리(시법경찰권 행사)	
자치행정국	인재양성과	70.	청소년수련관·문화의집·문화센터 운영관리	
자치행정국	인재양성과	71.	선운산유스호스텔 운영 관리	
자치행정국	인재양성과	72.	청소년 선도 육성사업	
자치행정국	인재양성과	73.	청소년프로그램 운영	
자치행정국	인재양성과	74.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자치행정국	인재양성과	75.	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위원회 운영 관리	
자치행정국	인재양성과	76.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관리	
자치행정국	환경위생과	1.	소관업무 종합기획·조정 및 예산회계·일반서무	
자치행정국	환경위생과	2.	고창군 환경정책계획수립	
자치행정국	환경위생과	3.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협의체운영	
자치행정국	환경위생과	4.	기후변화 적응 대책수립 및 추진	
자치행정국	환경위생과	5.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사업	
자치행정국	환경위생과	6.	고창자연미당 및 소생태공원 유지관리	
자치행정국	환경위생과	7.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	
자치행정국	환경위생과	8.	생태축 복원사업	
자치행정국	환경위생과	9.	생물자원보전시설 자연생태원 건립사업	
자치행정국	환경위생과	10.	어린이 생태체험공간 조성사업	
자치행정국	환경위생과	11.	노동저수지 생태문화길 조성사업	
자치행정국	환경위생과	12.	비산먼지 및 특정공사 인허가	
자치행정국	환경위생과	13.	수질오염총량제	
자치행정국	환경위생과	14.	환경측정망 및 토양오염관리	
자치행정국	환경위생과	15.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자치행정국	환경위생과	16.	환경개선특별회계관리	
자치행정국	환경위생과	17.	생태계 교란 생물 퇴치사업(핵심구역)	
자치행정국	환경위생과	18.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 계약사업(병짚존치사업)	
자치행정국	환경위생과	19.	생태(비오톱)지도 제작 및 활용	
자치행정국	환경위생과	20.	측정망운영(지하수,토양, 하천)	
자치행정국	환경위생과	21.	수렵면허 발급 및 관리	
자치행정국	환경위생과	22.	유해야생동물포획 허가	
자치행정국	환경위생과	23.	순환수렵장 설정운영	
자치행정국	환경위생과	24.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운영및 그린리더 양성	
자치행정국	환경위생과	25.	다중이용 시설 실내공기질 관리	
자치행정국	환경위생과	26.	배출업소 인허가(폐수, 기타수질)	
자치행정국	환경위생과	27.	환경오염물질(대기,소음진동)배출시업장 인허가	
자치행정국	환경위생과	28.	(자동차)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	
자치행정국	환경위생과	29.	환경정보 공개 시스템 관리	

[별표 1]

사 무 분 장 표(제3조관련)

국별	부서별	팀 사무		비고
지치행정국	환경위생과	30.	공공기관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추진	
지치행정국	환경위생과	31.	찾아가는 기후학교 운영	
지치행정국	환경위생과	32.	토양오염관리	
지치행정국	환경위생과	33.	야생동물 보호 및 응급구조	
지치행정국	환경위생과	34.	야생동물 밀렵단속	
지치행정국	환경위생과	35.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	
지치행정국	환경위생과	36.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	
지치행정국	환경위생과	37.	야생동물 피해보상지원	
지치행정국	환경위생과	38.	도란살리기 운동	
지치행정국	환경위생과	39.	대기배출원 관리 시스템 조사	
지치행정국	환경위생과	40.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 안전관리	
지치행정국	환경위생과	41.	빛공해 방지 및 관리	
지치행정국	환경위생과	42.	환경영향평가법	
지치행정국	환경위생과	43.	녹색제품 구매활성화	
지치행정국	환경위생과	44.	환경오염물질(폐수)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지치행정국	환경위생과	45.	대기·수질 기본 및 초과 배출부과금 부과	
지치행정국	환경위생과	46.	가축분뇨 배출시설 지도점검	수정
지치행정국	환경위생과	47.	가축분뇨 재활용시설 지도점검	수정
지치행정국	환경위생과	48.	가축분뇨 관련 지도점검	수정
지치행정국	환경위생과	49.	악취배출사업장 지도점검	
지치행정국	환경위생과	50.	명예환경감시원 위촉 및 운영	
지치행정국	환경위생과	51.	환경신문고 128 운영	
지치행정국	환경위생과	52.	환경오염사고 조사 및 현장조치	
지치행정국	환경위생과	53.	환경오염물질(대기,소음진동)배출사업장 지도점검	
지치행정국	환경위생과	54.	비산먼지 및 특정공사 사업장 지도점검	
지치행정국	환경위생과	55.	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점검	
지치행정국	환경위생과	56.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련 지도점검	수정
지치행정국	환경위생과	57.	기타수질오염원 사업장 지도점검	
지치행정국	환경위생과	58.	공중화장실 청결관리 및 지도점검	
지치행정국	환경위생과	59.	대기오염자동측정망 관리운영	
지치행정국	환경위생과	60.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단속	
지치행정국	환경위생과	61.	미세먼지 관리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	
지치행정국	환경위생과	62.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대응	
지치행정국	환경위생과	63.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	
지치행정국	환경위생과	64.	미세먼지 저감대책	
지치행정국	환경위생과	65.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 처리 및 지도점검	
지치행정국	환경위생과	66.	건설폐기물 처리업 인·허가 및 지도점검	
지치행정국	환경위생과	67.	건설폐기물처리계획 신고 처리 및 지도점검	
지치행정국	환경위생과	68.	지정·의료 폐기물처리계획 신고처리 및 지도점검	
지치행정국	환경위생과	69.	폐기물처리업 인·허가 및 지도점검	
지치행정국	환경위생과	70.	폐기물 재활용신고자 신고처리 및 지도점검	
지치행정국	환경위생과	71.	[illegible]	
지치행정국	환경위생과	72.	과대포장 지도점검	
지치행정국	환경위생과	73.	쓰레기 불법투기(불법소각) 지도단속	
지치행정국	환경위생과	74.	불법투기 CCTV 설치운영 및 관리	
지치행정국	환경위생과	75.	관리대장기기 등 신고 처리 및 지도점검	
지치행정국	환경위생과	76.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 수립	
지치행정국	환경위생과	77.	살수차 운행 및 관리	
지치행정국	환경위생과	78.	국토대청결운동	
지치행정국	환경위생과	79.	석면안전관리법 관련업무 및 석면피해보상	
지치행정국	환경위생과	80.	식품·첨가물 제조 가공업 관리	
지치행정국	환경위생과	81.	유통전문판매업소 관리	
지치행정국	환경위생과	82.	음식문화 개선 및 향토 모범업소관리	
지치행정국	환경위생과	83.	식품접객업소 관리	
지치행정국	환경위생과	84.	공중위생업소 관리	
지치행정국	환경위생과	85.	건강 기능식품 판매업 수입판매업관리	
지치행정국	환경위생과	86.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지치행정국	환경위생과	87.	집단급식소 관리 및 식중독예방관리	
지치행정국	환경위생과	88.	영업신고 민원접수처리	
지치행정국	환경위생과	89.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및 명예공중위생감시원 등 관리	
지치행정국	환경위생과	90.	식품이물 및 부정불량식품(1399), 허위,과대광고	
지치행정국	환경위생과	91.	식품진흥기금 관리	
지치행정국	환경위생과	92.	불법식품영업지도 단속	
지치행정국	환경위생과	93.	위생관련단체 및 자율지도 감독	
지치행정국	환경위생과	94.	위생업소 업주및 종사자 위생교육 지도	
지치행정국	환경위생과	95.	조리사, 이미용사 면허관리	
지치행정국	환경위생과	96.	식품소분판매업 관리	
지치행정국	환경위생과	97.	식품 수거검사 및 관리	
지치행정국	환경위생과	98.	위생용품 관리	
지치행정국	환경위생과	99.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관리	

[별표 1]

사 무 분 장 표(제3조관련)

국별	부서별	팀 사무		비고
자치행정국	환경위생과	100.	위생업소 음식점 시설개선	
자치행정국	환경위생과	101.	오수처리시설 설치 신고에 관한 처리	
자치행정국	환경위생과	102.	가축분뇨배출시설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처리	
자치행정국	환경위생과	103.	분뇨수집운반업 지도점검	
자치행정국	환경위생과	104.	수질관련 업무 전반	
자치행정국	환경위생과	105.	수질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	
자치행정국	환경위생과	106.	수질오염총량관리 배출삭감모니터링	
자치행정국	환경위생과	107.	전국오염원조사	
자치행정국	환경위생과	108.	가축분뇨처리 기본계획 수립	
자치행정국	환경위생과	109.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	
자치행정국	환경위생과	110.	옛도랑 복원사업	
자치행정국	환경위생과	111.	지하수 수질측정망 운영	
자치행정국	환경위생과	112.	수질오염사고 관리(유류유출, 공공수역 유출사고 등)	
자치행정국	환경위생과	113.	낚시금지구역 지정관리	
자치행정국	환경위생과	114.	특정토양오염관리대장시설 설치 인허가 및 지도점검	
자치행정국	환경위생과	115.	토양오염 측정망 운영	
자치행정국	환경위생과	116.	개인하수처리시설 시설관리업 지도점검	수정
자치행정국	환경위생과	117.	물놀이 지역(계곡, 하천) 수질검사	
자치행정국	환경위생과	118.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자율정검업소 운영관리	
자치행정국	환경위생과	119.	석면건축물 관리	
자치행정국	환경위생과	120.	석면해체공사 감리 인허가 및 관리	
자치행정국	환경위생과	121.	악취저감시설 지원사업	
자치행정국	환경위생과	122.	축산악취민원사업장 지도점검	
자치행정국	환경위생과	123.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자치행정국	환경위생과	124.	고창군 환경시설 운영관리 계획수립	
자치행정국	환경위생과	125.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	
자치행정국	환경위생과	126.	환경기초시설 운영인력 효율적 배치 및 관리	
자치행정국	환경위생과	127.	환경미화원 관리	
자치행정국	환경위생과	128.	환경기초시설 수수료반입 비용결정 및 운영조례 관리	
자치행정국	환경위생과	129.	폐기물처리장 주변지역 지원사업	
자치행정국	환경위생과	130.	정화조 청소안내 및 관리프로그램 운영	
자치행정국	환경위생과	131.	생활폐기물 쓰레기매립시설 증설추진	
자치행정국	환경위생과	132.	사용종료 매립장 관리	
자치행정국	환경위생과	133.	음식물류 처리시설 재보수	
자치행정국	환경위생과	134.	분뇨처리시설(인분) 재보수	
자치행정국	환경위생과	135.	생활폐기물 반입 및 복토매립	
자치행정국	환경위생과	136.	생활폐기물 제근 및 일일 반입현황 통계관리	
자치행정국	환경위생과	137.	침출수 하수종말처리장 이송처리	
자치행정국	환경위생과	138.	침출수 처리시설 기계 및 이송관로 점검	
자치행정국	환경위생과	139.	사업장 연막 및 분무방역	
자치행정국	환경위생과	140.	음식물류폐기물 음면 치량수거	
자치행정국	환경위생과	141.	음식물류폐기물 반입처리	
자치행정국	환경위생과	142.	음식물류 자원화시설 정기검사 실시	
자치행정국	환경위생과	143.	유기성 부산물 농기 처리운반	
자치행정국	환경위생과	144.	음식물류 탈리액 분뇨처리장 이송	
자치행정국	환경위생과	145.	음식물류 탈리액 처리를 위한 미생물 배양	
자치행정국	환경위생과	146.	음식물류 탈리액 PH조정 등 안정적인 수처리	
자치행정국	환경위생과	147.	재활용품 품목별 선별분리	
자치행정국	환경위생과	148.	재활용품 매각방법 검토 및 입찰	
자치행정국	환경위생과	149.	재활용품 매각 및 세외수입 징수결정	
자치행정국	환경위생과	150.	압축기, 감용기 등 재활용품 선별기 점검	
자치행정국	환경위생과	151.	분뇨반입(인분) 및 처리	
자치행정국	환경위생과	152.	분뇨처리(인분)수 하수종말처리장 연계처리	
자치행정국	환경위생과	153.	안정적인 분뇨처리(인분)를 위한 약품관리	
자치행정국	환경위생과	154.	탈질조, 질산화조 등 수질검사	
자치행정국	환경위생과	155.	분뇨케익 생산 및 농기 공급	
자치행정국	환경위생과	156.	폐가전제품, 폐형광등, 폐건지, 폐식용유, 폐타이어, 폐의약품 수거처리	
자치행정국	환경위생과	157.	영농폐기물 수거 처리	
자치행정국	환경위생과	158.	악취방지시설(탈취탑) 운영	
자치행정국	환경위생과	159.	제조작업 등 사업장 주변 정비	
자치행정국	환경위생과	160.	하천하구 쓰레기 수거	
자치행정국	환경위생과	161.	무단방치 쓰레기 수거	
자치행정국	환경위생과	162.	고창군 청소대책 수립	
자치행정국	환경위생과	163.	쓰레기 종량제 추진	
자치행정국	환경위생과	164.	음식물 종량제 정책수립 및 추진	
자치행정국	환경위생과	165.	음식물류폐기물 관리 및 감량의무화 사업장 관리	
자치행정국	환경위생과	166.	쓰레기 규격봉투 제작 및 관리	
자치행정국	환경위생과	167.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업무	
자치행정국	환경위생과	168.	미신고 재활용품 사업장(고물상)관리	
자치행정국	환경위생과	169.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	

[별표 1]

사 무 분 장 표(제3조관련)

국별	부서별	팀 사무		비고
자치행정국	재무과	1.	과 업무 종합기획·조정 및 예산회계·일반서무	
자치행정국	재무과	2.	지방세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제정 및 운영	
자치행정국	재무과	3.	지방세(도세·군세) 부과·징수·분납·징수유예·취소 결정 등 전반	
자치행정국	재무과	4.	지방세 세무조사(일반·법인)에 관한 전반	
자치행정국	재무과	5.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처리	
자치행정국	재무과	6.	지방세 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자치행정국	재무과	7.	지방세 세원자료 및 정보화 운영관리(전산실 운영)	
자치행정국	재무과	8.	지방세 세표·연감 및 지출예산(비과세 등) 운영·관리	
자치행정국	재무과	9.	지방세징운영 일반(세무신분증, 납세권리헌장, 부정방지 지도 등)	
자치행정국	재무과	10.	지방세 성실납세자 우대 및 지원	
자치행정국	재무과	11.	지방세 마을세무사 운영	
자치행정국	재무과	12.	과 일상경비출납 지출·운영 및 관리	
자치행정국	재무과	13.	일반회계·특별회계 지출 및 일상경비 교부, 정산, 심사	
자치행정국	재무과	14.	예산결산 및 지방재정연감 작성	
자치행정국	재무과	15.	국·도비 재배정예산 지출	
자치행정국	재무과	16.	공사·용역·물품구매·임차 및 계약관리, 실적증명 발급	
자치행정국	재무과	17.	판급자재 조달 및 계약관리	
자치행정국	재무과	18.	급여관리 및 연말정산 운영	
자치행정국	재무과	19.	복식부기 운영 전반	
자치행정국	재무과	20.	세입세출외현금 관리	
자치행정국	재무과	21.	통합 재무보고서 작성(결산총평, 통합재무제표·회계별 재무제표 등)	
자치행정국	재무과	22.	공유재산관리 종합계획 수립·시행	
자치행정국	재무과	23.	공유재산관리 및 권리보전(취득·처분·교환·대부·사용허가 등)	
자치행정국	재무과	24.	군청사 및 관사 시설 유지관리	
자치행정국	재무과	25.	본청·직속기관·사업소·읍·면 청사 신축 철거 및 시공 감독	
자치행정국	재무과	26.	공용차량 관리 및 운영	
자치행정국	재무과	27.	물품수급계획 수립 및 재물조사	
자치행정국	재무과	28.	청사 소방시설관리 및 소방훈련관리	
자치행정국	재무과	29.	지방재정공제회 운영 관리(영조 시설물)	
자치행정국	재무과	30.	본청 에너지 운영 관리	
자치행정국	재무과	31.	지방세 징수 및 세외수입 종합계획 수립·운영관리	
자치행정국	재무과	32.	자금관리(운용·재배정·자금예치 등) 전반	
자치행정국	재무과	33.	세입결산(도세·군세·세외수입) 전반	
자치행정국	재무과	34.	금고 계약·운영 및 감시	
자치행정국	재무과	35.	체납세 징수 및 체납처분(압류·공매·결손처분 등)	
자치행정국	재무과	36.	지방세·국세 수납관리 및 결산	
자치행정국	재무과	37.	지방세·국세 과오납 환급 및 관리	
자치행정국	재무과	38.	자동차세 체납차량 등록후 회수·번호판 영치	
자치행정국	재무과	39.	법원배당금 청구 및 수령	
자치행정국	재무과	40.	재산세(토지, 건축물,주택분) 및 과표운영 관리	
자치행정국	재무과	41.	재산세(토지, 건축물,주택분) 세원조사 계획수립	
자치행정국	재무과	42.	재산세(토지, 건축물,주택분) 부과 및 세원관리	
자치행정국	재무과	43.	개별주택가격조사 종합계획 수립	
자치행정국	재무과	44.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검증·이의신청 처리	
자치행정국	재무과	45.	개별주택가격조사 부동산 평가위원회 운영	
농어촌산업국	농업정책과	1.	국·과 업무 종합기획·조정 및 예산회계·일반서무·보안업무	
농어촌산업국	농업정책과	2.	농어촌활성계획 수립 및 조정	
농어촌산업국	농업정책과	3.	농림사업 통합실시 운영관리	
농어촌산업국	농업정책과	4.	농지의 소유·이용 관리	
농어촌산업국	농업정책과	5.	농촌행정정산시스템 관리	
농어촌산업국	농업정책과	6.	농어촌육성사업지원기금 관리	
농어촌산업국	농업정책과	7.	농업법인관리	
농어촌산업국	농업정책과	8.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 심의회	
농어촌산업국	농업정책과	9.	농어촌복지사업 지원	
농어촌산업국	농업정책과	10.	여성농업인 복지 관련업무 전반	
농어촌산업국	농업정책과	11.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농어촌산업국	농업정책과	12.	경관특구 운영	
농어촌산업국	농업정책과	13.	청보리밭 축제	
농어촌산업국	농업정책과	14.	FTA종합 대응	
농어촌산업국	농업정책과	15.	농지전용 사후관리	수정
농어촌산업국	농업정책과	16.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협의	
농어촌산업국	농업정책과	17.	농지조성비 및 부과금 부과·징수	
농어촌산업국	농업정책과	18.	고품질 쌀 생산 추진	
농어촌산업국	농업정책과	19.	쌀경쟁력제고사업	
농어촌산업국	농업정책과	20.	지력증진사업	
농어촌산업국	농업정책과	21.	농약비료 판매업등록및 관리	
농어촌산업국	농업정책과	22.	쌀소득등 보전직접지불제지원	
농어촌산업국	농업정책과	23.	친환경 유기농업지원	
농어촌산업국	농업정책과	24.	친환경 농업 직접지불제지원	
농어촌산업국	농업정책과	25.	식량작물 재해대책및 지원	

[별표 1]

사 무 분 장 표(제3조관련)

국별	부서별	담 사무		비고
농어촌산업국	농업정책과	26.	농업기계 지원 및 사후관리	
농어촌산업국	농업정책과	27.	산업기능요원 지도안내	
농어촌산업국	농업정책과	28.	전작생산 및 수급관리	
농어촌산업국	농업정책과	29.	서류 두류생산 및 수급관리	
농어촌산업국	농업정책과	30.	정부양곡관리 특별회계 운영	
농어촌산업국	농업정책과	31.	정부양곡 매입, 보관관리	
농어촌산업국	농업정책과	32.	미곡종합처리장시설 지원, 지도 관리	
농어촌산업국	농업정책과	33.	원예작물 비가림하우스 및 생산시설 지원	
농어촌산업국	농업정책과	34.	특용작물 생산 육성및 지원	
농어촌산업국	농업정책과	35.	원예작물 생산 육성 및 지원	
농어촌산업국	농업정책과	36.	친환경원예특작생산단지 지원	
농어촌산업국	농업정책과	37.	화훼 생산 지원	
농어촌산업국	농업정책과	38.	FTA기금 과수산업 지원	
농어촌산업국	농업정책과	39.	잠업생산지원	
농어촌산업국	농업정책과	40.	농업시설물 재해대책	
농어촌산업국	농업정책과	41.	재해보험지원	
농어촌산업국	농업정책과	42.	밭직불제·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지원	
농어촌산업국	농업정책과	43.	지역특산물 축제(해풍고추)	
농어촌산업국	농업정책과	44.	복분자 생산지원사업 추진	
농어촌산업국	농업정책과	45.	복분자 수매 및 공급	
농어촌산업국	농업정책과	46.	복분자 생산이력 관리	
농어촌산업국	농업정책과	47.	복분자 특구 관리	
농어촌산업국	농업정책과	48.	복분자 테마체험장 조성사업	
농어촌산업국	농업정책과	49.	지역특산물 축제(복분자·수박)	
농어촌산업국	농업정책과	50.	복분자, 베리류 관련업무 전반(연구, 지도업무 제외)	
농어촌산업국	농업정책과	51.	농산물 저온 유통체계 구축사업(저온저장고 등)	
농어촌산업국	농업정책과	52.	농업재해	
농어촌산업국	농업정책과	53.	기본형공익직불제	
농어촌산업국	농업정책과	54.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농어촌산업국	농업정책과	55.	농촌인력지원	
농어촌산업국	농업정책과	56.	농촌인력대책반 운영	
농어촌산업국	농업정책과	57.	농업도우미지원센터 설치운영	
농어촌산업국	농촌활력과	1.	과 업무 종합기획·조정 및 예산회계·일반서무	
농어촌산업국	농촌활력과	2.	마을가꾸기 사업 전반(국립마을공동문화조성사업, 메이플-스톤 공동	
농어촌산업국	농촌활력과	3.	전북 향토산업 마을만들기 사업	
농어촌산업국	농촌활력과	4.	농어촌민박 신고 수리 및 사업자 관리, 교육	
농어촌산업국	농촌활력과	5.	슬로시티 관련업무 추진	
농어촌산업국	농촌활력과	6.	공동체사업 총괄 기획 및 조정	
농어촌산업국	농촌활력과	7.	공동체관련 법령, 조례, 규칙 등 관리	
농어촌산업국	농촌활력과	8.	공동체 관련 협의기구 설치·운영	
농어촌산업국	농촌활력과	9.	시군구 지역공동체 활성화 계획 수립	
농어촌산업국	농촌활력과	10.	지역공동체 현황 관리 및 DB 구축	
농어촌산업국	농촌활력과	11.	공동체 활성화 사업(생생마을만들기 지원, 공동체지원센터 운영관리)	
농어촌산업국	농촌활력과	12.	농촌마을 경관조성 지원사업 사후관리	
농어촌산업국	농촌활력과	13.	농촌 야경 콘텐츠 발굴 지원사업 사후관리	
농어촌산업국	농촌활력과	14.	전북형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농어촌산업국	농촌활력과	15.	과학기술 활용 주민공감 지역문제 해결사업(로컬푸드 기반 만성질환 건강식단 개발)	
농어촌산업국	농촌활력과	16.	고창농촌영화제 추진	
농어촌산업국	농촌활력과	17.	농촌체험휴양마을 지원 및 관리	
농어촌산업국	농촌활력과	18.	관광농원 인허가 및 관리	
농어촌산업국	농촌활력과	19.	전북형 농촌관광 거점마을 운영활성화 및 사후관리	
농어촌산업국	농촌활력과	20.	테마가 있는 자연마을 조성사업	
농어촌산업국	농촌활력과	21.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농어촌산업국	농촌활력과	22.	농촌협약 업무	
농어촌산업국	농촌활력과	23.	마을만들기사업(구 마을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 포함)	
농어촌산업국	농촌활력과	24.	기초생활거점사업(구 거점면 소재지 중심마을 개발사업 포함)	
농어촌산업국	농촌활력과	25.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구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포함)	
농어촌산업국	농촌활력과	26.	시군역량강화사업	
농어촌산업국	농촌활력과	27.	농촌형 교통모델	
농어촌산업국	농촌활력과	28.	농촌보육여건개선	
농어촌산업국	농촌활력과	29.	푸드통합지원센터	
농어촌산업국	농촌활력과	30.	푸드플랜업무 전반	
농어촌산업국	농촌활력과	31.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	
농어촌산업국	농촌활력과	32.	학교 무상급식 및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농어촌산업국	농촌활력과	33.	식품산업 일반	
농어촌산업국	농촌활력과	34.	식초산업업무	
농어촌산업국	농촌활력과	35.	농식품기업육성사업	
농어촌산업국	농촌활력과	36.	식품가공업체 관리	
농어촌산업국	농촌활력과	37.	농식품기업 산업기능요원 관리	
농어촌산업국	농촌활력과	38.	주류제조 면허 추진 및 관리	

[별표 1]

사 무 분 장 표(제3조관련)

국별	부서별	팀 사무		비고
농어촌산업국	농촌활력과	39.	향토산업육성사업 전반(고구마)	
농어촌산업국	농촌활력과	40.	복분자·장어 푸드테라피사업	
농어촌산업국	농촌활력과	41.	쌀가공산업육성사업	
농어촌산업국	농촌활력과	42.	우수외식업지구육성사업	
농어촌산업국	농촌활력과	43.	농식품6차산업 전반	
농어촌산업국	농촌활력과	44.	식품가공, 호농, 신제품 개발, 특허출원 등을 위한 연구용역	
농어촌산업국	농촌활력과	45.	베리앤바이오연구소 관리	0
농어촌산업국	농촌활력과	46.	신활력플러스사업	
농어촌산업국	농촌활력과	47.	농업농촌 테마공원 조성사업	
농어촌산업국	농촌활력과	48.	농산물 유통시설 종합계획수립	
농어촌산업국	농촌활력과	49.	농산물 유통센터 관리 및 시설보완사업 추진	
농어촌산업국	농촌활력과	50.	농산물 보관창고 및 김하선벌장 지원관리	
농어촌산업국	농촌활력과	51.	GAP(안전농산물관리시설)시설 지원	
농어촌산업국	농촌활력과	52.	농산물 유통 시설 및 장비 지원	
농어촌산업국	농촌활력과	53.	그 밖에 농산물 유통시설 확충 및 사후관리 지도	
농어촌산업국	농촌활력과	54.	고창농산물 시장조사, 시장개척, 브랜드 및 상표관리	
농어촌산업국	농촌활력과	55.	농산물 유통종합계획 수립 및 농산물 유통업무	
농어촌산업국	농촌활력과	56.	고창농산물 수출지원 및 관리	
농어촌산업국	농촌활력과	57.	고창 농산물 수출물류비 및 수출포장재 제작 지원	
농어촌산업국	농촌활력과	58.	고창 농특산품 해외 판촉행사 추진	
농어촌산업국	농촌활력과	59.	고창상품 마케팅 종합계획 수립	
농어촌산업국	농촌활력과	60.	고창상품 시장조사 및 개척	
농어촌산업국	농촌활력과	61.	고창상품 홍보(광고) 및 마케팅 지원사업	
농어촌산업국	농촌활력과	62.	고창상품 통합브랜드 개발 및 운영관리	
농어촌산업국	농촌활력과	63.	㈜고창창포배기유통 지원관리	
농어촌산업국	농촌활력과	64.	고창상품 유통 종사자 교육	
농어촌산업국	농촌활력과	65.	고창상품 원산지 표시 지도	
농어촌산업국	농촌활력과	66.	고창상품 포장재 및 택배비 지원	
농어촌산업국	농촌활력과	67.	농특산품전시판매장 및 선연월벌플라자 관리	
농어촌산업국	농촌활력과	68.	고창상품 해외시장 개척	
농어촌산업국	농촌활력과	69.	농산물 통합마케팅 활성화 지원사업	
농어촌산업국	농촌활력과	70.	GAP 인증 확대 사업(포장재비, 이력관리체계구축)	
농어촌산업국	농촌활력과	71.	전북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	
농어촌산업국	농촌활력과	72.	농수축산물 마케팅업무 전반	
농어촌산업국	농촌활력과	73.	농수축산물 수출업무 전반	
농어촌산업국	농촌활력과	74.	고창몰(농촌고창몰) 운영	
농어촌산업국	해양수산과	1.	과 업무 총괄기획·조정 및 예산회계·일반서무	
농어촌산업국	해양수산과	2.	해양수산 종합개발계획수립 및 총괄	
농어촌산업국	해양수산과	3.	수산사업 통합 추진	
농어촌산업국	해양수산과	4.	어촌체험마을 홍보, 교육	
농어촌산업국	해양수산과	5.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	
농어촌산업국	해양수산과	6.	어촌체험마을 활성화	
농어촌산업국	해양수산과	7.	어촌체험마을 경진대회 참가 추진	
농어촌산업국	해양수산과	8.	갯벌습지보호지역 기본계획 수립 및 진흥	
농어촌산업국	해양수산과	9.	갯벌습지보호지역관리(홍보, 모니터링)	
농어촌산업국	해양수산과	10.	갯벌습지보호지역관리사업(복원주변마을 활성화)	
농어촌산업국	해양수산과	11.	어항관리(환경,실태 등)	
농어촌산업국	해양수산과	12.	어항인전시설 관리	
농어촌산업국	해양수산과	13.	어항시설점용허가	
농어촌산업국	해양수산과	14.	천일염 산업육성 기본계획 수립	
농어촌산업국	해양수산과	15.	천일염 생산 진흥관리	
농어촌산업국	해양수산과	16.	천일염 향토산업 추진	
농어촌산업국	해양수산과	17.	천일염 지역전략식품사업 추진	
농어촌산업국	해양수산과	18.	천일염 광역경제권 연계 협력사업 추진	
농어촌산업국	해양수산과	19.	해수욕장 운영 및 관리	
농어촌산업국	해양수산과	20.	도-어 교류 활성화 추진	
농어촌산업국	해양수산과	21.	지역특산물 축제(수산물 및 장어먹는 날)	
농어촌산업국	해양수산과	22.	자연환경 축제(고창갯벌)	
농어촌산업국	해양수산과	23.	낚시어선 신고수리	
농어촌산업국	해양수산과	24.	산업기능요원 사후관리	
농어촌산업국	해양수산과	25.	수산가공업 허가 및 신고처리	
농어촌산업국	해양수산과	26.	어선등록 및 변경말소등록, 어선건조 및 개조발주허가	
농어촌산업국	해양수산과	27.	연근해어업 허가 및 신고	
농어촌산업국	해양수산과	28.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 추진 및 어선건조, 설비 현대화	
농어촌산업국	해양수산과	29.	어촌계설립인가 및 영어조합법인 육성	
농어촌산업국	해양수산과	30.	수산물원산지표시 지도 및 단속	
농어촌산업국	해양수산과	31.	어선업 위반어선 행정처분 및 과태료부과	
농어촌산업국	해양수산과	32.	육상양식 및 종묘생산어업 허가	
농어촌산업국	해양수산과	33.	어업권,어선 원부등본 발급	
농어촌산업국	해양수산과	34.	신기술 해면양식사업 발굴	

[별표 1]

사 무 분 장 표(제3조관련)

국별	부서별	팀 사무		비고
농어촌산업국	해양수산과	35.	천해어장 이용개발 계획 수립	
농어촌산업국	해양수산과	36.	천해양식어업 면허 및 이전, 변경인가	
농어촌산업국	해양수산과	37.	종양식사업 추진 및 사후관리	
농어촌산업국	해양수산과	38.	수산자원조성 부담금 징수	
농어촌산업국	해양수산과	39.	어업권 설정등기	
농어촌산업국	해양수산과	40.	면허의 우선순위 결정	
농어촌산업국	해양수산과	41.	자원조사보고에 의한 어장 확인	
농어촌산업국	해양수산과	42.	부실관리 어업권 행정처분	
농어촌산업국	해양수산과	43.	양식어장 관리지도	
농어촌산업국	해양수산과	44.	종양식 피해보상 관련 소송업무 수행	
농어촌산업국	해양수산과	45.	어선손실 보상 및 분쟁조정	
농어촌산업국	해양수산과	46.	수산종양식,어선어업피해복구	
농어촌산업국	해양수산과	47.	내수면어업 면허, 인,허가 처분	
농어촌산업국	해양수산과	48.	내수면어업 개발, 지도 및 사후관리	
농어촌산업국	해양수산과	49.	내수면어업계 육성 및 지도감독	
농어촌산업국	해양수산과	50.	해,내수면 자원조성사업 추진 및 사후관리	
농어촌산업국	해양수산과	51.	내수면 보호수면 지정 및 관리	
농어촌산업국	해양수산과	52.	어업지도선 운영관리	
농어촌산업국	해양수산과	53.	해면 및 내수면어업 안전조업 지도, 단속	
농어촌산업국	해양수산과	54.	해난 구조 및 사고 방지 지도	
농어촌산업국	해양수산과	55.	수산관계법령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및 불법어선 과징금 부과징수	
농어촌산업국	해양수산과	56.	내수면재해피해복구사업추진	
농어촌산업국	해양수산과	57.	갯벌종천장어 개발 및 사후관리	
농어촌산업국	해양수산과	58.	자율관리어업 육성지원사업	
농어촌산업국	해양수산과	59.	유료낚시터 관리	
농어촌산업국	해양수산과	60.	내수면자원보존 및 관리	
농어촌산업국	해양수산과	61.	불법어업 신고센터 운영과 불법어업DB화 구축	
농어촌산업국	해양수산과	62.	어선대행 신고서 운영 관리	
농어촌산업국	해양수산과	63.	공유수면 방치폐선조사 및 관리	
농어촌산업국	해양수산과	64.	적조예찰 활동 및 피해복구	
농어촌산업국	해양수산과	65.	연안습지보전업무추진	
농어촌산업국	해양수산과	66.	연안 해양오염방지종합대책및방제사업추진	
농어촌산업국	해양수산과	67.	연안통합관리및정비계획수립	
농어촌산업국	해양수산과	68.	영광원전온배수어업피해보상지원업무추진	
농어촌산업국	해양수산과	69.	바닷가 청소 및 해양쓰레기 처리	
농어촌산업국	해양수산과	70.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농어촌산업국	해양수산과	71.	공유수면시설물실태조사및사후관리	
농어촌산업국	해양수산과	72.	해양시설물 지도 점검 및 사후관리	
농어촌산업국	해양수산과	73.	해양수산시설사업전반	
농어촌산업국	해양수산과	74.	어촌체험마을조성 및 환경개선	
농어촌산업국	해양수산과	75.	연안체험활동 신고접수	
농어촌산업국	해양수산과	76.	습지보호지역시설사업	
농어촌산업국	해양수산과	77.	고창갯벌생태계복원사업	
농어촌산업국	해양수산과	78.	프리미엄고창갯벌생태복합단지조성	
농어촌산업국	해양수산과	79.	어항관련시설사업	
농어촌산업국	해양수산과	80.	수산물직매장시설사업	
농어촌산업국	해양수산과	81.	천일염 생산 유통시설사업	
농어촌산업국	해양수산과	82.	어장진입로 사업	
농어촌산업국	해양수산과	83.	해수욕장 환경개선	
농어촌산업국	해양수산과	84.	도서종합개발사업	
농어촌산업국	해양수산과	85.	연안정비시설사업	
농어촌산업국	해양수산과	86.	해양치유산업 지구조성 및 프로그램 운영	
농어촌산업국	해양수산과	87.	명품 송송 경관조명 설치사업 및 유지관리	
농어촌산업국	해양수산과	88.	심원면 군유염전 업무 및 유지관리	
농어촌산업국	해양수산과	89.	어업인후계자 산업기능요원 편입신청	
농어촌산업국	해양수산과	90.	두어미술 6차 사업 및 운영관리	
농어촌산업국	해양수산과	91.	수산업,어촌공익직가치 지원(어민공익수당)	
농어촌산업국	해양수산과	92.	귀어,귀촌융자금 신청 및 지원업무	
농어촌산업국	해양수산과	93.	축제식 양식장 활성화 및 환경개선	
농어촌산업국	해양수산과	94.	바지락 종자 대량생산 기반구축 및 처리장 활성화	
농어촌산업국	해양수산과	95.	공소만 폐쇄 해양환경 조사용역	
농어촌산업국	해양수산과	96.	해상경계 분쟁어업권 업무처리	
농어촌산업국	해양수산과	97.	뱀장어 위판장 및 힐빌식품 가공공장 관리	
농어촌산업국	해양수산과	98.	수산물 안전성 조사 및 수산용의약품 관리	
농어촌산업국	해양수산과	99.	지주식 김 생산기반 구축 및 브랜드 육성	
농어촌산업국	해양수산과	100.	친환경 인증 및 지리적표시제 추진	
농어촌산업국	해양수산과	101.	폐류 종패살포 및 폐류망 지원	
농어촌산업국	해양수산과	102.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금 지급	
농어촌산업국	해양수산과	103.	수산물 산지가공 · 처리처장 시설지원	
농어촌산업국	해양수산과	104.	수산물 가공 유통시설 및 수출전략품목육성	

[별표 1]

사 무 분 장 표(제3조관련)

국별	부서별		팀 사무	비고
농어촌산업국	해양수산과	105.	고창대표 수산물 마케팅 및 판촉행사 지원	
농어촌산업국	해양수산과	106.	수산업경영인 대회 및 신문보급 지원	
농어촌산업국	해양수산과	107.	양식수산물 재해보험가입 지원	
농어촌산업국	해양수산과	108.	수산양식분야 에너지절감시설 보급사업	
농어촌산업국	해양수산과	109.	양식어장 자동화 및 스마트 관리시스템시설 지원	
농어촌산업국	해양수산과	110.	양식시설현대화(융자) 사업	
농어촌산업국	해양수산과	111.	청년어촌정착 지원사업	
농어촌산업국	해양수산과	112.	면손어업신고	
농어촌산업국	해양수산과	113.	수산자원 산란서식장 조성사업	
농어촌산업국	해양수산과	114.	생분해성 어구 보급사업	
농어촌산업국	해양수산과	115.	해양쓰레기 업무 전반(바다환경지킴이, 집하장)	
농어촌산업국	해양수산과	116.	폐생이모자반 등 부유지장물 제거사업	
농어촌산업국	해양수산과	117.	해파리 구제사업	
농어촌산업국	해양수산과	118.	연안 해안사고 안전관리	
농어촌산업국	해양수산과	119.	고창갯벌 식생조림사업	
농어촌산업국	해양수산과	120.	해양생태활성화 지원사업	
농어촌산업국	해양수산과	121.	해역이용협의업무	
농어촌산업국	해양수산과	122.	어선장비 지원사업 전반	
농어촌산업국	해양수산과	123.	연안바다목장조성사업 사후관리	
농어촌산업국	해양수산과	124.	해양공간관리계획 관리	
농어촌산업국	해양수산과	125.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어촌지역)	
농어촌산업국	해양수산과	126.	어촌신활력 증진사업	
농어촌산업국	해양수산과	127.	갯벌식물원 조성사업	
농어촌산업국	해양수산과	128.	어촌뉴딜 300사업 및 오션 뉴딜	
농어촌산업국	해양수산과	129.	어촌 유휴시설 맞춤형 귀어스테이 조성사업 추진	
농어촌산업국	해양수산과	130.	람사르고창갯벌센터 운영관리	
농어촌산업국	해양수산과	131.	람사르습지 관리 및 습지도시 업무	
농어촌산업국	해양수산과	132.	국내외네트워크	
농어촌산업국	해양수산과	133.	고창갯벌 홍보(강연, 인터뷰 등)	
농어촌산업국	해양수산과	134.	고창갯벌(갯벌센터) 홈페이지 관리	
농어촌산업국	축산과	1.	축산발전계획 및 축산행정 종합기획, 조정	
농어촌산업국	축산과	2.	축산단체 육성 및 지도	
농어촌산업국	축산과	3.	농림사업 및 농업종합자금 지원사업	
농어촌산업국	축산과	4.	양돈, 양계, 오리, 기타가축 경쟁력강화사업	
농어촌산업국	축산과	5.	ICT 융복합 및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	
농어촌산업국	축산과	6.	FTA피해보전사업	
농어촌산업국	축산과	7.	말산업 및 곤충산업 육성사업	
농어촌산업국	축산과	8.	축산기자재 지원사업	
농어촌산업국	축산과	9.	축산 재해대책사업	
농어촌산업국	축산과	10.	가축분뇨처리사업 추진 및 사후관리 지도	
농어촌산업국	축산과	11.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	
농어촌산업국	축산과	12.	액비저장조 및 살포비 지원사업	
농어촌산업국	축산과	13.	가축분뇨 악취방제사업	
농어촌산업국	축산과	14.	수분조절재 지원사업	
농어촌산업국	축산과	15.	가축분뇨처리 장비 지원사업	
농어촌산업국	축산과	16.	가축통계조사	
농어촌산업국	축산과	17.	축산업, 부화업, 종축업 허가(등록)	
농어촌산업국	축산과	18.	축산물 가공처리업 허가(신고)	
농어촌산업국	축산과	19.	축산물 보관업, 운반업, 판매업	
농어촌산업국	축산과	20.	축산물 이력제 추진	
농어촌산업국	축산과	21.	축산물 브랜드사업	
농어촌산업국	축산과	22.	부정축산물 유통 지도·단속	
농어촌산업국	축산과	23.	축산물 HACCP 컨설팅 사업	
농어촌산업국	축산과	24.	송아지생산안정사업	
농어촌산업국	축산과	25.	한우개량 및 기반육성사업	
농어촌산업국	축산과	26.	초지조성 및 전용허가(신고)	
농어촌산업국	축산과	27.	가성초지 보완 및 사후관리	
농어촌산업국	축산과	28.	친환경 축산물 인증사업	
농어촌산업국	축산과	29.	한우암소 유전형질 개량사업	
농어촌산업국	축산과	30.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지원 및 관리	
농어촌산업국	축산과	31.	한우, 젖소 경쟁력 강화사업 지원 및 사후관리	
농어촌산업국	축산과	32.	풍사료 재배 및 부존자원 활용	
농어촌산업국	축산과	33.	친환경 축산물 생산 지원	
농어촌산업국	축산과	34.	풍사료 수확제조비 및 경영체 장비 지원	
농어촌산업국	축산과	35.	곤포사일리지 제조사업	
농어촌산업국	축산과	36.	젖소 능력개량사업 지원 및 사후관리	
농어촌산업국	축산과	37.	한우, 낙농단체 육성 및 지도감독	
농어촌산업국	축산과	38.	낙농 기자재 지원	
농어촌산업국	축산과	39.	낙농 컨퍼 지원	
농어촌산업국	축산과	40.	우유 수급조절 및 소비촉진	

[별표 1]

사 무 분 장 표(제3조관련)

국별	부서별	팀 사무		비고
농어촌산업국	축산과	41.	학교 우유급식	
농어촌산업국	축산과	42.	유기우유생산사업	
농어촌산업국	축산과	43.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농어촌산업국	축산과	44.	가축분뇨 수거 및 정화처리	
농어촌산업국	축산과	45.	가축분뇨 슬러지 퇴비생산 및 공급	
농어촌산업국	축산과	46.	가축분뇨 자원화 및 유기질 비료(액비) 생산	
농어촌산업국	축산과	47.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계획 수립(준설, 유지관리, 개보수)	
농어촌산업국	축산과	48.	가축분뇨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	
농어촌산업국	축산과	49.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관리 조례 제·개정	
농어촌산업국	축산과	50.	가축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 부과	
농어촌산업국	축산과	51.	반입 가축분뇨 부유물농도(MLSS) 검사	
농어촌산업국	축산과	52.	BCS통법 방류시스템 운영관리	
농어촌산업국	축산과	53.	공정수 및 방류수 수질검사 실시	
농어촌산업국	축산과	54.	실험 및 시험기자재 관리 운영	
농어촌산업국	축산과	55.	가축분뇨 수집·운반업 대행계약 및 지도점검	
농어촌산업국	축산과	56.	가축분뇨 반입축산농가 지도점검(고액분리 등)	
농어촌산업국	축산과	57.	퇴·액비 품질관리 및 시범포 운영	
농어촌산업국	축산과	58.	가축분뇨 퇴·액비생산 및 농가지원계획 수립	
농어촌산업국	축산과	59.	가축방역 계획 수립	
농어촌산업국	축산과	60.	가축방역 및 진료	
농어촌산업국	축산과	61.	가축전염병 예방백신 지원	
농어촌산업국	축산과	62.	구제역·AI 차단방역 소독약품 공급	
농어촌산업국	축산과	63.	구제역 긴급방역대책 추진	
농어촌산업국	축산과	64.	구제역 예방백신 및 접종 지원	
농어촌산업국	축산과	65.	조류인플루엔자 긴급방역대책 추진	
농어촌산업국	축산과	66.	구제역·AI 발생농장 및 매몰지 사후관리	
농어촌산업국	축산과	67.	일제소독의 날 공동방제단 운영	
농어촌산업국	축산과	68.	브루셀라 및 우결핵 방역 추진	
농어촌산업국	축산과	69.	질적분 보상금, 도태장려금 평가 및 지급	
농어촌산업국	축산과	70.	동물병원 개설 및 공수의 위촉 운영	
농어촌산업국	축산과	71.	축산농가 소독시설 지원사업	
농어촌산업국	축산과	72.	동물사체 처리시설 지원사업	
농어촌산업국	축산과	73.	가축인공수정소 개설 인허가 및 지도감독	
농어촌산업국	축산과	74.	동물등록 및 유기동물 등 동물복지 업무	
농어촌산업국	축산과	75.	돼지열병 및 덴뉴캣슬병 방역대책	
농어촌산업국	축산과	76.	돼지써코백신 지원사업	
농어촌산업국	축산과	77.	축산시설 출입차량 등록 및 통신료 지원	
농어촌산업국	축산과	78.	돼지소모성질환 컨설팅 지원사업	
농어촌산업국	축산과	79.	종돈장, 종계장, 부화장 방역관리	
농어촌산업국	축산과	80.	가축의 검진, 혈청검사, 병성감정 및 방역대책 수립	
농어촌산업국	축산과	81.	가축방역 차량 관리	
농어촌산업국	산림공원과	1.	과 업무 종합기획·조정 및 예산회계·일반서무	
농어촌산업국	산림공원과	2.	산림기본계획수립 추진	
농어촌산업국	산림공원과	3.	산림 기본통계 및 임산물 생산통계	
농어촌산업국	산림공원과	4.	공유림 관리	
농어촌산업국	산림공원과	5.	산림경영계획인가 및 사업신고	
농어촌산업국	산림공원과	6.	입목 벌채 허가 및 신고	
농어촌산업국	산림공원과	7.	조림사업(경제수, 큰나무, 유실수, 경관조림, 유휴토지)	
농어촌산업국	산림공원과	8.	조림지 가꾸기 사업(덩굴제거, 풀베기)	
농어촌산업국	산림공원과	9.	어린나무가꾸기사업	
농어촌산업국	산림공원과	10.	경제숲가꾸기(솎아베기, 천연림 보육 등)	
농어촌산업국	산림공원과	11.	공공산림가꾸기	
농어촌산업국	산림공원과	12.	임도시설(신설, 구조개량, 보수) 및 유지관리	
농어촌산업국	산림공원과	13.	농림사업 및 산림소득사업 지원	
농어촌산업국	산림공원과	14.	산림조합 육성 및 지도	
농어촌산업국	산림공원과	15.	채종림 관리 및 양묘 생산	
농어촌산업국	산림공원과	16.	임산물 품질관리 및 유통구조개선	
농어촌산업국	산림공원과	17.	임업단체 및 임업인 육성	
농어촌산업국	산림공원과	18.	산림재해 예방 및 복구, 산사태 취약지역 관리	
농어촌산업국	산림공원과	19.	산림내 불법행위 단속 및 사건처리	
농어촌산업국	산림공원과	20.	산불 방지 예방 및 단속	
농어촌산업국	산림공원과	21.	산불방지 인력 및 진화장비 관리	
농어촌산업국	산림공원과	22.	산지전용 허가 및 협의 신고처리	
농어촌산업국	산림공원과	23.	산지이용구분 조사	
농어촌산업국	산림공원과	24.	보전 산지 지정 및 해제	
농어촌산업국	산림공원과	25.	산림보호구역 지정 해제및 사업허가	
농어촌산업국	산림공원과	26.	산림내 토사·석 채취허가 및 훼손지 복구	
농어촌산업국	산림공원과	27.	산림병충해 및 소나무 재선충 방제	
농어촌산업국	산림공원과	28.	임산물굴취(채취) 허가 및 신고	
농어촌산업국	산림공원과	29.	사방사업	

[별표 1]

사 무 분 장 표(제3조관련)

국별	부서별	팀 사무		비고
농어촌산업국	산림공원과	30.	산불진화차량 관리	
농어촌산업국	산림공원과	31.	선운산 생태숲 조성 및 관리	
농어촌산업국	산림공원과	32.	산림경영모델숲 조성및 관리	
농어촌산업국	산림공원과	33.	화단조성 및 관리	
농어촌산업국	산림공원과	34.	꽃길조성 및 관리(읍면 도로변 꽃길조성 포함)	
농어촌산업국	산림공원과	35.	가로수 조성 및 관리	
농어촌산업국	산림공원과	36.	1읍 면 1산 가꾸기사업 및 관리	
농어촌산업국	산림공원과	37.	등산로 설치 및 관리	
농어촌산업국	산림공원과	38.	숲길 조성사업 및 관리	
농어촌산업국	산림공원과	39.	보호수 노거수 외괴수숲 등 관리	
농어촌산업국	산림공원과	40.	산촌생태마을 조성 및 관리	
농어촌산업국	산림공원과	41.	자연휴양림조성 및 관리	
농어촌산업국	산림공원과	42.	산림욕장 등의 조성 및 관리	
농어촌산업국	산림공원과	43.	수목원조성 및 관리	
농어촌산업국	산림공원과	44.	공공시설내 수목 전정 및 수목관리 기술지도	
농어촌산업국	산림공원과	45.	서해안 비탈공원 관리	
농어촌산업국	산림공원과	46.	도시림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농어촌산업국	산림공원과	47.	녹색쉼지공원 조성 및 관리	
농어촌산업국	산림공원과	48.	녹색자금지원사업	
농어촌산업국	산림공원과	49.	선운산도립공원 조성사업에 관한 사항	
농어촌산업국	산림공원과	50.	선운산도립공원 시설의 운영 및 관리	
농어촌산업국	산림공원과	51.	탐방객 질서 및 안전지도, 사용료 징수	
농어촌산업국	산림공원과	52.	선운산도립공원내의 업무 지도·단속	
농어촌산업국	산림공원과	53.	임업 산림 공익직접지불제	
농어촌산업국	산림공원과	54.	산림레포츠 시설 조성 및 관리	
농어촌산업국	산림공원과	55.	문수산 편백 치유의 숲 관리	
농어촌산업국	산림공원과	56.	조경수산업 육성	
농어촌산업국	산림공원과	57.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농어촌산업국	산림공원과	58.	경관숲 등의 조성 및 관리	
농어촌산업국	산림공원과	59.	임목등기	
농어촌산업국	산림공원과	60.	산림사업법인관리	
농어촌산업국	산림공원과	61.	임산물 가공산업 육성	
농어촌산업국	산림공원과	62.	도시공원 및 녹지시설 관리	
농어촌산업국	산림공원과	63.	도시공원 조성 및 계획 변경	
농어촌산업국	산림공원과	64.	사유림경영정보시스템 관리	
농어촌산업국	안전총괄과	1.	과 업무 종합 기획·조정	
농어촌산업국	안전총괄과	2.	안전재난 정책 총괄 업무	
농어촌산업국	안전총괄과	3.	예산회계 및 일반서무	
농어촌산업국	안전총괄과	4.	비상대비훈련	
농어촌산업국	안전총괄과	5.	전시대비 업무	
농어촌산업국	안전총괄과	6.	고창군 방위협의회 운영	
농어촌산업국	안전총괄과	7.	민방위 계획수립 시행	
농어촌산업국	안전총괄과	8.	민방위대 조직 관리	
농어촌산업국	안전총괄과	9.	민방위 교육훈련	
농어촌산업국	안전총괄과	10.	민방위 시설장비 관리	
농어촌산업국	안전총괄과	11.	주민 신고망 관리	
농어촌산업국	안전총괄과	12.	동원관계·을종관계·비상방송제도 운영	
농어촌산업국	안전총괄과	13.	인력동원자원 관리·지행	
농어촌산업국	안전총괄과	14.	동원능력판단자료 조사	
농어촌산업국	안전총괄과	15.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농어촌산업국	안전총괄과	16.	고창군의용소방연합회 및 읍면의용소방대 지원	
농어촌산업국	안전총괄과	17.	예비군육성지원	
농어촌산업국	안전총괄과	18.	군부대 관련 업무 및 특별사법경찰 지원 등	
농어촌산업국	안전총괄과	19.	재해응급복구 계획 수립	
농어촌산업국	안전총괄과	20.	재해응급복구에 따른 응급복구비지원	
농어촌산업국	안전총괄과	21.	재해위험지구지정해제 및 사업집행	
농어촌산업국	안전총괄과	22.	재해위험지구 지정을 위한 타당성조사용역및 소관지정시 협의검토	
농어촌산업국	안전총괄과	23.	재해복구 유관기관 지역협력체계구축및 관리	
농어촌산업국	안전총괄과	24.	재난관리기금 집행 및 관리	
농어촌산업국	안전총괄과	25.	재난원인조사 분석 검토	
농어촌산업국	안전총괄과	26.	풍수해보험 가입홍보 및 보험료 지원	
농어촌산업국	안전총괄과	27.	재난관리시스템에 등재된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선지급	
농어촌산업국	안전총괄과	28.	재해응급(공공시설)지역 군부대등을 통한 복구지원	
농어촌산업국	안전총괄과	29.	재해위험지구 재해지도 제작	
농어촌산업국	안전총괄과	30.	특별재난지역 선포시 각종지원제도 안내및 홍보	
농어촌산업국	안전총괄과	31.	사유시설 재해대장 제작및배부	
농어촌산업국	안전총괄과	32.	재해복구 유관기관 지역협력체계구축및 관리	
농어촌산업국	안전총괄과	33.	침수흔적도 제작 관리	
농어촌산업국	안전총괄과	34.	군 안전관리위원회 및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	
농어촌산업국	안전총괄과	35.	재난종합상황실 운영관리 및 평시 재난상황보고체계 구축	

[별표 1]

사 무 분 장 표(제3조관련)

국별	부서별	팀 사무	비고
농어촌산업국	안전총괄과	36. 재해사전대비	
농어촌산업국	안전총괄과	37. 재난대비 물자·자원·장비확보 및 재난단계 규모·유형별 동원계획 수립·운영	
농어촌산업국	안전총괄과	38. 재난관리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홍보 프로그램 개발·보급	
농어촌산업국	안전총괄과	39. 풍수해 저감종합계획 수립	
농어촌산업국	안전총괄과	40. 재난위험지정시설물 및 특정관리대상시설에 대한 점검계획수립	
농어촌산업국	안전총괄과	41. 지역자율방재단 교육·훈련	
농어촌산업국	안전총괄과	42.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운영	
농어촌산업국	안전총괄과	43. 유도선 안전관리	
농어촌산업국	안전총괄과	44. 수상레저 안전법관리	
농어촌산업국	안전총괄과	45. 시설물(교량, 건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관련업무 전반	
농어촌산업국	안전총괄과	46. 국가위기관리	
농어촌산업국	안전총괄과	47. 안전관리계획 수립	
농어촌산업국	안전총괄과	48. 안전관리 전문인력 체계 구축	
농어촌산업국	안전총괄과	49.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추진	
농어촌산업국	안전총괄과	50. 계절별 안전관리대책 수립 및 재난대비 자원관리	
농어촌산업국	안전총괄과	51. 사회적 재난업무 일반	
농어촌산업국	안전총괄과	52. 재난대비 유관기관 업무협조 및 지원체계구축	
농어촌산업국	안전총괄과	53. 지역축제 사전 재해대처계획 심의 및 현장점검	
농어촌산업국	안전총괄과	54. 자연재난 유형별 표준행동 매뉴얼 작성 및 취합관리	
농어촌산업국	안전총괄과	55. 자연재난업무 일반	
농어촌산업국	안전총괄과	56. 재난 예경보시설 관리운영	
농어촌산업국	안전총괄과	57. 고창기상대 업무협력 및 일일기상상황 파악	
농어촌산업국	안전총괄과	58. 재난관리실태 공시	
농어촌산업국	안전총괄과	59. 사회재난시 신속한 초동대응을 위한 모니터요원 구성 운영	
농어촌산업국	안전총괄과	60. 각종재난에 대한 사후조치 및 사례 분석,전파 등 기록관리	
농어촌산업국	안전총괄과	61. 재난상황의 접수,파악, 전파, 상황판단, 초동조치 및 지휘	
농어촌산업국	안전총괄과	62. 긴급구조기관 출동정보, 대응상황 접수,전파	
농어촌산업국	안전총괄과	63. 재난 위기징후 분석,평가,경보발령	
농어촌산업국	안전총괄과	64. 재난관리정보시스템 이용실적 관리 및 분석에 관한 사항	
농어촌산업국	안전총괄과	65. 재난감시용CCTV,수위계,우량계 등 관측정보 장비점검, 모니터링 등 관리	
농어촌산업국	안전총괄과	66. 생애주기별 안전교육 기본계획에 따른 세부실행계획 수립,시행	
농어촌산업국	안전총괄과	67. 국민안전의 날 운영에 관한 사항	
농어촌산업국	안전총괄과	68. 다중이용시설 등 민간소유시설 위기상황 매뉴얼관리 등 안전관리	
농어촌산업국	안전총괄과	69. 안전신고업무 총괄기획 및 시행	
농어촌산업국	안전총괄과	70. 안전신고 평가업무	
농어촌산업국	안전총괄과	71. 안전신고빅데이터 등 정보화 연계추진	
농어촌산업국	안전총괄과	72. 안전신고시스템 관리업무	
농어촌산업국	안전총괄과	73. 안전신고 처리 현황 파악 및 결과보고	
농어촌산업국	안전총괄과	74. 안전신고 모니터링, 현장점검 및 긴급조치	
농어촌산업국	안전총괄과	75. 안전관리협의회 구성 및 운영	
농어촌산업국	안전총괄과	76. 안전신고의 날 행사 추진	
농어촌산업국	안전총괄과	77. 방재안전마을 만들기 사업 지원	
농어촌산업국	안전총괄과	78. 풍수해 피해예측시스템 구축 운영	
농어촌산업국	안전총괄과	79. 긴급지원체계 구축 관리에 관한 사항	
농어촌산업국	안전총괄과	80.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대책의 수립 시행에 관한사항	
농어촌산업국	안전총괄과	81. 특수재난 협업지원,관리 종합계획 및 시스템 수립,운영	
농어촌산업국	안전총괄과	82. 특수재난 재난역량 분석,진단 및 교육,훈련 지원	
농어촌산업국	안전총괄과	83. 특수재난 발생시 지대본 등 지원	
농어촌산업국	안전총괄과	84. 사회재난 관련 지역재난전문가 및 자원봉사자 지원체계 구성 및 운영	
농어촌산업국	안전총괄과	85. 지자체 주민대상 안전교육 실시	
농어촌산업국	안전총괄과	86.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점검	
농어촌산업국	안전총괄과	87. 승강기 안전점검 및 관리	
농어촌산업국	안전총괄과	88. 하천정비관리	
농어촌산업국	안전총괄과	89. 지방하천 점·사용허가	
농어촌산업국	안전총괄과	90. 소하천 점·사용허가	
농어촌산업국	안전총괄과	91. 지방하천 정비사업	
농어촌산업국	안전총괄과	92. 하도준설사업	
농어촌산업국	안전총괄과	93. 하천기성제 정비	
농어촌산업국	안전총괄과	94. 자연형 하천사업	
농어촌산업국	안전총괄과	95. 생태하천 조성사업	
농어촌산업국	안전총괄과	96. 하천 및 소하천 유지관리	
농어촌산업국	안전총괄과	97. 폐천부지 대부·매각	
농어촌산업국	안전총괄과	98. 하천 기본계획수립 및 관리	
농어촌산업국	안전총괄과	99. 하천내 어도시설 관리	
농어촌산업국	안전총괄과	100. 비관리청 하천공사 관련	
농어촌산업국	안전총괄과	101. 소하천 정비사업	
농어촌산업국	안전총괄과	102. 소하천 종합계획수립및 관리	
농어촌산업국	안전총괄과	103. 하천재해예방사업 시행	
농어촌산업국	안전총괄과	104. 하천환경 정비사업	
농어촌산업국	안전총괄과	105. 폐천부지 무상 양여, 증여	

[별표 1]

사 무 분 장 표(제3조관련)

국별	부서별	팀	사무	비고
농어촌산업국	안전총괄과	106.	공개채취예정지 고시·허가	
농어촌산업국	안전총괄과	107.	공개채취업 등록	
농어촌산업국	안전총괄과	108.	공개채취 허가 및 신고	
농어촌산업국	안전총괄과	109.	원전방사능 방재 대책 계획 수립 및 시행	
농어촌산업국	안전총괄과	110.	방사능 방호시설·약품 관리	
농어촌산업국	안전총괄과	111.	원전주변지역 지원사업 및 특별회계 관리	
농어촌산업국	안전총괄과	112.	방사능 방재 교육·훈련	
농어촌산업국	안전총괄과	113.	원전비상계획 구역 내 주민보호 대책	
농어촌산업국	안전총괄과	114.	원전기본지원사업 시설물 관리	
농어촌산업국	안전총괄과	115.	그 밖에 원전에 관한 사항	
농어촌산업국	안전총괄과	116.	안전관리 상시 점검·진단 등 재난현장 점검·대응	
농어촌산업국	안전총괄과	117.	재난안전 거버넌스 구축 운영	
농어촌산업국	안전총괄과	118.	지하안전법 및 기반시설법 관련업무 전반	
농어촌산업국	안전총괄과	119.	국유재산(국토교통부, 하천) 사용 대부계약	
농어촌산업국	안전총괄과	120.	중대재해처벌법	
농어촌산업국	안전총괄과	121.	기능연속성 계획 수립	
농어촌산업국	안전총괄과	122.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관리	
농어촌산업국	안전총괄과	123.	지역안전도 평가	
농어촌산업국	안전총괄과	124.	재난관리평가	
농어촌산업국	안전총괄과	125.	지역맞춤형 훈련 추진	
농어촌산업국	안전총괄과	126.	재난 배상책임보험	
농어촌산업국	안전총괄과	127.	군(도)민 안전보험	
농어촌산업국	안전총괄과	128.	재난기본소득지급	
농어촌산업국	건설도시과	1.	과 업무 종합기획·조정 및 예산회계·일반서무	
농어촌산업국	건설도시과	2.	건설기계 등록 및 사업자 관리	
농어촌산업국	건설도시과	3.	접도구역 관리(도시계획구간 제외)	
농어촌산업국	건설도시과	4.	도로 관리(건설장비관리·도로보수원관리)	
농어촌산업국	건설도시과	5.	도로유지관리 (비예산 사업)	
농어촌산업국	건설도시과	6.	도로표지판 관리	
농어촌산업국	건설도시과	7.	미포장 도로 사리부설	
농어촌산업국	건설도시과	8.	전국도로 교통량 조사	
농어촌산업국	건설도시과	9.	건설관련 국·공유행정재산 관리	
농어촌산업국	건설도시과	10.	국·지방도(미불용지)보상 및 이전등기	
농어촌산업국	건설도시과	11.	제한차량 관리	
농어촌산업국	건설도시과	12.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지도·단속	
농어촌산업국	건설도시과	13.	국유재산 권리보전(건설교통부)	
농어촌산업국	건설도시과	14.	전문건설업 관리 및 등록 신고수리	
농어촌산업국	건설도시과	15.	옥외광고물 관리	
농어촌산업국	건설도시과	16.	도로점용 신고허가 및 점용료 부과·징수에 따른 사후 관리	
농어촌산업국	건설도시과	17.	사도개설 허가	
농어촌산업국	건설도시과	18.	농업용수 개발	
농어촌산업국	건설도시과	19.	경지정리사업	
농어촌산업국	건설도시과	20.	수리시설 개·보수	
농어촌산업국	건설도시과	21.	개간 허가 및 지도	
농어촌산업국	건설도시과	22.	각종 농지개량사업의 집행감독	
농어촌산업국	건설도시과	23.	한해대책사업	
농어촌산업국	건설도시과	24.	경주기반 확충사업	
농어촌산업국	건설도시과	25.	관련업무 국·공유행정재산 관리	
농어촌산업국	건설도시과	26.	밭 기반정비사업 집행감독	
농어촌산업국	건설도시과	27.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농어촌산업국	건설도시과	28.	대·소형관정 개발사업 집행감독	
농어촌산업국	건설도시과	29.	양·배수장 집행사업	
농어촌산업국	건설도시과	30.	소류지 유지관리사업	
농어촌산업국	건설도시과	31.	배수개선사업	
농어촌산업국	건설도시과	32.	방조제 개보수사업	
농어촌산업국	건설도시과	33.	오지개발 사업	
농어촌산업국	건설도시과	34.	경지정리 지구내 농로및 용배수로 유지관리사업	
농어촌산업국	건설도시과	35.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농어촌산업국	건설도시과	36.	지표수 보강개발사업	
농어촌산업국	건설도시과	37.	심원지구 조성토지 매각대금 관리	
농어촌산업국	건설도시과	38.	농업기반시설 등록 및 관리	
농어촌산업국	건설도시과	39.	군도 및 농어촌도로 중장기 계획 수립	
농어촌산업국	건설도시과	40.	군도 및 농어촌도로의 위험도로 선형개량사업 추진	
농어촌산업국	건설도시과	41.	군도 및 농어촌도로의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추진	
농어촌산업국	건설도시과	42.	군도 및 농어촌도로의 보행자 안전을 위한 안전시설사업 추진	
농어촌산업국	건설도시과	43.	군도 및 농어촌도로의 교량 유지관리 및 개량사업 추진	
농어촌산업국	건설도시과	44.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용지보상 및 이전 등기	
농어촌산업국	건설도시과	45.	도로구역 결정고시	
농어촌산업국	건설도시과	46.	군도 및 농어촌도로 비관리청사업 협의 및 허가	
농어촌산업국	건설도시과	47.	타기관 시행사업(도로)업무협의 및 추진	

[별표 1]

사 무 분 장 표(제3조관련)

국별	부서별	팀 사무		비고
농어촌산업국	안전총괄과	106.	골재채취예정지 고시·허가	
농어촌산업국	안전총괄과	107.	골재채취업 등록	
농어촌산업국	안전총괄과	108.	골재채취 허가 및 신고	
농어촌산업국	안전총괄과	109.	원전방사능 방재 대책 계획 수립 및 시행	
농어촌산업국	안전총괄과	110.	방사능 방호시설·약품 관리	
농어촌산업국	안전총괄과	111.	원전주변지역 지원사업 및 특별회계 관리	
농어촌산업국	안전총괄과	112.	방사능 방재 교육·훈련	
농어촌산업국	안전총괄과	113.	원전비상계획 구역 내 주민보호 대책	
농어촌산업국	안전총괄과	114.	원전기본지원사업 시설물 관리	
농어촌산업국	안전총괄과	115.	그 밖에 원전에 관한 사항	
농어촌산업국	안전총괄과	116.	안전관리 상시 점검·진단 등 재난현장 점검·대응	
농어촌산업국	안전총괄과	117.	재난안전 거버넌스 구축·운영	
농어촌산업국	안전총괄과	118.	지하안전법 및 기반시설법 관련업무 전반	
농어촌산업국	안전총괄과	119.	국유재산(국토교통부, 하천) 사용·대부계약	
농어촌산업국	안전총괄과	120.	중대재해처벌법	
농어촌산업국	안전총괄과	121.	기능연속성 계획 수립	
농어촌산업국	안전총괄과	122.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관리	
농어촌산업국	안전총괄과	123.	지역안전도 평가	
농어촌산업국	안전총괄과	124.	재난관리평가	
농어촌산업국	안전총괄과	125.	지역맞춤형 훈련 추진	
농어촌산업국	안전총괄과	126.	재난 배상책임보험	
농어촌산업국	안전총괄과	127.	군(도)민 안전보험	
농어촌산업국	안전총괄과	128.	재난기본소득지급	
농어촌산업국	건설도시과	1.	과 업무 종합기획·조정 및 예산회계·일반서무	
농어촌산업국	건설도시과	2.	건설기계 등록 및 사업자 관리	
농어촌산업국	건설도시과	3.	접도구역 관리(도시계획구간 제외)	
농어촌산업국	건설도시과	4.	도로 관리(건설장비관리·도로보수원관리)	
농어촌산업국	건설도시과	5.	도로유지관리 (비예산 사업)	
농어촌산업국	건설도시과	6.	도로표지판 관리	
농어촌산업국	건설도시과	7.	미포장 도로 사리부설	
농어촌산업국	건설도시과	8.	전국도로 교통량 조사	
농어촌산업국	건설도시과	9.	건설관련 국·공유행정재산 관리	
농어촌산업국	건설도시과	10.	국·지방도(미불용지)보상 및 이전등기	
농어촌산업국	건설도시과	11.	제한차량 관리	
농어촌산업국	건설도시과	12.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지도·단속	
농어촌산업국	건설도시과	13.	국유재산 권리보전(건설교통부)	
농어촌산업국	건설도시과	14.	전문건설업 관리 및 등록 신고수리	
농어촌산업국	건설도시과	15.	옥외광고물 관리	
농어촌산업국	건설도시과	16.	도로점용 신고·허가 및 점용료 부과·징수에 따른 사후 관리	
농어촌산업국	건설도시과	17.	사도개설 허가	
농어촌산업국	건설도시과	18.	농업용수 개발	
농어촌산업국	건설도시과	19.	경지정리사업	
농어촌산업국	건설도시과	20.	수리시설 개·보수	
농어촌산업국	건설도시과	21.	개간 허가 및 지도	
농어촌산업국	건설도시과	22.	각종 농지개량사업의 집행감독	
농어촌산업국	건설도시과	23.	한해대책사업	
농어촌산업국	건설도시과	24.	경주기반 확충사업	
농어촌산업국	건설도시과	25.	관련업무 국·공유행정재산 관리	
농어촌산업국	건설도시과	26.	밭 기반정비사업 집행감독	
농어촌산업국	건설도시과	27.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농어촌산업국	건설도시과	28.	대·소형관정 개발사업 집행감독	
농어촌산업국	건설도시과	29.	양·배수장 집행사업	
농어촌산업국	건설도시과	30.	소류지 유지관리사업	
농어촌산업국	건설도시과	31.	배수개선사업	
농어촌산업국	건설도시과	32.	방조제 개보수사업	
농어촌산업국	건설도시과	33.	오지개발 사업	
농어촌산업국	건설도시과	34.	경지정리 지구내 농로및 용배수로 유지관리사업	
농어촌산업국	건설도시과	35.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농어촌산업국	건설도시과	36.	지표수 보강개발사업	
농어촌산업국	건설도시과	37.	심원지구 조성토지 매각대금 관리	
농어촌산업국	건설도시과	38.	농업기반시설 등록 및 관리	
농어촌산업국	건설도시과	39.	군도 및 농어촌도로 중장기 계획 수립	
농어촌산업국	건설도시과	40.	군도 및 농어촌도로의 위험도로 선형개량사업 추진	
농어촌산업국	건설도시과	41.	군도 및 농어촌도로의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추진	
농어촌산업국	건설도시과	42.	군도 및 농어촌도로의 보행자 안전을 위한 안전시설사업 추진	
농어촌산업국	건설도시과	43.	군도 및 농어촌도로의 교량 유지관리 및 개량사업 추진	
농어촌산업국	건설도시과	44.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용지보상 및 이전 등기	
농어촌산업국	건설도시과	45.	도로구역 결정고시	
농어촌산업국	건설도시과	46.	군도 및 농어촌도로 비관리청사업 협의 및 허가	
농어촌산업국	건설도시과	47.	타기관 시행사업(도로)업무협의 및 추진	

[별표 1]

사 무 분 장 표(제3조관련)

국별	부서별	팀 사무		비고
	보건소	30.	조류인플루엔자(AI) 인체감염 예방관리	보건행정과
	보건소	31.	성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관리	보건행정과
	보건소	32.	기생충감염증 조사 및 예방관리	보건행정과
	보건소	33.	지역주민 진료에 관한 사항	건강증진과
	보건소	34.	경로당 무료 순회진료	건강증진과
	보건소	35.	국가 암 검진사업	건강증진과
	보건소	36.	암 환자 의료비 지원에 관한 사항	건강증진과
	보건소	37.	주민을 위한 건강검진사업에 관한 사항	건강증진과
	보건소	38.	재가 암환자 관리	건강증진과
	보건소	39.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건강증진과
	보건소	40.	불임부부 지원에 관한 사항	건강증진과
	보건소	41.	장애인 재활 사업	건강증진과
	보건소	42.	국민건강증진에 관한 제부계획수립	건강증진과
	보건소	43.	영양개선사업에 관한 사항	건강증진과
	보건소	44.	한의약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건강증진과
	보건소	45.	응급사업에 관한 사항	건강증진과
	보건소	46.	국가 금연서비스 지원사업	건강증진과
	보건소	47.	절주사업에 관한 사항	건강증진과
	보건소	48.	만성퇴행성질환자의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건강증진과
	보건소	49.	노인보건 관리에 관한 사항	건강증진과
	보건소	50.	가정 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료사업	건강증진과
	보건소	51.	모자보건사업의 제부계획수립 및 시행	건강증진과
	보건소	52.	영유아 관리에 대한 사항	건강증진과
	보건소	53.	임산부의 산전관리·산후관리	건강증진과
	보건소	54.	선천성대사이상아 검사 및 환아관리에 관한 사항	건강증진과
	보건소	55.	출산지원에 관한 사항	건강증진과
	보건소	56.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건강증진과
	보건소	57.	구강보건사업에 관한 사항	건강증진과
	보건소	58.	정신질환자 관리에 관한 사항	건강증진과
	보건소	59.	치매환자관리에 관한 사항	건강증진과
	농업기술센터	1.	농촌지도사업 소관행정의 종합기획·조정	
	농업기술센터	2.	농촌지도사업에 관한 계획수립 및 평가	
	농업기술센터	3.	농업기술센터 인사에 관한 사항	
	농업기술센터	4.	농업기술센터 예산운영 및 전도금 관리	
	농업기술센터	5.	농업기술센터 소관건물·시설·장비·차량등 재산관리	
	농업기술센터	6.	문서수발 및 공인관리	
	농업기술센터	7.	소속공무원 복무단속 및 관리	
	농업기술센터	8.	소내 비품 및 소모품 관리	
	농업기술센터	9.	그 밖에 보안등 서무업무 전반	
	농업기술센터	10.	지도공무원 전문화 및 특기별 지도인력 관리	
	농업기술센터	11.	농촌지도사업 홍보	
	농업기술센터	12.	고창군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	
	농업기술센터	13.	읍면 농업인상담소 관리	
	농업기술센터	14.	농민상담사업	
	농업기술센터	15.	고창농업교육협력단운영	
	농업기술센터	16.	고창농촌개발대학 사무국 운영 관리	
	농업기술센터	17.	고창농촌개발대학 학사운영 및 교육	
	농업기술센터	18.	농업의 다차산업화 농업인 육성 지도	
	농업기술센터	19.	지역특성화 교육생 사후관리 지도	
	농업기술센터	20.	벤처농업인 육성지도	
	농업기술센터	21.	농산물 브랜드 경영화사업 개발 및 지도	
	농업기술센터	22.	지도공무원 전문기술연구회 육성	
	농업기술센터	23.	도 및 중앙연계 농촌지도사업	
	농업기술센터	24.	농촌지도 기반 조성사업	
	농업기술센터	25.	생산자와 소비자 연계 지도	
	농업기술센터	26.	농촌지도자 조직 육성	
	농업기술센터	27.	후계농업경영인육성	
	농업기술센터	28.	산업기능요원 관리 및 지도	
	농업기술센터	29.	4-H연합회 조직 육성	
	농업기술센터	30.	영농 4-H 조직 육성	
	농업기술센터	31.	학생 4-H조직 육성	
	농업기술센터	32.	학교 4-H 지도교사 협의회 육성	
	농업기술센터	33.	4-H 연맹 조직 육성	
	농업기술센터	34.	4-H후원회 운영	
	농업기술센터	35.	농촌청소년 진로지도	
	농업기술센터	36.	농업인 교육 및 해외 연수사업	
	농업기술센터	37.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새해영농설계교육)	
	농업기술센터	38.	품목별 농업인 상설교육	
	농업기술센터	39.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조직육성	
	농업기술센터	40.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시범사업	

[별표 1]

사 무 분 장 표(제3조관련)

국별	부서별		팀 사무	비고
	농업기술센터	41.	한농천 입학홍보 및 추천	
	농업기술센터	42.	한농천 졸업생 교육 및 사후관리 지도	
	농업기술센터	43.	농업인 경보회 교육	
	농업기술센터	44.	온라인 마케팅 교육	
	농업기술센터	45.	인터넷화상정보시스템 농가 관리지도	
	농업기술센터	46.	특성화 교육	
	농업기술센터	47.	특성화 농업경영자과정 교육	
	농업기술센터	48.	귀농인 영농정착 교육	
	농업기술센터	49.	농업인 자격증취득반 교육	
	농업기술센터	50.	농업 기술지 보급	
	농업기술센터	51.	우수농산물(GAP)생산 교육	
	농업기술센터	52.	농가경영 컨설팅	
	농업기술센터	53.	농산물 소득조사	
	농업기술센터	54.	농업인의 날 행사지원	
	농업기술센터	55.	농업경영인 행사 지원	
	농업기술센터	56.	여성농업인 단체 조직 육성	
	농업기술센터	57.	여성농업인 능력개발교육	
	농업기술센터	58.	농촌여성 생활과학기술교육	
	농업기술센터	59.	농촌자원분야 시범사업 추진	
	농업기술센터	60.	농업인 소득활동 기술지원	
	농업기술센터	61.	농촌생활환경개선지도	
	농업기술센터	62.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	
	농업기술센터	63.	농작업환경개선 지도	
	농업기술센터	64.	농산물 가공기술 지도	
	농업기술센터	65.	녹색식생활 연구회 육성	
	농업기술센터	66.	농촌전통생활기술 전승·발굴 지도	
	농업기술센터	67.	향토 및 전통음식 전승·발굴 지도	
	농업기술센터	68.	농촌자원활용 소득원 개발 지도	
	농업기술센터	69.	천연염색 연구회 조직 육성	
	농업기술센터	70.	전통규방공예 연구회 조직육성	
	농업기술센터	71.	농촌어메니티 활용 기술지도	
	농업기술센터	72.	도시민 유치 지원에 관한 사항	
	농업기술센터	73.	귀농인 정착지원에 관한 사항	
	농업기술센터	74.	귀농귀촌 유치 홍보에 관한 사항	
	농업기술센터	75.	귀농 박람회 참가 등 각종 행사에 관한 사항	
	농업기술센터	76.	예비 귀농인 상담 지원에 관한 사항	
	농업기술센터	77.	귀농귀촌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농업기술센터	78.	귀농귀촌 관련 DVD구축에 관한 사항	
	농업기술센터	79.	귀농인 영농기술지도 및 현장교육 지원	
	농업기술센터	80.	귀농인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	
	농업기술센터	81.	귀농귀촌인 및 현지주민 화합에 관한 사항	
	농업기술센터	82.	고창군 귀농귀촌지원센터 설치 ·운영	
	농업기술센터	83.	고창군 귀농귀촌협의회 지원에 관한 사항	
	농업기술센터	84.	읍면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농업기술센터	85.	그 밖의 귀농귀촌에 관한 사항	
	농업기술센터	86.	농어촌뉴타운 입주자 사후관리(하자보수, 민원)	
	농업기술센터	87.	농어촌뉴타운 커뮤니티센터 운영 및 농촌체험시설 관리	
	농업기술센터	88.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조성 업무 및 운영	
	농업기술센터	89.	유기농 기술개발 및 보급	
	농업기술센터	90.	친환경농업 시험재배 및 기술보급	
	농업기술센터	91.	친환경 농산물 관리지도	
	농업기술센터	92.	버 친환경 농업 육성	
	농업기술센터	93.	식량작물 기술지도	
	농업기술센터	94.	농작물 우량품종 보급	
	농업기술센터	95.	식량작물 시범사업	
	농업기술센터	96.	고품질 쌀 생산 지도	
	농업기술센터	97.	식량작물 생력재배 영농기계화 지도	
	농업기술센터	98.	농업기상 재해예방 지도	
	농업기술센터	99.	농작물 병해충예찰 및 방제,기술 교육·홍보	
	농업기술센터	100.	수도예찰답 및 예찰실 운영	
	농업기술센터	101.	종합토양검정실 운영	
	농업기술센터	102.	병해충 종합진단실 운영	
	농업기술센터	103.	토양검정 및 토양개량 지도	
	농업기술센터	104.	농업환경개선대책 수립 및 시행	
	농업기술센터	105.	병해충종합관리(IPM)사업	
	농업기술센터	106.	작물양분종합관리(INM)사업	
	농업기술센터	107.	농약 안전사용 지도	
	농업기술센터	108.	농기계 안전사용 기술교육	
	농업기술센터	109.	농기계 임대사업 및 사업장 관리 운영	
	농업기술센터	110.	농기계 농업인 교육 및 지도	

[별표 1]

사 무 분 장 표(제3조관련)

국별	부서별		팀 사무	비고
	농업기술센터	111	채소안정생산 재기술보급 시범사업 지도	
	농업기술센터	112	과수 안정생산 재기술보급 시범사업 지도	
	농업기술센터	113	특용작물 생산 기술보급시범사업지도	
	농업기술센터	114	화훼 재기술보급 시범사업 지도	
	농업기술센터	115	시설채소 재배기술지도	
	농업기술센터	116	양액재배기술지도	
	농업기술센터	117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기술 지도	
	농업기술센터	118	시설하우스 환경개선기술지도	
	농업기술센터	119	시설하우스 연작장해경감 토양관리기술지도	
	농업기술센터	120	노지채소 재배기술지도	
	농업기술센터	121	신선채소 연중생산재배기술지도	
	농업기술센터	122	화훼재배기술지도	
	농업기술센터	123	잡업기술지도	
	농업기술센터	124	과수 재배기술 지도	
	농업기술센터	125	원예작물 병해충 진단, 방제지도	
	농업기술센터	126	특용작물 재배기술지도	
	농업기술센터	127	산채류 재배기술지도	
	농업기술센터	128	고품질농산물 생산 수출지도	
	농업기술센터	129	농산물 저장기술지도	
	농업기술센터	130	농업인 현장애로기술개발보급	
	농업기술센터	131	원예 작목별 연구회 조직육성 및 기술지도	
	농업기술센터	132	신규 소득 작목 개발 보급	
	농업기술센터	133	각종작물 지역적응 실증시험	
	농업기술센터	134	농업기술 현장실습 교육	
	농업기술센터	135	과수 새로운 수형 개발을 위한 실증시범재배	
	농업기술센터	136	고추, 수박 역병 방지를 위한 재기술 개발 실증 재배	
	농업기술센터	137	실증시범포 운영	
	농업기술센터	138	새 소득작목개발을 위한 실증시범재배	
	농업기술센터	139	수박 연중생산을 위한 작기 개발 실증재배	
	농업기술센터	140	아생화 실증재배	
	농업기술센터	141	원예치료실운영	
	농업기술센터	142	읍면별 지역특화 시범사업지도	
	농업기술센터	143	축산기술보급 및 기술지도	
	농업기술센터	144	축산시범사업추진	
	농업기술센터	145	사료작물재배기술지도	
	농업기술센터	146	복분자 재배 시험연구	
	농업기술센터	147	복분자 생산단체 및 연구회 조직 운영	
	농업기술센터	148	복분자 생리·생태에 관한 시험연구	
	농업기술센터	149	복분자 병해충 발생 원인 구명 및 방제체계 연구	
	농업기술센터	150	복분자 재배 기술 상담	
	농업기술센터	151	복분자 시비법 및 유기재배법 기술개발	
	농업기술센터	152	복분자 재배 기술 농가보급 및 교육	
	농업기술센터	153	복분자 유전자원 수집·보존, 특성조사	
	농업기술센터	154	복분자 신품종 육종 시험 연구	
	농업기술센터	155	복분자 신육성 품종 육성 포장 관리	
	농업기술센터	156	특화작목 특허 출원 및 등록	
	농업기술센터	157	특화작목 특허 기술 이전	
	농업기술센터	158	고구마 종순 생산기반 구축 운영 및 생산 공급	
	농업기술센터	159	고구마 등 조직배양시험연구활동	
	농업기술센터	160	미생물배양장 운영및 생산 공급	
	농업기술센터	161	농산물 안전성 분석업무 전반	
	농업기술센터	162	분석장비 운영관리	
	농업기술센터	163	농산물 안전성에 대한 농가 컨설팅 및 교육	
	농업기술센터	164	부적합 농산물 시료관리	
	농업기술센터	165	분석수수료 세입 처리	
	농업기술센터	166	그밖에 농산물안전성분석에 관한 사항	
	체육시설사업소	1	사업소 소관업무 종합기획·조정 및 예산회계·일반서무	
	체육시설사업소	2	체육지원의 종합기획 조정	
	체육시설사업소	3	전문체육활동 육성 및 지원	
	체육시설사업소	4	체육단체 육성지원	
	체육시설사업소	5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영관리	
	체육시설사업소	6	각종 국내·국제 체육대회 유치·지원 및 개최	
	체육시설사업소	7	생활체육관련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지도	
	체육시설사업소	8	생활체육 종목별 협회 및 각종 생활체육대회 운영 지원	
	체육시설사업소	9	장애인 및 노인체육에 대한 진흥계획수립 및 지원	
	체육시설사업소	10	체육시설업 등록, 신고업무	
	체육시설사업소	11	스포츠클럽 등록 업무	
	체육시설사업소	12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지원	
	체육시설사업소	13	그 밖의 체육업무에 관한 사항	
	체육시설사업소	14	각종 전지훈련 유치 및 관리	

[별표 1]

사 무 분 장 표(제3조관련)

국별	부서별		팀 사무	비고
	체육시설사업소	15	레포츠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체육시설사업소	16	골프장관련업무	
	체육시설사업소	17	공공체육시설 확충 지원	
	체육시설사업소	18	공공체육시설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사업	
	체육시설사업소	19	공공체육시설 체육진흥시설 지원사업(균특)	
	체육시설사업소	20	기타 공공체육시설 관련 국가예산 사업	
	체육시설사업소	21	기존 공공체육시설의 리모델링 등 유지보수 관리지원	
	체육시설사업소	22	장애인체육시설 관련 업무	
	체육시설사업소	23	공공체육시설 하자보수점검 업무	
	체육시설사업소	24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체육시설사업소	25	공공체육시설 대관	
	체육시설사업소	26	공공체육시설 개보수사업 추진	
	체육시설사업소	27	소규모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	
	체육시설사업소	28	야외운동기구 설치사업 및 유지관리	
	체육시설사업소	29	군 소유 체육시설 위탁운영 관리	
	체육시설사업소	30	공공체육시설 안전점검 추진	
	체육시설사업소	31	공공체육시설 국가안전대진단 추진	
	체육시설사업소	32	공공체육시설 시특법 정기안전점검 관련 업무	
	체육시설사업소	33	질병예방지침(코드아담) 교육훈련	
	체육시설사업소	34	체육시설 인력 관리	
	체육시설사업소	35	산악자전거 공원 운영 관리	
	체육시설사업소	36	그 밖의 소관 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상하수도사업소	1	사업소 소관업무 종합기획·조정	
	상하수도사업소	2	상수도 공기업회계 예산편성 및 결산	
	상하수도사업소	3	상수도 공기업회계금고 선정 및 관리	
	상하수도사업소	4	상수도 공기업회계 경영평가	
	상하수도사업소	5	상수도분야 공사·용역, 물품 구매 계약 및 입찰	
	상하수도사업소	6	상수도 공기업회계 예산 집행 및 직원 급여 관리	
	상하수도사업소	7	상하수도 사용료 검침 및 고지, 부과 징수 및 체납자 관리	
	상하수도사업소	8	사업소 비품 및 소모품 관리	
	상하수도사업소	9	상하수도 교육관련 업무	
	상하수도사업소	10	상수도 조례, 규칙, 통계관리	
	상하수도사업소	11	그 밖의 타 팀에 속하지 않는 업무	
	상하수도사업소	12	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	
	상하수도사업소	13	광역·지방상수도 사업추진	
	상하수도사업소	14	광역상수도 배분량 관리	
	상하수도사업소	15	소화전 설치 및 관리	
	상하수도사업소	16	상수도 시설물 관리	
	상하수도사업소	17	마을상수도 및 농어촌 생활용수 유지·관리	
	상하수도사업소	18	먹는 물 수질관리(상수도, 간이상수도, 약수터 등)	
	상하수도사업소	19	저수조 청소업 신고수리 및 관리	
	상하수도사업소	20	비상대비 우물소독약 비축 관리	
	상하수도사업소	21	단수지역 홍보 및 먹는 물 공급 대책 시행	
	상하수도사업소	22	지하수 개발 및 신고 허가, 지공업 관리	
	상하수도사업소	23	급수공사 대행업 지정 및 관리	
	상하수도사업소	24	상수도 가정급수공사 및 누수 공사 시행	
	상하수도사업소	25	상수도 행정서비스헌장	
	상하수도사업소	26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	
	상하수도사업소	27	하수종말처리장 운영관리	
	상하수도사업소	28	마을오수처리시설 운영관리	
	상하수도사업소	29	하수종말처리시설 시설공사	
	상하수도사업소	30	마을하수처리시설 시설공사	
	상하수도사업소	31	농어촌 마을오수처리 시설공사	
	상하수도사업소	32	하수관거 정비사업 추진	
	상하수도사업소	33	하수처리 구역내 하수도 시설물 관리	
	상하수도사업소	34	차집관로 유지관리	
	상하수도사업소	35	배수설비공사 신고수리 및 준공	
	상하수도사업소	36	하수도 준설	
	상하수도사업소	37	하수도관 CCTV 촬영	
	상하수도사업소	38	하수도 조례, 규칙, 통계관리	
	상하수도사업소	39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	
	읍사무소	1	팀간 업무 기획·조정	
	읍사무소	2	소속공무원 복무단속	
	읍사무소	3	서무·보안·단속	
	읍사무소	4	시책 홍보	
	읍사무소	5	반상회 운영	
	읍사무소	6	리행정 지도·단속	
	읍사무소	7	행정장비·행정사무 관리개선	
	읍사무소	8	법제 정리	
	읍사무소	9	민방위 관리업무	

[별표 1]

사 무 분 장 표(제3조관련)

국별	부서별		팀 사무	비고
	읍사무소	10	통계 조사	
	읍사무소	11	문서 수발	
	읍사무소	12	예산 및 경리 업무	
	읍사무소	13	청사 관리 및 물품 관리	
	읍사무소	14	선거 및 국민 투표 업무	
	읍사무소	15	취학 및 유아교육에 관한 업무	
	읍사무소	16	공인에 관한 업무	
	읍사무소	17	체육·체력증진 업무	
	읍사무소	18	체납지방세금 독촉 및 징수	
	읍사무소	19	세외수입 징수	
	읍사무소	20	세원조사	
	읍사무소	21	재범방지지가 월람 및 결정통지문 교부	
	읍사무소	22	그 밖에 지방세업무	
	읍사무소	23	기초생활보장·자활·노인·장애인·아동지원 업무	
	읍사무소	24	모부자가정 지원, 복지대상자 사례관리 신청 및 접수	
	읍사무소	25	여성관련업무, 묘지매장·개장 신고, 고용·주거관련 업무	
	읍사무소	26	노인 일자리사업	
	읍사무소	27	그 밖에 주민복지팀 업무	
	읍사무소	28	전염병관리 및 각종 질병예방에 관한사항	
	읍사무소	29	가족관계등록 업무	
	읍사무소	30	주민등록·인감·제증명 발급	
	읍사무소	31	범죄자 및 피신자대자 관리	
	읍사무소	32	그 밖의 민원실 운영 및 민원행정에 관한 사항	
	읍사무소	33	농업·잠업·식량·산림 업무	
	읍사무소	34	가토수·수렵·상업·제랑·축산 업무	
	읍사무소	35	연료·양정·기상관측	
	읍사무소	36	양곡 배급에 관한 사항	
	읍사무소	37	농지제량·수리시설	
	읍사무소	38	농지업무	
	읍사무소	39	농업용수 개발에 관한 업무	
	읍사무소	40	경지정리	
	읍사무소	41	양수기 관리	
	읍사무소	42	특작물에 관한 사항	
	읍사무소	43	지역경제 발전 및 추진에 관한 사항	
	읍사무소	44	그 밖의 농업, 산업, 산림, 축산, 상공 등에 관한 사항	
	읍사무소	45	시범지역 개발	
	읍사무소	46	낙후지역 개발	
	읍사무소	47	소도읍 가꾸기	
	읍사무소	48	농촌 취락구조개선	
	읍사무소	49	전국토공원화운동 추진	
	읍사무소	50	광고물 관리 및 단속	
	읍사무소	51	자연보호	
	읍사무소	52	체험주진지책	
	읍사무소	53	건전생활에 관한 육성·지도	
	읍사무소	54	지역개발 각종 공사관리	
	읍사무소	55	재해예방	
	읍사무소	56	토지 관리	
	읍사무소	57	건축물 통계	
	읍사무소	58	농촌주택에 관한 업무	
	읍사무소	59	마을단위 비상급수대책 수립·시행	
	읍사무소	60	그 밖의 건설, 도시, 재난, 상하수도에 관한 사항	
	읍사무소	61	자연보호·보전	
	읍사무소	62	환경위생 및 공해방지	
	읍사무소	63	청소행정 업무	
	읍사무소	64	그 밖의 환경위생·보건에 관한 업무	
	읍사무소	65	찾아가는 복지상담	
	읍사무소	66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읍사무소	67	통합사례관리	
	읍사무소	68	민관협력 및 인적안전망 구축·운영	
	읍사무소	69	지역자원 발굴 및 연계 등	
	면사무소	1	팀간 업무 기획·조정	
	면사무소	2	소속공무원 복무단속	
	면사무소	3	서무·비밀·인사	
	면사무소	4	공보·선전	
	면사무소	5	여론 및 통합관리	
	면사무소	6	반상회 운영	
	면사무소	7	리행정 지도·감독	
	면사무소	8	행정장비·행정사무 관리개선	
	면사무소	9	법제정비	
	면사무소	10	통계 조사	

[별표 1]

사 무 분 장 표(제3조관련)

국별	부서별	팀 사무		비고
	면사무소	11	공인 관리	
	면사무소	12	문서 수발	
	면사무소	13	예산 및 경리 업무	
	면사무소	14	청사관리 및 물품관리	
	면사무소	15	선거 및 국민투표 업무	
	면사무소	16	문화예술에 관한 업무	
	면사무소	17	면소재 체육관 관리 및 운영	
	면사무소	18	취학 및 유아교육에 관한 업무	
	면사무소	19	민방위 관리업무	
	면사무소	20	소도읍가꾸기·시범지역·낙후지역 개발	
	면사무소	21	농촌 취락구조개선 및 주택개량	
	면사무소	22	광고물 관리 및 단속	
	면사무소	23	지역개발을 위한 각종 공사관리	
	면사무소	24	재해 방제	
	면사무소	25	도시행정에 관한 사항	
	면사무소	26	체납지방세금 독촉 및 징수	
	면사무소	27	세외수입 징수	
	면사무소	28	세원조사	
	면사무소	29	재향공사지가 열람 및 결정통지문 교부	
	면사무소	30	토지평가	
	면사무소	31	그 밖에 지방세업무	
	면사무소	32	기초생활보장·자활·노인·장애인·아동지원 업무	
	면사무소	33	모부자가정 지원, 복지대상자 사례관리	
	면사무소	34	여성관련업무, 묘지매장·개장 신고, 고용·주거관련 업무	
	면사무소	35	노인 일자리사업	
	면사무소	36	그 밖에 주민복지 업무	
	면사무소	37	전염병관리 및 각종 질병예방에 관한사항	
	면사무소	38	자연보호·보전	
	면사무소	39	환경위생 및 공해방지	
	면사무소	40	청소업무	
	면사무소	41	가족관계등록 업무	
	면사무소	42	주민등록·인감·제증명 발급	
	면사무소	43	범죄자 및 파산자대장 관리	
	면사무소	44	그 밖의 민원실 운영 및 민원행정에 관한 사항	
	면사무소	45	농업·잠업·식량·산림 업무	
	면사무소	46	가로수·수렵·상업·계량·축산 업무	
	면사무소	47	연료·양정·기상관측	
	면사무소	48	양곡 배급에 관한 사항	
	면사무소	49	농지계량·수리시설	
	면사무소	50	농지업무	
	면사무소	51	특작에 관한 사항	
	면사무소	52	지역경제 활성화	
	면사무소	53	시장에 관한 사항	
	면사무소	54	산업에 관한 사항	
	면사무소	55	전국토 공원화사업	
	면사무소	56	바닷가 청소	

고창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고 창 군 수

2023년 2월 15일

고창군 규칙 제 1213 호

고창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고창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숙박관광과 그날관광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구 분		지 원 기 준	지 원 금 액	비고
숙박관광	내국인	- 25명 이상 - 유료관광지 1개 이상관람	-1박 1인당 : 10천원 -2박이상 1인당 50% 추가지급	
		- 수학여행단체 20명 이상 - 유료관광지 1개 이상 관람	-1박 1인당 : 10천원 -2박이상 1인당 50% 추가지급	
	외국인	- 10명 이상 - 유료관광지 1개 이상관람	-1박 1인당 : 10천원 -2박이상 1인당 50% 추가지급	
그날관광	내국인	- 20명 이상	-1인당 : 5천원	
		- 수학여행단체 20명 이상	-1인당 : 5천원	
	외국인	- 10명 이상	-1인당 : 5천원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구 분		지 원 기 준	지 원 금 액	구 분		지 원 기 준	지 원 금 액
숙박관광	내국인	- 30명 이상 - 유료관광지 1개 이상관람	-1인당 : 10천원 -2박이상 1인당 50% 추가 지급	숙박관광	내국인	- 25명 이상 - 유료관광지 1개 이상관람	-1인당 : 10천원 -2박이상 1인당 50% 추가 지급
		- 수학여행단체 30명 이상 - 유료관광지 1개 이상 관람	-1인당 : 5천원 -2박이상 1인당 50% 추가 지급			- 수학여행단체 20명 이상 - 유료관광지 1개 이상 관람	-1인당 : 5천원 -2박이상 1인당 50% 추가 지급
	외국인	- 10명 이상 - 유료관광지 1개 이상관람	-1인당 : 10천원 -2박이상 1인당 50% 추가 지급		외국인	- 10명 이상 - 유료관광지 1개 이상관람	-1인당 : 10천원 -2박이상 1인당 50% 추가 지급
그날관광	내국인	- 25명 이상	-1인당 : 5천원	그날관광	내국인	- 20명 이상	-1인당 : 5천원
		- 수학여행단체 30명 이상	-1인당 : 5천원			- 수학여행단체 20명 이상	-1인당 : 5천원
	외국인	- 10명 이상	-1인당 : 5천원		외국인	- 10명 이상	-1인당 : 5천원

고창군 고시 제2023-23호

고창 군계획시설(흥덕공원) 조성계획 변경(경미한 변경)에 따른 지형도면고시

고창 군계획시설(흥덕공원) 조성계획 변경(고창군고시 제2022-157호) 승인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고시 합니다.

이에 따른 관계도서는 고창군청 건설도시과(☎063-560-2565)에 비치하여 일반에게 보입니다.

2023년 2월 1일

고 창 군 수

Ⅰ. 고창 군계획시설(흥덕공원) 조성계획 변경(경미한 변경)

1. 고창 군계획시설(흥덕공원) 결정 조서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11	흥덕공원	근린공원	고창군 흥덕면 흥덕리, 교운리, 치룡리 일원	112,052	전북고 제43호 (1977.03.07.)	배수지 7,598㎡ 중복결정

2. 고창 군계획시설(흥덕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총괄표

시 설 구 분	부 지 면 적(㎡)			시설건축면적(㎡)		비고
	기 정	변 경	증 감	바닥면적	연면적	
총 계	112,052	112,052	-	335	375	시설율 : 16.5%
조 경 시 설	425	425	-	-	-	
운 동 시 설	4,945	4,945	-	-	-	
교 양 시 설	2,420	2,420	-	175	175	
편 익 시 설	1,335	1,373	증) 38	130	170	전망대 신설
공원관리시설	540	540	-	30	30	
유 희 시 설	720	1,420	증) 700	-	-	생태놀이터 신설
기 타 시 설	98,113	96,692	감) 1,421	-	-	생태습지 신설/ 녹지 93,452㎡
휴 양 시 설	165	165	-	-	-	
도 로	3,389	4,072	증) 683	-	-	산책로 2개노선 신설

3. 고창 군계획시설(홍덕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조서

시설구분	시설번호	세부시설명	부지면적(㎡)			시설건축면적(㎡)		비고
			기정	변경	증감	바닥면적	연면적	
총 계			112,052	112,052	-	335	375	-
조경시설	소 계		425	425	-	-	-	-
	1-1	그늘시렁(1)	280	280	-	-	-	-
	1-2	그늘시렁(2)	145	145	-	-	-	-
운동시설	소 계		4,945	4,945	-	-	-	-
	2-1	게이트볼장	970	970	-	-	-	-
	2-2	배드민턴장	600	600	-	-	-	-
	2-3	체력단련시설	590	590	-	-	-	-
	2-4	국 궁 장	2,785	2,785	-	-	-	-
교양시설	소 계		2,420	2,420	-	175	175	-
	3-1	자연학습장(1)	2,220	2,220	-	-	-	-
	3-2	자연학습장(2)	200	200	-	175	175	-
편익시설	소 계		1,335	1,373	증) 38	130	170	-
	4-1	휴게음식점	310	310	-	36	36	-
	4-2	전망대	210	210	-	40	80	팔각정 2층
	4-3	화장실(1)	310	310	-	18	18	-
	4-4	화장실(2)	270	270	-	18	18	-
	4-5	화장실(3)	180	180	-	18	18	-
	4-6	약수터	55	55	-	-	-	-
	4-7	돔전망대	-	38	증) 38			돔전망대
공원관리시설	소 계		540	540	-	30	30	가로등18개 쓰레기통1개 게시판1개 공중전화1개 방향표지판4개
	5-1	관리사무소	340	340	-	30	30	
	5-2	쓰레기처리장	200	200	-	-	-	
유희시설	소 계		720	1,420	증) 700	-	-	-
	6-1	어린이놀이터	720	720	-	-	-	-
	6-2	생태놀이터	-	700	증) 700			움집, 모래놀이집, 언덕오르내리기 등
기타시설	소 계		98,113	96,692	감)1,421	-	-	-
	7-1	배수지	3,000	3,000	-	-	-	-
	7-2	녹지	95,113	93,452	감)1,661	-	-	-
	7-3	생태습지	-	240	증) 240			개구리, 줄장지뱀서식지 조성
휴양시설	소 계		165	165	-	-	-	-
	8-1	장의자(1)	65	65	-	-	-	-
	8-2	장의자(2)	100	100	-	-	-	-
도로	소 계		3,389	4,072	증) 683	-	-	-
	소로,산책로		3,389	4,072	증) 683	-	-	산책로 3개노선신설

4. 고창 군계획시설(홍덕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도 : 실음생략

■ 홍덕공원 조성계획 결정도(기정)

■ 홍덕공원 조성계획 결정도(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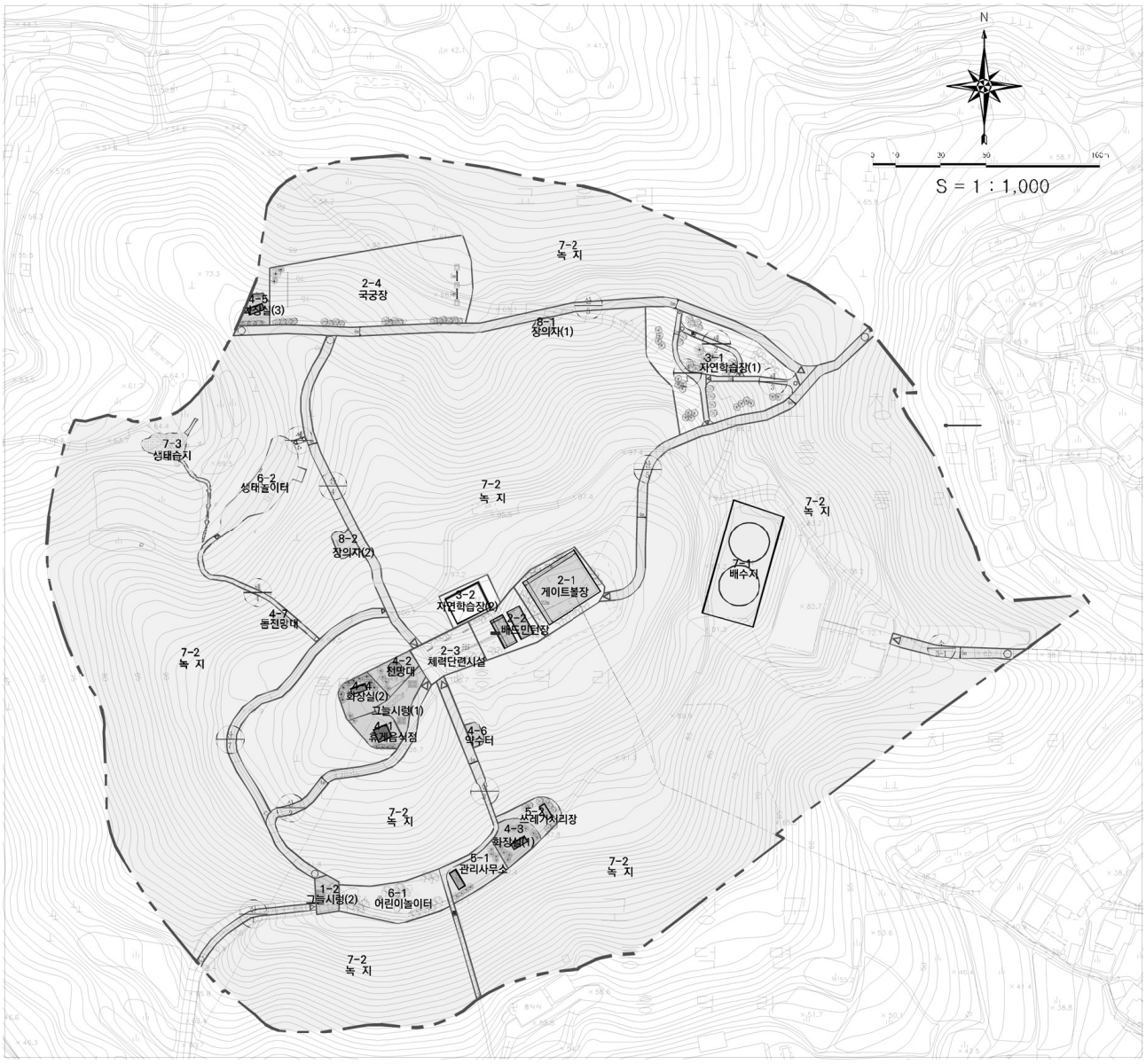

고창군 고시 제2023 - 27호

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 (변경)지정 공고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 제4항에 의거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변경)지정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13일

고 창 군 수

1. 지정 연월일 : 2023. 2. 9. (최초 지정 연월일 2019. 4. 23.)

2. 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 명칭.위치

○ 명 칭 : 두어마을

○ 위 치 : 고창군 심원면 두어1길 55-23

3. 변경사항 : 대표자 성명 및 주소

○ 당 초 : 김 은 규 (고창군 심원면 두어남길 6-14)

○ 변 경 : 유 홍 근 (고창군 심원면 두어2길 73-3)

마을명칭	위 치	규모 (㎡)	대 표 자		비 고
			성 명	주 소	
두어마을 어촌체험 휴양마을	**고창군 심원면 두어1길 55-23**		**유홍근**	**고창군 심원면 두어2길 73-3**	

4. 사업개요

○ 어촌체험 관광, 단체숙박 및 민박 연계사업

○ 어촌 특산물 및 음식 판매

○ 염생식물 관찰, 마을 주민과 함께하는 고창 갯벌 둘레길 투어, 갯벌 생태 체험, 바지락 수제비 쿠킹 클래스, 물김 채취, 농산물 수확체험, 베이크 쿠킹 체험 등

5. 붙 임

○ 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변경) 지정조건 1부.

어촌체험 · 휴양마을 사업자 지정조건

사업자는 어촌체험 · 휴양마을 운영시에 아래 지정조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 일반조건

○ 사업자는 어촌체험 · 휴양마을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사업계획 외의 타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관계 법령, 지침 및 기타 지정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 어촌체험 마을의 시설물 관리와 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을 다른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관리 등 대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어촌체험 · 휴양마을을 운영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얻게 되는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무 처리를 지연하거나 부당하게 처리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용자 또는 관계자 등에게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하거나 비용을 부당하게 징수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고창군 관내 주민에게 이용의 우선권을 부여하여야 한다.

④ 특정 종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종교적 활동을 할 수 없으며, 이용자 및 종사자 등에 대하여 종교적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특정 정당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정치적 활동을 할 수 없으며, 정치적 목적으로 시설물이 이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재산관리

○ 사업자가 이용 및 관리하여야 하는 재산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1]과 같다.

○ 사업자는 군수 사전 승인 없이 어촌체험 · 휴양마을의 시설물의 원형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 사업자는 재산의 중요한 부분을 신축, 증축, 개축, 보수 또는 멸실하거나 주요 장비 등을 구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재산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 또는 멸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사업자는 시설물, 비품, 장비 등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파손되거나 도난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고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 시설물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로 인한 사고는 사용자가 민 · 형 사상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 어촌체험 · 휴양마을사업자 지정이 취소가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재산(지정기간 중 취득한 시설, 장비 등도 포함한다)을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3. 어촌체험 · 휴양마을 사업자 변경 등

○ 사업자가 어촌체험 · 휴양마을사업자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어느 하나를 변경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변경 지정을 받아야 한다.

○ 군수는 [별표2]의 기준에 따라 사업자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 상기 사유 이외에도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사업자에게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지정이 취소하거나 사업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군수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배상에 책임을 져야 한다.

4. 운영조건

○ 사업자는 어촌체험 · 휴양마을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발생하는 모든 사건 · 사고에 대하여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민 ·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 만약 사건 · 사고로 인하여 사상자가 발생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있는 경우, 사업자 부담으로 피해 당사자에게 이를 배상하여야 하며, 이를 회피하거나 군수에게 배상 등을 요구할 수 없다.
- 단, 상기의 사건 · 사고가 시장 또는 제3자에 의해 발생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사업자는 어촌체험 · 휴양마을을 운영상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피해에 대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① 마을을 방문하는 이용객이 입을 수 있는 신체 및 재물손해에 따른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어촌체험 마을 특화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체험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파열로 생긴 손해, 붕괴, 침강 등의 사태로부터 안전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이에 상응하는 보험을 반드시 가입하여야 한다.

③ 체험객에게 제공하는 음식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음식물배상책임보험"**에 반드시 가입하여야 한다.

④ 가스 사고(폭발)로 인하여 발생한 인적, 물적 피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가스배상책임보험"**을 반드시 가입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보험 가입 도중, 계약해지나 계약사항 변경이 있을 시 군수에게 즉시 보고 하여야 한다.

- 상기 보험을 가입 그 증서 또는 사본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험 가입 기간은 어촌체험 · 휴양마을사업 종료 시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어촌체험 · 휴양마을 운영, 관리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사무용품비, 시설수선비, 보안경비, 차량비, 통신설비비, 유류비, 가스비, 체험자재비, 제세공과금(전기, 상수도, 정화조청소료 등) 등]은 어촌체험 · 휴양마을 협의회에서 부담해야 한다.

○ 사업자는 체험(방문)객에게 체험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어촌체험 · 휴양마을에서 정한 운영규약에 따른다.

○ 사업자는 체험마을 이용객에게 건강상 위해 요인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영업 관련 시설 및 설비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 하여야 한다.

○ 그밖에 공중이용시설에서의 [별표 4]의 소방시설 설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전기 등의 시설에 대해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자격 있는 업체로 하여금 안전관리를 대행케 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어촌체험 · 휴양마을을 운영함에 있어서 체험비 결정과 이윤 소득분배는 마을협의회 규약으로 정하되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 배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군수는 어촌체험 · 휴양마을 운영과 관련하여 사업자를 지도 · 감독할 수 있다.

- 군수는 사정에 의하여 체험마을과 관련된 각종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시설 등에 대하여 검사 또는 평가할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또한 군수는 사업자의 체험마을 운영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 등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체험마을 운영실적을 매월 보고하여야 한다.

고창군 공고 제2023-227호

고창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추가)

「고창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고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31일

고 창 군 수

1. 개정이유

❍ 고창군 생활폐기물종합처리시설 운영 협약(‘22.12.29.)에 따른 기금의 재원 중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금액의 일부 지원을 규정하고,

❍ 기금의 존속 기간을 매립장 사용기간과 동일하게 조정하고 주민감시원의 수당지급기준을 변경하고자 「고창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개정하고자함.

2. 주요내용

❍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대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 (안제5조)

❍ 기금의 존속기간에 관한 사항(안제9조)

❍ 주민감시요원의 수당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안제12조)

3. 의견제출

고창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2일(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창군수(참조 : 환경위생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나. 보내실 곳

우 56452, 전북 고창군 아산면 이천강변로 201-95 고창군청 환경위생과 시설관리팀(전화 : 063-560-2902 FAX : 063-560-2879)

다. 의견 제출방법

서면 · 전화 · 팩스 · 직접방문 · 인터넷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창군청 환경위생과 시설관리팀 담당자 민병운 (전화:063-560-2902)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창군 조례 제 호

고창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고창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대금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제9조 본문 중 “2025년 10월 31일”을 “2036년 2월”로 한다.

제12조제1항중 “대한건설협회가 통계청의 승인을 받아 고시한 공사부분 보통인부 시중노임단가 범위에서 군수가 정한다.”를 “예산범위 안에서 협의체 지원기금에 일정액을 지급한다.”로 한다.

같은조제3항중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를 “채용·복무에 관한 사항은 주민지원협의체에서 관리한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 개정 규정의 적용은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주민지원기금의 조성 등) ① (생 략)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2. (생 략) <신 설>	제5조(주민지원기금의 조성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1.·2. (현행과 같음) 3.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대금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제9조(기금의 존속기간)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년 10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지난 이후에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9조(기금의 존속기간) ---------- 2036년 2월----------. ----------.
제12조(주민감시요원의 수당지급기준) ① 법 제25조제2항제2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주민 감시요원의 수당은 대한건설협회가 통계청의 승인을 받아 고시한 공사부분 보통인부 시중노임단가 범위에서 군수가 정한다.	제12조(주민감시요원의 수당지급기준) ① ---------- ---------- 예산범위 안에서 협의체 지원기금에 일정액을 지급한다.

현 행	개 정 안
② (생 략) ③ 제1항의 주민감시요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 채용·복무에 관한 사항은 주민지원협의체에서 관리한다.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입법예고명	「고창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의견 제출자	성 명 (개인/단체)		전화번호	
	주 소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고창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에 대해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2023년 1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고 창 군 수 귀하

고창군 공고 제2023-231호

주택건설공사 감리자(건축) 모집공고

「주택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규정과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이하“감리자 지정기준”이라 한다】」(국토교통부고시 제2022-693호, 2022.11.30.)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택건설공사 감리자(건축)를 지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1일

고창군수

1. 공고기간 : 2023. 2. 1.(수) ~ 2023. 2. 8.(수) (공휴일 포함 7일 이상)
2. 사업내역

사 업 내 역	
가. 사 업 명 : 고창읍 석교리 11-2번지 일원 공동주택 신축공사 나. 사업주체 : ㈜광신주택 대표이사 이길행 (062-460-2613) 다. 설 계 자 : ㈜디자인현대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 김춘광 라. 시 공 자 : ㈜광신종합건설 대표이사 이경노 (062-365-7171) 마. 사업개요 ○ 위 치 :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석교리 11-2번지 일원 ○ 대지면적 : 9,325.00㎡ ○ 연 면 적 : 29,902.2743㎡ ○ 규 모 : 4개동, 지하1층/지상18층 ○ 세 대 수 : 총 206세대 ○ 공사기간 : 2023. 4. 01. ~ 2025. 04. 30. (착공신고수리일로부터 25개월 예정) ○ 사업계획승인일 : 2022. 12. 30. 바. 사 업 비 ○ 총사업비 : 68,860,324,000원 ○ 총공사비 : 37,916,916,000원(일반관리비, 이윤포함) 1. 감리대상 건축공사비 : 32,828,943,000원 2. 타법감리 공사비 : 5,087,953,000원 ※ 부가가치세 미포함, 타법감리 대상 공사비는 전기, 정보통신, 소방설비공사의 비용임. ※ “총사업비 산출 총괄표” 및 “공종별 총공사비 구성 현황표”는‘별도 자료’ 파일 참조 ※ 총공사비는 견본주택건립공사, 발코니확장 및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비가 포함되어 있음.	사. 입찰가격 산출 ○ 감리대가 : 869,179,094원 (건축공사비의 2.6476% 적용_ 요율은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기함) ※ 기초금액 : 843,103,721원 (감리대가의 97% 적용) ※ 부가가치세는 제외된 금액임. ○ 복수예비가격 : 조달청(G2B) ▶ 감리대가의 97± 3% 범위 내에서 15개의 구간을 설정하고 각 구간 내에서 무작위로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가업체)예비가격번호 2개 추첨(비공개) ▶복수예비가격 무작위 순으로 재배열하여 개찰집행 후 예정가격 산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참조 ○ 예정가격 산출(전자입찰방식) : 입찰 참가업체가 입찰시 선택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선택빈도가 가장 많은 4개의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 가격의 산출평균금액

3. 감리원 배치계획표(사업주체가 제출한 주요공정계획서에 의함)

구분	2023									2024												2025				비고
	4	5	6	7	8	9	10	11	12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3	4	
개월수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전체	■	■	■	■	■	■	■	■	■	■	■	■	■	■	■	■	■	■	■	■	■	■	■	■	■	25개월 ('23. 4. 1.~ '25.04.30.)
건축	■	■	■	■	■	■	■	■	■	■	■	■	■	■	■	■	■	■	■	■	■	■	■	■	■	25개월
토목	■	■	■	■	■	■	■	■									■	■	■	■	■	■	■	■	■	17개월
골조					■	■	■	■	■	■	■	■	■	■	■	■										12개월
설비					■	■	■	■	■	■	■	■	■	■	■	■	■	■	■	■	■	■	■	■	■	21개월

※ 상기 배치계획은 실 착공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입찰서 제출일시 및 방법

가. 일 시 : 2023. 2. 9.(목) 09:00 ~ 2023. 2. 13.(월) 14:00

나. 방 법 :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유의사항

(1) 전자입찰서 제출 시 8.가항의 서류(신청서 접수 시 제출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감리자지정 신청서류는 나라장터시스템을 통하여 직접 접수(접수된 응모서류는 검토하지 않음) 하여야 하며, 낙찰예정자의 사실확인서류와 신청서류 대조 시 기록누락 및 미제출된 서류에 대하여 수정·보완은 불가하오니 불이익(평가제외 등)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신청서 제출서류(8.가항의 서류)를 미첨부시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실격처리) 됩니다.

(3)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만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나라장터 시스템의'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5)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제출기택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6) 입찰보증금은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하며,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7)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8)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신규등록업체 입찰참가자격 등록방법은 별첨한 안내문<참고자료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개찰일시

가. 일 시 : 2023. 2. 13.(월) 15:00 이후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이용

(2) 나라장터의 개찰결과는 입찰가격에 대한 순위로서, 자기평가서의 사업수행능력점수와 합산하여 최종 예비순위가 확정됩니다.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상의 개찰결과는 종합평가에 의한 우선순위가 아닌 입찰가격에 따른 낙찰하한율 적용순위이며 낙찰하한율은 사업수행능력 배점(세대별)에 종합평점 85점이 되기 위한 예정가격 대비 최소입찰가격 비율을 말함.

(4) 입찰결과 우선순위(1~3순위)업체에 대하여 고창군청 홈페이지(https://www.gochang.go.kr) 고시공고 게시판에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 사실확인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대별 낙찰하한율 산출표를 별첨<참고자료2>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6. 사실확인 서류 제출기간(종합평점 예비 상위 3개 업체에 한함)

가. 기 간 : 2023. 2. 14.(화) ~ 2023. 2. 16.(목) 18:00 (근무시간 내만 가능)

나. 장 소 : 고창군청 종합민원실 건축팀(1층)

※ 우선순위(1~3순위) 업체는 아래 내용이 포함된 서류 사본 1부를 사실확인서류 제출 시 별도 제출

-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자기평가서[별지 제2호 서식]
- 참여감리원의 최근 1년간의 경력(협회발행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

※ 위 서류는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간 내에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감리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7. 열람 및 이의신청

가. 기 간 : 2023. 2. 17.(금) ~ 2023. 2. 21.(화) 18:00 (근무시간 내만 가능)

나. 열람방법 : 고창군청 종합민원실 건축팀 방문 열람(대표자 또는 위임장을 제출한 대리인에 한함)

다. 열람 및 이의신청 내용

(1)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자기평가서[별지 제2호 서식] : 본 공고 자기평가서 상의 총괄표를 말함
(3) 참여감리원의 최근 1년간의 경력
※ 상기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열람 및 이의신청 불가하며, 열람 시 공문(위임장 첨부) 제출하고 위임 받은 자만 열람 가능함(서류 사진 촬영 불가)
※ 우편, 팩스, 전화로는 일체 접수하지 않으며, 이의신청과 관련한 상담도 일체 받지 않습니다.

라. 이의신청 방법
(1) 이의신청은 6하 원칙에 의거 "○○감리회사의 △△감리원의 최근 1년간 경력 중 ▽▽현장 근무기간이 □□사유로 결격이다"라고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함
(2) 소명요구를 받은 자는 문서로서만 소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이의신청(소명) 관련 방문상담 및 전화상담은 일체 금지되며, 이를 시도하려는 자는 부정한 행위를 하려는 자로 간주함.
※ 이의신청에 따른 사실여부 확인결과 거짓으로 판명된 경우(신청자, 대상자 모두 해당)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에 의거 행정제재 처리함.
※ 이의신청 기간 이후의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반려 처리함.

8. 응모서류
가. 신청서 접수 시 제출서류
(1)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 (2) 자기평가서[별지 제2호 서식] 및 서약서(별첨1)(인감날인)
2. (3) 감리원 배치계획서(별첨5 참조)
3. ※ 별지 제1호 서식 감리원 명단(비실명인 경우 직무분야 및 등급표기)과 배치계획이 상이한 경우 감리원 배치계획 평가시 부적합 처리(평가대상에서 제외)하오니 비평가대상 및 가점을 위한 추가 배치감리원의 경우 반드시 직무분야 및 등급을 표기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

나. 사실확인 제출서류(우선 순위 상위 3개 업체에 한함)
(1) 감리자지정기준 별지 제1호 서식 뒷면 ①~⑯까지 사실확인서류 일체를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고시 제2022-693(2022.11.30.)호)]」에 적합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
(2) 자기평가서[별지 제2호 서식]
(3) 분야별 세부평가[별지 제2호 서식-1] 및 별첨 2, 3, 4
(4) 재무상태 건실도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에 대한 신용정보업자의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제출

(5) 감리업무 수행실적 확인서

■ 유의사항

-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또는 대한건축사협회(이하“협회"라 한다)에서 발급한 증명 서류에 명시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

- 법인 건축사 명의로 수행한 감리수행 실적은 법인의 것으로만 인정

※ 감리업무 수행실적은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주택법·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주택건설공사의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준공(최근 3년간 중 해당 감리기간 동안 수행한 개월 수에 따라 산정)하였거나, 수행 중(전체 용역기간 중 최근 3년간에 실제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를 수행한 개월수에 따라 평가하여 산정)인 실적(감리수행금액)을 인정함

※ 감리업무수행실적에 감리비 미기재 및 미확인된 사항은 감리실적으로 인정될 수 없어 평가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등에 미리 확인하여 수행실적(연면적 및 감리업무 수행기간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6) 행정제재 여부 증명 : 모집공고일을 제외한 최근 1년간 행정처분 유무 확인서

■ 유의사항

- 감리자(회사) 행정제재평가에 있어 행정처분을 받은 사항이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대한건축사협회(지회포함) 및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한 각각의 최근 1년간 행정처분 유무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 특히 감리회사와 건축사사무소를 겸업하는 경우로서 최근 1년 기간 동안 소속된 대표 건축사에 대하여 대한건축사협회(지회포함)의 행정제재 유무확인서 필요

(7) 설계용역 수행 : 당해 주택건설공사의 설계용역수행 여부확인 증명서(당해 주택건설 공사의 설계가 현상공모인 경우에는 정규 간행 일간지에 공고한 모집공고문 사본 포함) - 해당업체에 한함

(8)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증빙자료(건설신기술, 특허) : 특허증, 특허등록원부, 등록특허 공보 및 본 공고상의 재무검토 보고서 또는 투자실적 증명서류(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

(9) 업무중첩도 관련 : 감리원의 경우 다른 공사현장과 당해 공사현장의 해당공종 및 배치계획기간이 중복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 경우 감리자지정신청자

는 다른 공사현장의 감리자지정권자가 공고일 이후 발급한 **예정공정표 및 감리원배치계획서**를 당해 감리자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10) 교체빈도 : 최근 1년간 감리자 및 감리원이 참여한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계획공정 만료시점 이전에 교체된 교체율 및 교체건수 (계획공정 만료시점은 사업승인이 변경되어 계획공정이 변경된 경우라도 감리자 모집공고 시 제출된 계획공정 만료시점을 말함)

(11) 확인서 :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제4조2항의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별지 제5호서식]

(12) 감리업무 수행계획서 : 책임감리원 서명・날인

- 사업개요, 감리업무 수행 시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 공정관리, 시공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 기타 기술 검토 등

(13) 감리원 관련

- 자격증명서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 자격증 사본
- 학력증명서 : 해당교육기관 발행 학력증명서(행정기관 및 인터넷 증명발급 가능)
- 경력 및 실적 : 감리원 경력증명서
- 행정제재 : 최근 1년간 행정처분 유・무 확인서
- 교육이수확인서 : 최근 3년간 해당교육기관의 교육이수 확인서

(14) 기타증빙자료(감리자 응모자격 관련)

- 건설기술용역업등록증 또는 감리전문회사등록증(건축사사무소만 등록된 경우 제외), 건축사사무소 등록증(감리전문회사만 등록된 경우 제외),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기타 위임장(대리인 참석 시) 등

※ 제출서류 중 사본일 경우 하단우측에 신청자(대표자)가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야 하며, 상기 번호에 부합되게 상철하고 견출지를 부착하여 주시기 바람.

※ 응모서류양식 등이 예전자료일 경우, 모집공고 당시 최신기준을 적용함.

다. 유의사항

(1) 상기 나항의 구비서류 중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장, 한국건설기술인협회장 또는 대한건축사협회장이 발행하는 경력확인서상 확인이 가능한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2) 재무상태검토보고서, 기술개발실적사본 및 투자실적증명원, 자격증사본, 학력증명서, 교육훈련증명서 등 사본을 제외(변경사항이 없는 경우)한 제출서류(감리자지정기준 제6조

제1항 관련)는 **감리자 모집 공고일 이후에 발급 또는 작성된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하며, 모집공고일 이전에 발급된 서류를 제출 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됨

(3) 상기**"가. 신청서 접수 시 제출 서류"**및**"나. 사실확인 제출서류"** 중 1건 이상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며, 제출서류 중 자기평가서 기재점수 등이 사실관계 확인결과 사실과 다른 경우, 제출 서류 미비 등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이 조치함

- 과다계산 : 해당항목"0"점 처리(분야별 평가방법 적용기준 철저)
- 사실확인 서류와 상이한 내용 기재 :"실격"
- 자격증, 경력, 실적서류 허위 기재 :"실격","고발","행정처분" 등
- 감리원 배치계획서 미제출 및 예정공정표와 불일치 :"실격"

(4) 행정제재 평가 관련

- 감리자 행정제재 평가에 있어 행정처분을 받은 사항이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대한건축사협회 및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각각의 최근 1년간 행정처분 유무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 특히, 건설기술용역업과 건축사 업무를 겸업하는 경우 소속된 대표건축사에 대하여 대한건축사협회에서 발행하는 행정처분 유무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최근 1년간 소속 대표건축사가 대표이사에서 해임 또는 사임한 경우, 건축사사무소를 이동한 경우 등에도 행정제재 등에 관하여 사실조회하여 평가하오니 자기평가서에 명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자기평가서와 상이하게 당해 감리자 소속기간 동안 행정처분 사항이 있는 경우 허위기재로 보아 실격처리함

(5) 감리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시 감리업무수행실적, 행정제재여부, 감리자 등의 자격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감리자(회사)가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제4조(감리자 등의 자격) 제1항 각호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종합분야, 설계·사업관리의 세부분야 중 일반 또는 건설사업관리로 등록한 건설기술용역업자 및 건축사 업무신고를 한 자]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인 경우 해당 등록증 및 건축사업무 신고필증 등을 모두 제출 하여야 하며, **법인등기부등본은 말소사항을 포함한 서류로 제출하여야 함**

9. 감리자 적격심사 및 지정 등

가. 평가기준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693호, 2022.11.30.「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에 의하여 평가 하며, 동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공고를 기준으로 함

(2) 상기"(1)"을 적용함에 있어 해석 상 차이가 발생할 경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또는 감리자 지정권자의 결정에 따른다.

나. 감리자지정 절차 및 방법

(1) 감리자모집공고 ⇒ 전자입찰서 제출(신청서류 첨부) ⇒ 개찰 ⇒ 우선순위(예비 1~3순위) 선정 및 통보 ⇒ 상위 3개 업체 사실확인서류 접수 ⇒ 열람 및 이의신청 ⇒ 세부평가 ⇒ 사실조회 ⇒ 감리자 지정(통보)

(2) 사업수행능력 평가·예정가격 추첨 및 입찰가격 개찰 결과 상위 3개 업체는 상기서류

를 제외한 **사업 수행능력 평가에 필요한 사실확인 제출 서류는 제출기한 내에 감리자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만약 기한 내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감리자 선정에서 제외됨

(3) 상위 3개 업체에 대하여 자료제출에 대한 별도의 통보는 없으며, 사업수행능력평가 관련 사실확인 자료는 기한 내 1회에 한해 접수받음

(4) 상위 3개 업체는 1순위 업체부터 세부 서류심사 및 사실조회를 실시하며, 세부평가 결과 감리자 지정기준 제8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제10조 규정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실격처리 하며, 부정행위 감리자로 처분될 수 있음

(5) 선순위 업체가 낙찰자로 지정될 경우 차순위 업체의 세부평가는 실시하지 않음

(6) 만약 상위 3개 업체에서 낙찰자가 선정되지 않을 경우 순위에 의거 계속 평가

10. 감리자(원) 응모자격 및 심사기준 적용시점

가. 감리자 응모자격 (당해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자의 계열회사는 제외)

(1) 「주택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및「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제4조 제1항에 적합한 자

나. 감리원의 응모자격

(1) 「주택법 시행규칙」제18조 제1항 및「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제4조제2항 및 에 해당하는 자로서「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42조 제2항 관련 [별표3]에 의한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을 이수한 자에 한함**(종전의「건설기술관리법」에 따라 감리원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개정규정에 따른 건설기술자 교육훈련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다. 감리자(원) 심사기준의 기간계산시점 : 감리자의 모집공고일(최초모집공고일 기준)

11. 사업 주체 또는 시공자의 행정처분 이력 및 “감리원 추가의무배치”에 관한 사항

1) 사업주체는 “(주)광신주택”으로 행정처분 사실이 없음.

2) 시공자 “(주)광신종합건설”의 행정처분 이력

가) 사업시행계획(변경) 승인일 2년 이내 영업정지 처분에 관한사항

- 해당사항 없음.(건설산업지식정보 시스템(www.kiscon.net) > 건설업체 정보조회에서 조회)

나) 사업시행계획(변경) 승인일 기준 최근 2년간 벌점에 관한사항

※ 출처 : 건설산업지식정보 시스템(www.kiscon.net)>벌점조회>공개벌점보기에서 조회.

검색결과 ← 이전페이지

- 총건수 | 1건 ! 유의사항 업체비교 관심등록 관심목록

	상호	사업자번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업체상태	등록업종	전화번호	비고
□	(주)광신종합건설	410-81-997**	이경노	전라남도 담양	정상	토목건축공사업	061-381-7107	요약정보 상세정보

< 1 >

12.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감리자지정기준 제7조 규정에 의한 공동도급은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13. 재무상태 평가 : 재무상태건실도의 평가는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0”점 처리

14. 기타 유의사항

가. 공고번호 기준으로 1개사가 2건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의 경우 모두 실격 처리합니다.

나. 감리자로 지정되지 않은 응모자에게는 별도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다. 감리자로 지정된 자가 회사파산 등의 사유로 감리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감리지정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순위로 지정하며, 이 경우 감리수행일을 기준으로 감리비를 정산합니다.

라. 중복배치 여부조회 및 이의 신청접수 결과 중복배치로 통보된 경우 [타 기관(감리지정권자)에서 시행(지정)하는 감리용역입찰에서 중복 응모하여 감리용역의 낙찰자로 선정된 경우 포함] 이의 신청에 따른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감리자지정신청자에게 중복배치여부 등에 대한 증빙자료를 요구(전화)할 수 있으며, 증빙자료를 요구한 후 24시간이내(휴일 제외)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감리자의 업무중첩도 항목 등을 적용하여 “실격”처리 한다.

마. 감리자(원)의 경력 및 실적 평가 관련

(1) 건설기술자 경력확인서상 사업명 및 공사종류등의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22조 관련 별지 제20호 서식의 규정에 의한 공사분류가 불분명 하거나 또는 상이하여 평가가 불가하거나, 평가 및 산정방법에 의한 비율 적용이 곤란한 경

우 해당사업의 사업계획승인 및 인.허가권자 또는 발주청의 확인서등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소명자료를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할 경우 해당사업의 경력 및 실적에 대하여 평가에서 제외하거나 평가 및 산정방법에 의한 비율 적용이 서로 상이한 경우 최소 비율을 적용 합니다.

(2) 감리원 경력 및 실적 평가시 경력확인서상의 “근무형태(상주 또는 비상주)”가 불분명하여 평가가 불가한 경우 경력 및 실적 산정에서 제외합니다.(다만, 발주청 또는 인・허가권자의 확인서를 동 공고문 8.나.의 사실확인서류 제출시 첨부한 경우는 인정 가능함)

(3) 감리자 감리업무 수행실적은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또는 “대한건축사협회”에서 발급한 증명서류에 명시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하며 그 외는 실적산정에서 제외합니다.

(4) 감리자의 감리업무 수행실적 산정 시 공동주택(주상복합 포함) 중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득한 주택건설공사 이외(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는 건축공사로 산정합니다.

(5) 감리자의 감리업무 수행실적 산정 시 종전의「건설기술관리법」에 따라 책임감리, 시공감리 용역을 수행한 경우 개정 규정에 따른 평가 시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수행한 것으로 봅니다.

(6) 토목분야감리원의 경력산정시 주택건설공사, 건축공사, 토목공사에서 토목분야 감독, 설계,시공, 건설사업관리업무, 감독(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따른 발주청소속 직원) 업무 및 공무원으로서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우 이외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바. 감리낙찰자는 사업시행자가 요구하는 기일 내 감리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회피하는 경우 감리지정을 취소하고 차순위자를 감리자로 지정합니다.

사. 감리원 교육훈련 일수 산정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 관련 [별표3]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전문교육이어야 하며 모집공고일 포함 최근 3년간이며 그 외의 기간은 일수 산정에 제외합니다.**(종전의「건설기술관리법」에 따라 감리원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개정규정에 따른 건설기술자 교육훈련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아. 50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공사는 감리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전라북도 내에 주된 사무소가 등록된 자만이 지역가점(1점)을 부여 합니다.

자. 제출서류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이 판명된 때에는 부정행위 감리자로 관련 협회에 통보하여 관리하며, 감리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감리지정을 취소하고 차순위자를 감리자로 지정합니다.

차. 감리자로 지정된 후 사업승인신청의 취하 또는 사업승인의 취소・취하 등의 사유

가 발생되면 감리지정은 자동으로 취소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카. 감리자 평가점수가 사실보다 낮게 평가된 경우 상향조정은 하지 아니하며, 상향 평가되어 배점에 영향을 미칠 경우 과다계산으로 보아 해당 항목 “0”점 처리합니다.

타. 감리자 지정 이후 분양승인 및 사업계획변경으로 사업비의 증감이 발생할 경우 지정 당시의 예정가격 요율 및 낙찰율에 의거 당사자간 감리비를 정산하여야 합니다.

파. 감리원 배치계획은 감리인・월수의 적정여부를 포함하여 평가합니다.

하. 감리원 배치계획 평가 및 적용방법

(1) 감리원 배치계획은 감리자 모집공고 시 사업주체가 제출한 주요공정계획서에 따라 분야별감리원(비평가대상감리원 포함)을 해당분야별 전체 공사기간 동안 배치하여야 하며 해당 분야 공사기간 이외에 배치하였을 경우에는 평가 인월수에서 제외합니다. 또한 비상주감리원 및 신규감리원(1,000세대 미만 제외)은 전체 공사기간에 배치하여야 하고, 건축분야(최소 1명 이상) 미배치시 비상주감리원(경력 및 실적) 및 신규감리원배치에 대한 점수를“0점”으로 평가합니다.

(2) 비평가대상감리원(평가대상 분야별감리원중 후반기에 배치되는 토목감리원, 비상주, 신규감리원 제외)의 배치는 3인 이하 일 경우 건축, 토목, 기타설비 순으로 배치하되 4번째부터는 직무분야 구분없이 배치 가능하며 비평가대상 감리원 전체 중 1명은 부분배치 가능합니다.

(3) 비평가대상 감리원, 추가배치 감리원, 후반기에 배치되는 토목 감리원, 신규 감리원, 조경 감리원(1,500세대 이상)은 감리자지정 신청시 실명이 아닌 직무분야 및 등급만 표기하여 배치계획서를 작성 제출 가능 합니다.

(4) 토목감리원을 전반기(1차 배치계획)와 후반기(2차 배치계획)로 나누어 배치하는 경우 후반기 배치되는 토목감리원은 등급만 표기하여도 되며, 전반기 배치되는 토목감리원의 동등이상의 자격(등급 및 경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5) 조경감리원은 1,500세대 이상에서만 배치계획을 작성하고 감리원 배치계획서에 등급만 표기하며 조경감리원 및 신규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 주택건설공사 감리비지급기준의 감리인・월수에 포함합니다.

(6) 감리원 등급별 환산비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등급별 임금 중 중급건설기술자의 임금을 1로 기준하여 소수점 넷째자리 반올림하여 산출합니다.

거. 감리자소속 감리원 및 참여감리원(최근 1년간)중 주택건설공사에 감리원(건설기술진흥법 및 건축법에 의한 상주감리를 포함한다)으로 현장배치된 감리용역에서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감리원이 이동되었거나, 감리원 경력 확인서상에 감리원의

배치계획기간을 완료하고 이동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감리자지정권자가 발급하는 증명서 등)등을 첨부하여야 하며, 배치계획기간을 완료하고 이동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가 없는 경우에는 감리자(원)교체빈도 항목을 적용하여 감점 처리 합니다.

너.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에 대하여 『주택건설공사 감리비지급기준』의 [별지 제2호서식]의 토목, 건축, 기계설비 분야의 공정에 해당 여부, 최초 출원인을 확인 할 수 있도록 특허증과 특허등록원부 및 특허 요약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특허공보와 최초출원인 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해공정 해당 여부는 감리자지정권자의 결정에 따릅니다.

더. 동 기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적격심사는 감리자지정 신청시 제출한 응모서류 중 동 기준 제4조(감리자 등의 자격) 규정에 따른 자격여부를 평가하며 사업수행능력 평점은 제출한 자기평가서의 신청자 평점으로 평가하고 세부평가 및 사실확인 등은 적격심사 결과 상위 3순위(1순위부터 3순위)업체에 대하여만 실시합니다.
(단, 자기평가서가 미흡하게 작성되어 감점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러. 입찰을 무효로 하는 사항
(1)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 등록을 한 자에 한함)
(2) 모집공고 기준으로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3) 담합이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 방해 등을 한 자의 입찰
(4)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관계 담당 공무원이 이를 인정한 입찰

머. 공고문에 표기되지 아니하거나 표기내용이 감리자 지정기준과 상이할 경우『주택건설공사감리자 지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2-693호, 2022.11.30.) 및 주택건설공사 감리비 지급기준에 따릅니다.

버. 제출된 서류는 교환 또는 보완 할 수 없으며 응모서류는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종료 후 폐기합니다.

서. 본 용역은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중 감리원 추가의무배치 사항에 해당이 없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 기타 의문사항은 고창군청 종합민원실 건축팀(☎063-560-240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분 야	접수번호
건 축	

주택건설공사 감리자(건축) 지정 신청

(사업명 :)

2023년 월 일

(회사명 기재)

■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별지 제1호서식]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 신청서

(앞 쪽)

1. 공사개요

사업주체	상 호		대표자	

사업계획 내용	위 치			대지면적	㎡
	사업내용	규 모	연면적	착공일	준공일
		층, 동, 세대	㎡		

설 계 자	성 명		상 호	
	주 소			

2. 감리자(감리회사)

※ 공동응모시 상단은 주응모자, 하단은 부응모자를 기재함

상 호		대 표 자		등록번호 자격번호	

주 소		용역참여 지 분 율	%	전화번호	
			%		

3. 감리원

※ 공동응모시 소속회사를 기재함

구분	분야	성 명	생년월일	등급	자격번호	소속회사
총 괄						
분야별						
분야별						
분야별						
비상주						
신규(1)						
신규(2)						
신규(3)						
신규(4)						

「주택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및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제6조에 따라 위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자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입찰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감리자 지정권자 귀하

유의사항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제5조제3항제9호에 따른 '감리원배치계획표 양식'에 당해 용역에 참여하는 감리원을 배치한 '감리원배치계획표'를 동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며 미제출할 경우에는 실격처리됨
사실확인서류 : 뒷면(1순위부터 3순위업체 해당)

210㎜×297㎜[백상지(80g/㎡)]

(뒤 쪽)

사실확인 서류	감리자(회사)	①재무상태 건실도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정보업자의 신용평가등급확인서
		②감리업무 수행실적	최근 3년간 주택건설공사의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업무를 수행중이거나 완료한 실적증명서
		③행정제재	최근 1년간 행정처분 유무 확인서
		④설계용역 수행	당해 주택건설공사의 설계용역수행 여부확인 증명서. 당해 주택건설공사의 설계가 현상공모인 경우에는 정규간행 일간지에 공고한 모집공고문 사본 포함
		⑤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해당업체의 지정증명서와 건설기술개발과 관련된 투자실적
		⑥감리원배치계획	당해 공정에 따른 감리원 배치계획(감리원 추가 배치시 포함)
		⑦업무중첩도	다른 공사·용역 등에 참여하고 있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용역의 허가권자(또는 발주청)가 공고일이후 발급한 배치계획서 등
		⑧교체빈도	최근 1년간 감리자가 참여한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에서의 교체율 및 교체건수
		⑨감리업무 수행계획서	사업 개요, 감리업무수행시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 공정관리, 시공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 기타 기술 검토 등
		⑩공동도급 협정체결서	공동도급으로 응모할 경우 공동도급협정 체결서
		⑪확인서	별지 제5호서식(참여감리원중 제4조제2항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제출함)
	감리원	⑫자격증증명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자격증 사본
		⑬학력증명서	해당 교육기관 발행 학력증명서
		⑭경력증명서	감리원(건축사보, 건설기술자 포함)자격에 따른 경력증명서
		⑮행정제재	최근 1년간 행정처분 유무 확인서
		⑯교육이수 확인서	최근 3년간 해당 교육기관의 교육이수 확인서

유의사항

해당분야 증명 및 확인서는 다음의 기관에서 발행한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것으로서 당해 감리자지정권자가 검토하여 그 인정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1. 당해 면허교부 및 등록권자의 증명서 또는 확인서
2.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
3. 대한건축사협회

상기 구비서류중 국토교통부장관,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장, 한국건설기술인협회장 또는 대한건축사협회장이 발행하는 경력확인서상 확인이 가능한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210㎜×297㎜[백상지(80g/㎡)]

■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별지 제2호서식]

자 기 평 가 서

구분		평 가 항 목			점수 기준	평점 신청자	평점 지정권자	평점 산정 근거 (해당 사항만 기재)
감리자 (감리 회사)		재무상태 건 실 도	신용평가등급		5			예) 회사채 신용평가등급 BB-
		감리업무수행실적(감리비)			12			예) 100(억원)
		행정제재			9			예) 업무정지(월), 부실벌점(점)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기술개발실적		2			예) 특허 0건
			기술개발투자실적		2.5			예) 00(%)
			교육훈련		0.5			예) 70시간교육 0명, 35시간교육 0명
		신규감리원배치			2			예) 건축 0명
		교체빈도			7			예) 00(%)
		가점	감리원 추가배치, 총괄감리원 등급상향		(1)			예) 건축 0명외 0명, 총괄감리원 특급건설기술자
			지역가점		(1)			예) 00도(道), 00개월
			설계용역수행가점		(1)			예) 현상 00(점)
		계			40			
		적격여부	감리원배치계획		적・부			예) 예정공정표와 감리원배치 적합
			업무중첩도		적・부			예) 중복배치 없음
			감리원 추가의무배치		적・부			예) 건축감리원 0명 추가 배치
감리원	총괄감리원	등급			6			예) 특급건설기술자
		경력 및 실적			18 (15)			예) 00(년) * ( )는 면접을 실시하는 경우 배점
		면접(발표)			(3)			* 면접을 실시하는 경우만 해당
		감리업무 수행계획서			3			
		가점	자격가점		(0.2)			예) 건축사, 00기술사
		감점	행정제재		(-2)			예) 업무정지(월), 부실벌점(점)
			교체빈도		(-1)			예) 00(건)
		소 계			27			
	분야별감리원	등급		건축	2			예) 특급건설기술자
				토목	2			예) 고급건설기술자
				기타설비	2			예) 고급건설기술자
		경력 및 실적		건축	7			예) 00(년)
				토목	7			예) 00(년)
				기타설비	7			
		자격가점		건축	(0.1)			예) 건축사, 00기술사
				토목	(0.1)			
				기타설비	(0.1)			
		감점	행정제재	건축	(-1)			예) 업무정지(월), 부실벌점(점)
				토목	(-1)			
				기타설비	(-1)			
			교체빈도	건축	(-0.5)			예) 00(건)
				토목	(-0.5)			
				기타설비	(-0.5)			
		소 계			27			
	비상주감리원	등급			2			예) 고급건설기술자, 현장배치 0(개소)
		경력 및 실적			4			예) 00(년)
		감점	행정제재		(-1)			예) 업무정지 00(월)
			교체빈도		(-1)			예) 00(건)
		소 계			6			
	계				60			
총 계					100			

상기 자기평가서는 「주택법」,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및 당해 감리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제반 규정을 숙지하고 동 규정에 적합하게 작성・제출되었음을 확인하고, 제출된 신청자 평점 중 "허위・거짓 등"의 방법에 의하여 작성된 경우에는 실격처리되며 관련규정에 따라 입찰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입찰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297㎜[백상지(80g/㎡)]

Ⅰ. 총괄표

[별지 제2호 서식-1] 분야별 세부평가 (우선순위 상위 3개업체에 대하여만 제출)

가. 감리자(감리회사)

<table>
<tr><th>항 목</th><th>배점</th><th>적 용 기 준</th></tr>
<tr><td>소 계</td><td>40</td><td>가점 및 감점은 별도 합산 후 40점 이내</td></tr>
<tr><td>(1) 재무상태 건실도</td><td>5</td><td>○ 평가 및 산정방법

- 재무상태 건실도의 평가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다음 각 호에 따라 적용함

1.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할 수 있음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제1항의 신용평가업자가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함.

3.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함.

4. 참여 감리자가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0점 처리

- 배점기준
<table>
<tr><th>점수</th><th>회사채의 신용평가등급</th><th>기업어음의 신용 평가등급</th><th>기업 신용평가등급</th></tr>
</table></td></tr>
</table>

5.0	AAA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A1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A2^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4.2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0	$A3^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3.4	BB^+, B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BB^-	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 B^0, 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2.6	CCC^+ 이하	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 이하에 준하는 등급)

(2) 감리업무 수행실적	12	○ **평가 및 산정방법** -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주택법」·「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주택건설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가 발주한 공사를 포함한다)의 감리용역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준공(최근 3년간 중 해당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기간동안 수행한 개월 수에 따라 산정)하였거나, 수행 중(전체 용역기간중 최근 3년간에 실제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수행한 개월 수에 따라 평가하여 산정)인 실적(감리수행금액)을 인정 、준공금액 또는 수행금액(원) = 감리금액(원) × (3년 이내 수행 일수/총공

		사기간 일수) <소수점이하 절사> 예) 최근 3년간 실적계산 방법 ① 감리용역이 준공된 경우 2013.9.1. 모집공고한 경우로서 공사기간 4년(2009.1.1. 공사착공, 2012.12.31. 준공)인 30억원 주택건설공사의 감리를 수행한 경우에는 2010.9.1.부터 2012.12.31.까지 금액계상[2010.9.1.부터 2012.12.31.까지의 해당되는 감리비] * 준공실적(원) = 30억(원) × [{122일+(2년×365일)}÷(4년×365일)] = 1,750,684,931(원) ② 감리용역을 수행중인 경우 2013.9.1. 모집공고한 경우로서 공사기간 5년(2011.1.1. 공사착공, 준공예정일 2015.12.31)인 30억원 주택건설공사의 감리를 수행중인 경우에는 2011.1.1부터 2013.8.31.까지 금액계상[2011.1.1.부터 2013.8.31.까지의 선금급이나 기성금 수령에 관계없이 실제 적용기간 동안의 해당되는 감리비] * 수행실적(원) = 30억(원) × [{(2년×365일)+243일}÷(5년×365일)] = 1,599,452,054(원) 、「건축법」 및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공사(주택건설공사 이외의 공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한 경우에는 80% 인정 ※ 건축공사의 분류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관련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른다. - 감리지정 신청자의 실적인정 범위 、감리업무 수행실적은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또는 “대한건축사협회”에서 발급한 증명서류에 명시된 실적에 한함 、법인이 아닌 건축사사무소의 감리업무수행실적은 해당 건축사사무소의 건축사업무를 신고한 자의 것만 인정

、법인 건축사사무소 명의로 수행한 감리수행 실적은 법인의 것만 인정함

- 배점기준

(단위 : 억원)

공사규모	기준금액 및 배점				
1,500세대 이상	350이상	350미만 250이상	250미만 150이상	150미만 70이상	70미만
1,500세대 미만 1,000세대 이상	250이상	250미만 150이상	150미만 70이상	70미만 50이상	50미만
1,000세대 미만 800세대 이상	150이상	150미만 70이상	70미만 50이상	50미만 30이상	30미만
800세대 미만 500세대 이상	70이상	70미만 50이상	50미만 30이상	30미만 10이상	10미만
500세대 미만 300세대 이상	50이상	50미만 30이상	30미만 10이상	10미만 5이상	5미만
300세대 미만	10이상	10미만 7이상	7미만 5이상	5미만 3이상	3미만
배 점	12	10.8	9.6	8.4	7.2

(3) 행정제재 9

○ **평가 및 산정방법**

- 다음 기준에 따라 각각 감점하되, 감점합계 점수가 배점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배점기준만큼 감점

、감리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등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또는 업무정지 등을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배점 1점씩 감점 (1월은 30일 기준이며, 30일 미만은 1월로 간주)

예) 업무정지 44일인 경우 감점산정
* 감점(점) = 1(점) × 월수(월) = 1 × 2 = 2(점)
월수(월) = 44(일) / 30(일) = 1월 + 14일(14일 = 1월 간주) ⇒ 2(월)

、감리업무와 관련하여「건설기술 진흥법」제53조에 따라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 감리자의 부실벌점은 누계평균 부실벌점에 의하여 다음 기준에 따라 감점

ㄱ. 누계평균 부실벌점이 0.15점 이상 0.25점 미만 : 0.5점 감

		점 ㄴ. 누계평균 부실벌점이 0.25점 이상 1점 미만 : 1점 감점 ㄷ. 누계평균 부실벌점이 1점 이상 : 2점 감점 、제12조제3항에 따른 사실여부 확인결과 거짓으로 판명된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감점 ㄱ. 최근 3년간 위반 횟수 1회 마다 : 0.5점 감점 、제11조제4항을 위반한 사유가 감리자의 귀책사유로 판명된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감점 ㄱ. 최근 3년간 위반 횟수 1회 마다 : 0.25점 감점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5	○ **평가 및 산정방법** -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은 건설기술개발실적, 건설기술개발투자실적 및 교육훈련을 평가함 ● 건설기술개발실적(2.0점) : 건설기술관련 기술개발을 한 경우 점수 부여 -「건설기술 진흥법」등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 또는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등에 대하여 감리자 명의로 최초 지정 또는 최초 출원하여 등록결정 받아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경우 : 건당 0.5점 ※ 공동도급에 의한 경우에는 용역참여지분율에 의하고, 2인 이상의 자가 최초 지정 또는 최초 출원하여 등록결정 된 경우에는 그 인원수로 나누어 평가한다. - 건설기술개발실적이 같은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등록 결정을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

- 개발한 건설기술이 특허인 경우에는 아래 방법에 따라 경과기간의 가중치를 부여하고, 10년 이상 경과한 경우에는 0점으로 평가

구 분	3년 미만	3년 이상 6년 미만	6년 이상 10년 미만
특 허	100%	80%	60%

- 건설기술개발실적은 감리비지급기준 별지 제2호서식의 토목·건축·기계설비분야의 공종에 해당하는 주택건설기술에 한하여 인정 평가함

● 건설기술개발투자실적(2.5점) : 최근 3년간 건설기술개발 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건설기술개발 투자액/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부여

- 타인이 보유한 건설신기술 또는 특허에 대한 지정, 등록결정을 양수·양도 또는 대여받은 경우 이에 대한 비용을 건설기술개발투자실적(금액)으로 인정

- 건설기술개발투자실적(재무제표상의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개발비 등)은 최근 3년간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하며, 실적이 전혀 없는 경우 0점으로 평가

- 해당 업체인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년간 투자실적 제출

- 배점기준

구분	3% 이상	3.0% 미만 2.5% 이상	2.5% 미만 2.0% 이상	2.0% 미만 1.5% 이상	1.5% 미만 1.0% 이상
점수	2.5	2.0	1.5	1.0	0.5

● 교육 훈련(0.5점)

- 참여감리원이 최근 3년간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42조제2항 별표 3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전문교육을 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계산하여 합산적용 <소수점 셋째자리 반올림>

· 70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수) × 0.5점

· 35시간이상 70시간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 인원수) × 0.3점(생략)

(5) 신규 감리원 배치 | 2

○ **평가 및 산정방법**

- 감리자 소속 감리원중 신규감리원을 해당 공사현장에 감리원으로 배치한 경우 아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함

、각 분야별 신규감리원은 전체 공사기간 동안 배치하여야 하고 건축분야는 최소 1명 이상 배치 : 건축분야 미배치시 0점

- 평가방법

(단위 : 세대)

구분	1,000세대 미만	1,000세대 이상 1,500세대 미만	1,500세대 이상 2,000세대 미만	2,000세대 이상
0명	2.0점	0점	0점	0점
1명	2.0점	1.5점	1.0점	0점
2명	2.0점	2.0점	1.5점	1.0점
3명	2.0점	2.0점	2.0점	1.5점
4명이상	2.0점	2.0점	2.0점	2.0점

(6) 교체 빈도 | 7

○ **평가 및 산정방법**

- 감리자 소속 전체 감리원중 현장배치된 감리원수(「건축법」 및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감리 및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포함)에 대한 최근 1년간 감리원(건설사업관리기술자 포함)으로 참여한 용역에서의 교체건수

<table>
<tr><td></td><td></td><td>

、최근 1년간 계획공정 만료시점 이전에 교체된 경우에는 이를 교체건수로 본다. 다만, 제13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체건수로 보지 아니하나, 퇴사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최근 1년 이내 퇴사 후 동일회사로 재입사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교체건수에 포함한다.

- 배점기준

1) $$\text{교체빈도율(\%)} = \frac{\text{최근 1년간 교체건수}}{\text{최근 1년간 배치감리원수}} \times 100$$

2)

<table>
<tr><td>비율</td><td>5%미만</td><td>5%이상
10%미만</td><td>10%이상
15%미만</td><td>15%이상
20%미만</td><td>20%
이상</td></tr>
<tr><td>배점</td><td>7</td><td>5</td><td>3</td><td>1</td><td>0</td></tr>
</table>

- 최근 1년간 교체건수

、「주택법」、「건설기술 진흥법」、「건축법」에 따라 현장 배치된 상주감리원(건설사업관리기술자 포함) 1인 교체시 1건, 비상주감리원(건설사업관리기술자 포함) 1인 교체시 0.2건으로 각각 산정한다.

- 최근 1년간 배치감리원수

、「주택법」、「건설기술 진흥법」、「건축법」에 따라 현장 배치된 감리원(건설사업관리기술자 포함) 수로서 상주감리원(건설사업관리기술자 포함)은 1인, 비상주감리원(건설사업관리기술자 포함)은 0.2인으로 각각 산정한다.

※ 교체빈도율(%)은 소수점 세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td></tr>
<tr><td>(7) 가점</td><td>(3)</td><td>

○ **평가 및 산정방법**

</td></tr>
<tr><td></td><td>(1)
감리원
추가
배치,
총괄
감리원
등급
상향</td><td>

- 30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공사에서 구조체 공사(지정 및 기초공사, 철골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기간 동안 건축분야 중급건설기술자 이상의 건설기술자를 추가로 배치한 경우 다음 배점 기준에 따라 가산점 부여. 다만, 같은 표 항목 (8) 적부여부 중 “감리원 추가의무배치”에 해당하는 감리원은 제외

- 평가방법

</td></tr>
</table>

구분	300세대 이상 1,000세대미만	1,000세대 이상 2,000세대 미만	2,000세대 이상
1명	1.0점	0.7점	0.5점
2명	1.0점	1.0점	0.7점
3명 이상	1.0점	1.0점	1.0점

※「주택건설공사 감리비 지급기준」 제3조에 따라 산출한 공사비에 대한 감리인・월수에 따라 배치된 감리원은 가점 대상에서 제외한다.

- 30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공사에서 총괄감리원을 특급건설기술자로 배치하는 경우 가산점 1점 부여

(1) 지역 가점

- 50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공사로서 감리자모집공고시 공고된 경우에 한하여 감리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해당 지역에 주된 사무소가 등록된 감리자에게 다음 배점기준에 따라 가산점 부여

- 배점기준

배점	주택건설지역
1	특별시・광역시 및 도(道) 각 관할지역의 감리자

(1) 설계 용역 수행 가점

- 해당 주택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을 수행한 자가 감리자로 응모한 경우

、해당 주택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이 현상설계(해당 감리자지정권자가 인정한 경우에 한함)인 경우 : 0.7점

、해당 주택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이 현상설계가 아닌 경우 : 0.2점

※ 공동도급시에는 용역참여지분율에 따라 평가하고, 2개사 이상이 설계한 경우에는 그 지분율에 따라 평가한다.

- 해당 주택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을 수행한 책임기술자가 해당 설계용역을 수행한 설계사무소 소속으로써 총괄감리원으로 응모한 경우

、해당 주택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이 현상설계(해당 감리자지정권자가 인정한 경우에 한함)인 경우 : 0.3점

		·해당 주택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이 현상설계가 아닌 경우 : 0.1점
(8) 적격여부	(적·부)	(적 : 적합, 부 : 부적합)
	(적·부) 감리원 배치 계획	○ **평가방법** - 감리자 모집공고시 공고된 예정공정표와 감리원 배치계획이 다음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 실격(평가대상에서 제외) ·감리자 모집공고시 공고된 주요공정표(예정공정표)에 따라「감리비지급기준」제3조제2항에 따라 산출한 해당 공사의 감리인·월수 이상의 감리원(평가감리원·비평가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비상주감리원의 인·월수는 총배치 인·월수의 15% 범위 이내로 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적격심사(평가)대상인 총괄감리원, 신규감리원, 비상주감리원은 공사 전기간동안에, 해당 분야별 감리원은 해당 공사기간 동안에 배치하여야 한다. ·평가대상 감리원은 예정공정표에 따라 배치하고 해당 공사의 감리인·월수가 충족되지 못한 경우 비평가 대상감리원을 배치하여 충족되게 하여야 한다. ·감리원 배치계획서(또는 배치계획표)에는 참여감리원(비평가 대상감리원, 신규감리원, 조경감리원 및 후반기에 배치되는 토목감리원은 등급만 표기) 전원의 성명을 기입하여야 한다. ·1,50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조경공사기간 동안 조경분야 자격을 가진 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해당공사 착수시 배치계획서에 명시된 등급의 동등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분야 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가점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추가로 배치하는 감리원은 구조체 공사기간 동안 배치되어야 하며, 구조체 공사 착수 시 배치계획서에 명시된 등급의 동등이상에 해당하는 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적·부) 5. 업무 6. 중첩도	○ 평가방법 - 당해 주택건설공사의 총괄감리원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자가 다른 공사·용역 등에 중복 참여하는 경우 : 실격(평가대상에서 제외) - 당해 주택건설공사의 분야별감리원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자가 다른 공사·용역 등에 중복 참여하여 배치계획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 실격(평가대상에서 제외) - 당해 주택건설공사의 비상주감리원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자가 다른 공사·용역 등에 상주기술자로 중복배치되어 있거나 비상주기술자로 10개 초과 중복배치 되어 있는 경우 : 실격(평가대상에서 제외) ※ 감리자지정신청자는 참여감리원이 다른 공사·용역 등에 참여하고 있을 경우 해당 공사·용역의 허가권자(또는 발주청)가 공고일이후 발급한 배치계획서 등을 당해 공사현장의 감리자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받은 감리자지정권자는 배치계획기간의 중복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적·부) 7. 감리원 추가 8. 의무 9. 배치	○ 평가대상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주택건설공사를 하는 경우 ·15일 이상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사업계획승인일이 영업정지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미경과된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 ※ 영업정치 처분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주택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다목, 같은 호 바목 1)부터 4)까지, 같은 호 차목 6)부터 9)까지 및 14)[14)의 경우 법 제33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 위반으로 법 제94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에 따른 영업정지처분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토목공사업 또는 건축공사업으로서 같은 영 별표6제2호가목6)가), 같은 목 7)부터 12)까지, 16)부터 20)까지 및 같은 호 라목3)에 따른 영업정지처분 ·사업계획승인일 기준으로「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별표8에 따른 누계평균벌점 1.0점 이상인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

○ 평가방법

- 30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공사에서 마감공사(「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4 시설공사 중 제1호나목, 라목부터 자목까지, 제7호만 해당한다) 기간 동안 또는 구조체 공사기간 동안 건축분야 중급건설기술자 이상의 건설기술자를 추가로 배치하지 않는 경우 : 실격(평가대상에서 제외)

※ 구조체 공사기간 동안 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하는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제6호라목 및 제1항제7호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8 제5호가목1.10, 1.11, 1.14에 따른 벌점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추가하는 감리원 중 1명을 안전관리 업무를 전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 평가방법

구분	3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1,000세대 이상 2,000세대 미만	2,000세대 이상
추가인원	1명	2명	3명

※ 「주택건설공사 감리비 지급기준」 제3조에 따라 산출한 공사비에 대한 감리인·월수에 따라 배치된 감리원은 의무 대상에서 제외한다.

나. 감리원

나-1. 총괄감리원

(1) 총괄감리원		
항 목	배점	적 용 기 준
소 계	27	가점 및 감점은 별도 합산 후 27점 이내
(가) 등급	6	○ 평가 및 산정방법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및 “건설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 제7조 별표 3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에 따라 평가 - 등급배점기준(등급미만은 실격처리함) · 1천세대 이상은 특급건설기술자 이상 : 6점 · 1천세대 미만은 고급건설기술자 이상 : 6점
(나) 경력 및 실적	18 (15)	○ **평가 및 산정방법** < 기본자격요건 > - 주택건설공사 감리·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5년 이상으로서 주택의 층수가 15층 이상의 건축물을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 한함 ※ “주택건설공사 감리·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란 ①건축분야 감리원으로서 주택건설공사에서 건축분야의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업무를 수행한 경력 ②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 소속 직원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주택건설공사의 감독업무를 수행한 경력 ③ 공무원으로서 주택건설공사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말한다. < 배점기준 적용 > - 건축분야 감리원 · 주택건설공사에서 건축분야의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력 : 100% · 주택건설공사에서 건축분야의 감독·설계·시공·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한 경력 또는 주택건설공사 외의 건축공사에서 건축분야의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력 : 80% · 주택건설공사외의 건축공사에서 건축분야의 감독·설계·시공·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한 경력 : 60%

- 공무원 등

·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 소속 직원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주택건설공사의 감독업무를 수행한 경력 : 100%

·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 소속 직원으로 건축공사에서 감독업무를 수행한 경력 : 80%

· 공무원으로서 주택건설공사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 : 100%

· 공무원으로서 건축공사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 : 80%

※ 건축공사의 분류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관련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르며, 「주택법」·「건설기술 진흥법」 등에 따른 비상주감리원(건설사업관리기술자 포함)의 경력은 위 분야별 경력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기간의 20%로 한다.

- 배점기준

배점	18 (15)	16.5 (13.5)	15 (12)	13.5 (10.5)
1천세대 이상	12년 이상	12년 미만 10년 이상	10년 미만 8년 이상	8년 미만
1천세대 미만	10년 이상	10년 미만 8년 이상	8년 미만 6년 이상	6년 미만

※ ( )는 면접을 실시하는 경우 배점

(3) - 면접(발표)

· 제9조제1항에 따라 총괄감리원의 면접(발표)을 통하여 업무수행능력을 평가하고 비고에 따라 참여업체의 등급을 판정한 후 아래의 배점을 부여

- 배점기준

평가등급	수	우	미	양	가
배점	3	2.7	2.4	2.1	1.8

<table>
<tr><td>(다) 감리업무 수행 계획서</td><td>3</td><td>

○ **평가 및 산정방법**

- 총괄감리원이 해당 주택건설공사에 대한 사업개요, 감리업무 수행시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 등을 다음 작성기준 및 내용에 적정하게 작성 및 제출(서명・날인)한 경우 : 3점

、감점 : 최대 0.5감점

* 쪽수위반은 0.1점 감점, 각 부문의 내용 불일치・오류・모순이 있는 경우 부문별 0.1점 감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0점

- 작성기준 및 내용

(단위 : 세대)

<table>
<tr><td>구 분</td><td>500 미만</td><td>500 이상
1,500 미만</td><td>1500 이상
2,500 미만</td><td>2,500 이상</td></tr>
<tr><td>쪽 수</td><td>15쪽 이상</td><td>20쪽 이상</td><td>25쪽 이상</td><td>30쪽 이상</td></tr>
<tr><td>부 문
(내 용)</td><td colspan="4">1. 사업 개요
2. 감리업무・수행시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
3. 공정 관리 4. 시공 관리 5. 품질 관리
6.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 7. 기타 기술 검토 등</td></tr>
</table>

※ 감리업무 수행계획서의 쪽수는 표지, 간지를 제외하며, 표현 방식에 특별한 제한 없음

</td></tr>
<tr><td>(라) 자격 가점</td><td>(0.2)</td><td>

○ **평가 및 산정방법**

- 자격배점 : 0.2점

・건축사 및 건축분야기술사자격증 소지자

※ 관련분야기술사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3. 건설기술관련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중 직무분야가 건축에 해당하는 기술사

</td></tr>
<tr><td>(마) 감점</td><td>(-3.0)</td><td>

○ **평가 및 산정방법**

</td></tr>
</table>

		- 다음 기준에 따라 각각 감점하되, 감점합계 점수가 각 배점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각 배점기준만큼 감점
	(-2) 행정제재	·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월마다 0.5점씩 감점(정지 개월수를 3월로 나누어 올림한 값을 적용한다) ·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제53조에 따라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 누계평균 부실벌점에 의하여 다음 기준에 따라 감점 ㄱ. 누계평균 부실벌점이 2점 이상 10점 미만 : 0.5점 감점 ㄴ. 누계평균 부실벌점이 10점 이상 15점 미만 : 1.0점 감점 ㄷ. 누계평균 부실벌점이 15점 이상 20점 미만 : 1.5점 감점 ㄹ. 누계평균 부실벌점이 20점 이상 : 2.0점 감점
	(-1) 교체빈도	○ **평가 및 산정방법** -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에서 감리원(「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및 「건축법」에 따른 감리원포함)으로 배치되어 최근 1년간 계획공정 만료시점 이전에 교체된 경우 1건당 0.2점씩 감점[비상주감리원(건설사업관리기술자 포함)으로서 교체된 경우 1건당 0.1점씩 감점] ※ 이 경우 제13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체로 보지 아니하나, 퇴사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최근 1년 이내 퇴사 후 동일회사로 재입사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교체건수에 포함한다.
< 비 고 >		

상대평가 등급배분 및 평가방법

□ 신청자수 별 평가등급 배분

업체수	등 급					업체수	등 급				
	수	우	미	양	가		수	우	미	양	가
2,3	1	1	(1)			22	2	5	9	4	2
4	1	2	1			23	2	5	9	5	2
5	1	2	1	1		24	2	5	10	5	2
6	1	2	1	1	1	25	3	5	10	5	2
7	1	2	2	1	1	26	3	5	10	5	3
8	1	2	3	1	1	27	3	5	11	5	3
9	1	2	3	2	1	28	3	6	11	5	3
10	1	2	4	2	1	29	3	6	11	6	3
11	1	2	5	2	1	30	3	6	12	6	3
12	1	3	5	2	1	31	3	6	13	6	3
13	1	3	5	3	1	32	3	7	13	6	3
14	1	3	6	3	1	33	3	7	13	7	3
15	2	3	6	3	1	34	3	7	14	7	3
16	2	3	6	3	2	35	4	7	14	7	3
17	2	3	7	3	2	36	4	7	14	7	4
18	2	4	7	3	2	37	4	7	15	7	4
19	2	4	7	4	2	38	4	8	15	7	4
20	2	4	8	4	2	39	4	8	15	8	4
21	2	4	9	4	2	40	4	8	16	8	4

※ 업체수가 40개를 초과하는 경우

ㅇ 업체수(A)가 홀수인 경우 : (A-1)/2에 해당하는 등급배분에 2배를 곱하되, ‘미’부분에 1을 추가하여 등급 배분을 결정

ㅇ 업체수(A)가 짝수인 경우 : A/2에 해당하는 등급배분에 2배를 곱하여 등급배분 결정

예) 업체수가 47개인 경우

- 업체수 23개[=(47-1)/2]에 해당하는 아래의 등급배분에,

23	2	5	9	5	2

- 2배를 곱하되, ‘미’부분에 1을 추가하여 ‘47개업체’일 경우의 등급 배분 결정

47	4	10	19	10	4

나-2. 분야별감리원

(2) 분야별감리원

- 주택건설공사 규모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분야별 감리원 각각 심사

주택건설공사 규모	평가대상 감리원수	분야별 감리원수	비 고
300세대 미만	2명	토목 1명, 설비 1명	등급·경력 및 실적은 심사한 후 1.5점을 곱한 값(소수점 들째자리 반올림)으로 평점하며, 가점·감점은 배점기준으로 평점
3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3명	건축 1명, 토목 1명, 설비 1명	
1,000세대 이상 2,000세대 미만	4명	건축 2명, 토목 1명, 설비 1명	
2,000세대 이상 3,000세대 미만	5명	건축 3명, 토목 1명, 설비 1명	
3,000세대 이상	6명	건축 4명, 토목 1명, 설비 1명	

※ 평가대상 분야별 감리원(건축)에 대한 점수는 개인별 평가결과를 합산한 후 평균점수로 산정(소수점 둘째자리 반올림)

항 목	배점	적 용 기 준
소 계	9	가점 및 감점은 분야별로 별도 합산 후 9점 이내
(가) 등급	2	○ **평가 및 산정방법**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및 “건설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제7조 별표 3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에 따라 평가 - 등급배점기준(2점)

공사규모	점 수		
1천세대 이상	특급건설기술자	고급건설기술자	중급건설기술자
	2	1.8	1.6
1천세대 미만 300세대 이상	고급건설기술자 이상	중급건설기술자	
	2	1.8	
300세대 미만	중급건설기술자 이상		
	2		

(나) 경력 및 실적	7	○ **평가 및 산정방법**(해당분야의 경력 및 실적만 인정) < 기본자격요건 > - 주택건설공사의 해당분야 감리·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1년 이상으로서 주택의 층수가 15층 이상의 건축물을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 한함 ※ "주택건설공사 감리·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란 ①해당분야 감리원으로서 주택건설공사에서 해당분야의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업무를 수행한 경력 ②「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 소속 직원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주택건설공사의 감독업무를 수행한 경력 ③공무원으로서 주택건설공사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말한다. - 건축분야 감리원 · 주택건설공사에서 건축분야의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력 : 100% · 주택건설공사에서 건축분야의 감독·설계·시공·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한 경력 또는 주택건설공사외의 건축공사에서 건축분야의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력 : 80% · 주택건설공사외의 건축공사에서 건축분야의 감독·설계·시공·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한 경력 : 60% - 토목분야 감리원 · 주택건설공사에서 토목분야의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력 : 100% · 주택건설공사에서 토목분야의 감독·설계·시공·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한 경력 또는 주택건설공사외의 건축공사에서 토목분야의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력 : 80% · 주택건설공사외의 건축공사에서 토목분야의 감독·설계·시공·건설사업관리업무, 토목공사에서 토목분야의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력 : 60% · 토목공사에서 토목분야의 감독·설계·시공·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한 경력 : 40%

		- 설비분야 감리원 · 주택건설공사에서 설비분야의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업무를 수행한 경력 : 100% · 주택건설공사에서 설비분야의 감독·설계·시공·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한 경력 또는 주택건설공사외의 건축공사에서 설비분야의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업무를 수행한 경력 : 80% · 주택건설공사외의 건축공사에서 설비분야의 감독·설계·시공·건설사업관리업무 및 설비공사에서 설비분야의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업무를 수행한 경력 : 60% · 설비공사에서 설비분야의 감독·설계·시공·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한 경력 : 40% - 공무원 등 ·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라 발주청 소속 직원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주택건설공사의 감독업무를 수행한 경력 : 100% ·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라 발주청 소속 직원으로서 건축·토목·설비공사관련 감독업무를 수행한 경력 : 80% · 공무원으로서 주택건설공사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 : 100% · 공무원으로서 건축·토목·설비공사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 : 80% ※ 건축공사, 토목공사, 설비공사 등의 분류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관련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르며, 「주택법」·「건설기술 진흥법」 등에 따른 비상주감리원(건설사업관리기술자 포함)의 경력은 위 분야별 경력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기간의 20%로 한다. - 배점기준

<table>
<tr><td></td><td></td><td>
<table>
<tr><td>공사규모</td><td colspan="4">점 수</td></tr>
<tr><td rowspan="2">1천세대 이상</td><td>10년 이상</td><td>10년 미만
8년 이상</td><td>8년 미만
6년 이상</td><td>6년 미만</td></tr>
<tr><td>7</td><td>6.3</td><td>5.6</td><td>4.9</td></tr>
<tr><td rowspan="2">1천세대 미만
300세대 이상</td><td colspan="2">6년 이상</td><td>6년 미만
2년 이상</td><td>2년 미만</td></tr>
<tr><td colspan="2">7</td><td>6.3</td><td>5.6</td></tr>
<tr><td rowspan="2">300세대 미만</td><td colspan="2">2년 이상</td><td colspan="2">2년 미만</td></tr>
<tr><td colspan="2">7</td><td colspan="2">6.3</td></tr>
</table>
</td></tr>
<tr><td>(다) 자격가점</td><td>(0.1)</td><td>○ 평가 및 산정방법

- 자격배점 : 0.1점

· 건축사 및 관련분야 기술사자격증 소지자

※ 관련분야기술사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3. 건설기술관련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 중 직무분야가 기계, 토목, 건축에 해당하는 기술사</td></tr>
<tr><td rowspan="3">(라) 감점</td><td>(-1.5)</td><td>○ 평가 및 산정방법

- 다음 기준에 따라 각각 감점하되, 감점합계 점수가 각 배점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각 배점기준만큼 감점</td></tr>
<tr><td>(-1)
행정
제재</td><td>-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월마다 0.5점씩 감점(정지개월수를 3월로 나누어 올림한 값을 적용한다)

·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에 따라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 누계평균 부실벌점에 의하여 다음 기준에 따라 감점

ㄱ. 누계평균 부실벌점이 2점 이상 10점 미만 : 0.5점 감점

ㄴ. 누계평균 부실벌점이 10점 이상 : 1.0점 감점</td></tr>
<tr><td>(-0.5)
교체
빈도</td><td>○ 평가 및 산정방법</td></tr>
</table>

		-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에서 감리원(「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및 「건축법」에 따라 감리원 포함)으로 배치되어 최근 1년간 계획공정 만료시점 이전에 교체된 경우 1건당 0.1점씩 감점[비상주감리원(건설사업관리기술자 포함)으로서 교체된 경우 1건당 0.1점씩 감점] ※ 이 경우 제13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체로 보지 아니하나, 퇴사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최근 1년 이내 퇴사 후 동일회사로 재입사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교체건수에 포함한다.

나-3. 비상주감리원

(3) 비상주감리원		
항 목	배점	적 용 기 준
소 계	6	가점 및 감점은 별도 합산 후 6점 이내
(가) 등급	2	○ 평가 및 산정방법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별표 1 제2호 및 "건설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 제7조 별표 3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에 따라 평가 - 등급배점기준 、특급건설기술자 이상 : 2.0점 、고급건설기술자 이상 : 1.5점 、등급 미만 : 실격처리(감리자 지정평가에서 제외)
(나) 경력 및 실적	4	○ 평가 및 산정방법 - 건축분야 감리원 、주택건설공사에서 건축분야의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

리 업무를 수행한 경력 : 100%

、주택건설공사에서 건축분야의 감독、설계、시공、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력 또는 주택건설공사외의 건축공사에서 건축분야의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력 : 80%

、주택건설공사외의 건축공사에서 건축분야의 감독、설계、시공、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한 경력 : 60%

- 공무원 등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소속직원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주택건설공사의 감독업무를 수행한 경력 : 100%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 소속직원으로 건축공사에서 감독업무를 수행한 경력 : 80%

、공무원으로 주택건설공사관련업무를 수행한 경력 : 100%
、공무원으로서 건축공사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 : 80%

※ 건축공사의 분류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관련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른다.

- 배점기준

경 력	10년 이상	10년 미만 5년 이상	5년 미만
배 점	4점	2.5점	1점

※ 건축분야 감리원이 아닌 경우에는 경력 및 실적 점수를 “0”점으로 평가하여야 함

(다) 감점 (-2)

○ **평가 및 산정방법**

- 다음 기준에 따라 각각 감점하되, 감점합계 점수가 각 배점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각 배점기준만큼 감점

(-1) 행정제재

-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월마다 0.5점씩 감점(정지개월수를 3월로 나

		누어 소수점이하 올림한 값을 적용한다) ㆍ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와 관련하여「건설기술 진흥법」제53조에 따라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 누계평균 부실벌점에 의하여 다음 기준에 따라 감점 ㄱ. 누계평균 부실벌점이 2점 이상 10점 미만 : 0.5점 감점 ㄴ. 누계평균 부실벌점이 10점 이상 : 1점 감점
	(-1) 교체 빈도	- 감리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에서 감리원(「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또는 「건축법」에 따른 감리원 포함)으로 배치되어 최근 1년간 계획공정 만료시점 이전에 교체된 경우 1건당 0.2점씩 감점[비상주감리원(건설사업관리기술자 포함)으로서 교체된 경우 1건당 0.1점씩 감점] ※ 이 경우 제13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체로 보지 아니하나, 퇴사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최근 1년 이내 퇴사 후 동일회사로 재입사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교체건수에 포함한다.
(4)「건축법」에 따른 건축사보는「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건설기술자 등급으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별지 제3호서식]

감리비 입찰서

입찰내용	건 명 (공고번호)				
	금 액	금 원정(₩)			
입찰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 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 표 자		생년월일		

본인은 「주택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및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자로 지정받기 위하여 상기와 같이 감리비 입찰서를 제출하며, 감리자로 지정된 경우 주택법령에서 정한 감리자로서 성실히 감리업무를 수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입찰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감리자 지정권자 귀하

210㎜×297㎜[백상지(80g/㎡)]

■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별지 제5호서식]

확 인 서

1. 공사개요

사업주체	상 호		대표자	

사업계획 내 용	위 치			대지면적	㎡
	사 업 내 용	공 사 명		사업승인일	
		규 모	층, 동, 세대	착공(예정)일	
		연 면 적	㎡	준공(예정)일	
		사업승인번호			

2. 감리자(감리회사)

상 호		대 표 자		등록번호 자격번호	
주 소					

공동도급 비 율	(%) (%)	※ 공동도급인 경우 용역참여 지분비율 기재

3. 확인신청 내용

가. 신청자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분 야	감리원 등급	비 고

나. 확인요청사항

확인요청 사항	확 인(√)
상기 공사의 착공예정일(년 월 일)부터 2월 이상 착공 지연	
상기 공사의 2월 이상 공사 중지(중지일: 년 월 일)	

4. 확인내용

상기 공사가 ( )사유로 인하여 현재 ( )개월간 착공지연 또는 공사가 중지되어 공사현장에 배치된 위 감리원은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제4조제2항 단서 규정에 해당함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시(도, 시·군·구)장

년 월 일

입찰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감리자 지정권자 귀하

210㎜×297㎜[백상지(80g/㎡)]

[별첨 1]

감리자 지정 신청자료 제출에 따른 서약서

□ 공 고 명 : 주택건설공사 감리자(건축) 모집 공고
□ 사 업 명 :
□ 사업주체 :

본인이 상기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자 지정을 신청함에 있어, 자기평가서는 「주택법」,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및 당해 감리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제반 규정을 숙지하고 동 규정에 적합하게 작성·제출되었음을 확인하며 제출된 신청자 평점 중 과다계산 항목은 "0"점등 감점 처리되며, 특히 신청자 평점 중 "**허위·거짓 등**"의 방법에 의하여 작성된 경우에는 실격처리되며,

참여감리원(평가대상 및 비평가대상감리원)은 배치기간 및 해당공종이 타 현장과 중복되게 신청하지 않았으며, 제출한 자료는 사실과 틀림이 없음을 확인하오며, 만일 감리자 지정에 영향을 주는 사항이 본인의 고의나 과실(착오,오기)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의거 입찰참가 제한, 벌점부여 및 부정행위감리자 지정 등의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하오며 이에 따른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감수하겠으며, 평가에 따른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 감리자지정권자의 결정에 따르며, 향후 감리자로 지정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성실히 감리업무를 수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3년 월 일

서약자 주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고창군수 귀하

[별첨 2] (우선순위 3개업체)

○ 감리자 감리업무수행 실적

연번	용 역 명	기간 및 일수								적용기간 요율(%)	수주금액(억원)		적용요율(%)	환산금액 (억원)
		감리기간	중지기간	총감리일수	중지일수	최근3년간		해당일수	적용일수		주택건설공사	건축공사	공사종류요율	
						해당일수	중지일수							
합 계														

※ 수행실적 : 건별로 전수 작성, 적용요율에서 공사종류 요율은 주택건설공사 “100”% 그외는 “80”%로 기재

※ 수주금액 : 금액은 억원 단위로 표기하고 억원 단위 미만은 소수점아래로 표기(예시: 234,500,000원은 2.345)

※ 해당일수 : 총감리기간 - 중지기간

※ 적용일수 : 최근3년간 해당일수 - 최근3년간 해당중지일수

※ 적용기간요율 : 적용일수 ÷ 해당일수

[별첨 3] (우선순위 3개업체)

○ 감리원 업무수행 실적

구분	경력사항		경력일수	환산비	평가환산일수	등급	평점
	사업명	기간					
총괄감리원							
	소 계				일년		
분야별감리원(3명) 및 비상주감리원(1명)							
	소 계				일년		

[별첨 4] (우선순위 3개업체)

○ 신규감리원의 배치

가. 신규감리원의 자격사항

감리원 성 명	분 야	등 급 자 격			신규감리원 자격		평 점
		현재등급	자격명 (학력명)	취득일	해당시점 (초급 또는 중급건설기술자)	해당시점 이후 경력 및 실적	

나. 신규감리원의 경력 및 실적(신규감리원 자격 해당시점 이후)

구 분	경 력 사 항		경 력 일 수	환산비	평가환산 일수	비 고
	사 업 명	기 간				
신 규 감 리 원						
	소 계				일 년	

[별첨 5]

<감 리 원 배 치 계 획 표> (예시)

구분	분야	성명	등 급	투 입 기 간																개월	환산비	인월수	비고
				2022							2023							2024					
				1	2	.	.	.	11	12	1	2	.	.	.	11	12	1	2				
총괄	건축	○○○																					
분야별	건축	○○○																					
	토목	○○○	특급																				전반기
		○○○	특급																				후반기
	설비	○○○																					
비상주	건축	○○○																					15%이내
	○○	○○○																					
신규	건축	○○○																					
	○○	○○○																					
	○○	○○○																					
	○○	○○○																					
비평가	건축	○○○																					
	설비	○○○																					
	토목	○○○																					
	○○	○○○																					
	○○	○○○																					
추가배치	건축	○○○																				-	
	건축	○○○																				-	
총배치 인월수																							

※ 감리대상공사비 :

- 법 정 인.월 수 : 인.월
- 투 입 인.월 수 : 인.월
- 비상주감리원 인·월수(배치율) : 인.월 (%)

※ 감리자(회사)가 작성한 배치계획표 양식을 제출하여도 되나 상기 서식에 맞추어 작성하여야 함.

【참고자료 1】

신규업체 입찰참가자격등록 절차 안내자료

(조달청 고객지원팀)

1 유료인증서 발급

◦ 아래 공인인증기관 중 한 곳을 자율선택 하여 연락 후 **전자거래범용기업인증서**를 발급받는다

(일반적으로 인증기관을 직접 방문 필요, 인증서는 **매년** 11만원씩 납부)

- **코스콤** (http://www.signkorea.com) (1577-7337)
- **한국무역정보통신** (http://g2b.tradesign.net/index.html) (02-2109-8846~7)
- **한국전자인증** (http://g2b.crosscert.com/) (1566-0566)
- **한국정보인증** (http://www.signgate.com) (1577-8787)

2 입찰참가자격 등록 신청

◦ 나라장터(www.g2b.go.kr) 접속 ⇒ 이용자등록 ⇒ **조달업체이용자** ⇒ **'입찰참가자격등록신청' 메뉴에서 모든 항목을 입력하고 저장 후 '송신'(가장 가까운 지방조달청으로 송신)** ⇒ **'시행문 출력' 클릭하여 출력** ⇒ 출력된 시행문 안내에 따라(대표자 인감도장) 날인 후 관련증빙자료 원본(**출력된 시행문 하단에 제출서류가 명기되어 있음**)과 함께 송신했던 지방조달청으로 우편발송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

- '입찰참가자격 등록신청' 화면에서의 입력방법은 콜센터(1588-0800)로 문의

3 등록 승인 : 송신한 지방조달청에서 서류확인 후 승인

◦ 승인여부 확인 방법 : 나라장터 ⇒ 이용자등록 ⇒ 조달업체이용자 → 등록신청확인 및 시행문 출력메뉴

4 인증서 등록 (발급받은 인증서를 나라장터와 연결하는 작업임)

◦ 나라장터 접속 ⇒ 이용자등록 ⇒ **조달업체이용자** ⇒ 인증서관리⇒'인증서 신규등록' 메뉴 클릭하여 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 후 약관동의 등 간단한 절차를 거치면 인증서 등록이 모두 완료됨

※ 인증서 등록이 완료됨으로써 전자입찰 입찰참여가 가능

5 나라장터의 각종 전자입찰에 참여 가능 (추후 콜센터에 문의하여 직찰 등을 위해 사용인감 등록 요망)

========== < 참 고 사 항 > ==========

※ '입찰 등록증' 출력 또는 입찰참가자격 변경 안내
◦ 출력 메뉴 : 나라장터 접속 ⇒ **로그인** ⇒ **(좌측 최상단) 나의나라장터** ⇒ '업체정보 수정관리/등록증출력' 메뉴
◦ 입찰참가자격 변경
- 업체 스스로 수정 가능한 항목 : 공급물품, 전화·팩스번호, 이메일, 홈페이지주소
- **나머지 항목은 입찰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항목으로 반드시 조달청 승인 필요**

전자입찰 및 나라장터 이용 문의 : 정부조달콜센터 1588- 0800

【참고자료 2】

세대별 낙찰하한율 산출표

구 분	사업수행능력 배점	입찰가격			낙찰하한율
		배점	산식	85점이 되기위한 점수	
300세대 미만	40	60	**60-5× |(0.88-입찰가격/예정가격)×100|**	45	84.95%
500세대 미만	50	50	**50-3× |(0.88-입찰가격/예정가격)×100|**	35	82.95%
1,000세대 미만	60	40	**40-2× |(0.88-입찰가격/예정가격)×100|**	25	80.45%
1,000세대 이상	70	30	**30 - |(0.88-입찰가격/예정가격)×100|**	15	72.95%

주택건설공사 감리자(건축) 모집에 따른 사업개요

가. 사업현황

구 분	내 용	비 고
1. 사 업 명	고창군 고창읍 석교리 11-2번지 일원 공동주택 신축공사	
2. 사업주체	㈜광신주택 대표이사 이 길 행	
	광주광역시 북구 독립로 311, 4층(중흥동)	
3. 설 계 자	㈜디자인현대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 김 춘 광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182-1(신안동)	
4. 시 공 사	㈜광신종합건설 대표이사 이 경 노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천변1길 3	
5. 사업개요	○ 위 치 :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석교리 11-2번지 일원	
	○ 전체공사기간 : 2023. 04. 01 ~ 2025. 04. 30 (25개월) - 착공신고수리일로부터 25개월	
	○ 연 면 적 : 29,902.2743㎡	
	○ 공사규모 : 지하1층, 지상18층, 206세대(4개동) 및 부대복리시설	
	○ 사업승인일 : 2022. 12. 30.	

나.총사업비

(단위:원)

항 목	금 액	비 고
총 사 업 비	68,860,324,000	
대 지 비	7,689,461,000	
총 공 사 비	37,916,916,000	
가.건축감리대상 공사비	32,828,943,000	
나.타법감리대상공사비	5,087,973,000	

[별지 제1호 서식]

총사업비 산출 총괄표

■ 공사명 : 고창군 고창읍 석교리 11-2번지 일원 공동주택 신축공사 [단위:원]

구분			전체	감리대상	타법감리	감리제외
총공사비	순공사비	토목공사	2,556,127,000	2,556,127,000	-	-
		건축공사	25,700,375,000	25,700,375,000	-	-
		기계설비공사	2,424,753,000	2,424,753,000	-	-
		전기공사	1,981,302,000	-	1,981,302,000	-
		정보통신공사	616,199,000	-	616,199,000	-
		소방설비공사	1,983,977,000	-	1,983,977,000	-
		소 계	35,262,733,000	30,681,255,000	4,581,478,000	-
	일반관리비		1,516,676,000	1,227,250,000	289,426,000	-
	이 윤		1,137,507,000	920,438,000	217,069,000	-
소계			**37,916,916,000**	**32,828,943,000**	**5,087,973,000**	-
간접비	설계비		721,000,000	-	-	721,000,000
	감리비(건축,전기,소방,통신 포함)		1,156,000,000	-	-	1,156,000,000
	일반분양시설 경비		7,568,760,000	-	-	7,568,760,000
	분담금 및 부담금		1,377,206,000	-	-	1,377,206,000
	보상비		1,000,000,000	-	-	1,000,000,000
	기타사업비성 경비		10,783,322,000	-	-	10,783,322,000
소계			22,606,288,000	-	-	22,606,288,000
대지비			7,689,461,000	-	-	7,689,461,000
부가가치세액			647,659,000	-	-	647,659,000
총 사 업 비 계			**68,860,324,000**	**32,828,943,000**	**5,087,973,000**	**30,943,408,000**

주1 : 순공사비란 재료비, 노무비, 경비를 합한 금액임
2 : 일반관리비와 이윤에 대한 정의 및 산정방법은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회계예규)`에 따름
3 : 부가가치세액의 정의와 산정방법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름
4 : 간접비란 사업비중 총공사비를 제외한 설계비, 감리비, 일반분양시설경비 등 사업비성 경비를 말하며, 세부비목은 다음과 같음
. 일반분양시설경비 : 시공비, 운영비, 광고홍보비
. 분담금 및 부담금 : 인입분담금(가스, 전기, 수도, 지역난방), 진입도로
. 보상비 : 이주대책비, 이주 보상비
. 기타 사업비성 경비 : 제세공과금, 측량, 교통, 환경 영향평가 수수료, 취득세, 등록세, 건물보존등기비 및 입주관리비, 감정평가 수수료, 분양 임대보증 및 하자보증수수료 등 기타 사업비성 경비
. 대지비 : 대지 구입비, 대지 구입 관련 금융비용 및 제세공과금
5 : 건축공사비에는 견본주택 건립 공사, 발코니 확장 및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비가 포함되어 있음.

[별지 제2호 서식]

공종별 총사업비 구성 현황표

공사명 : 고창군 고창읍 석교리 11-2번지 일원 공동주택 신축공사 (단위:원)

구분	분야	공종	전체	감리대상	타법감리
순공사비	토목	토공사	436,249,000	436,249,000	
		흙막이공사	181,542,000	181,542,000	
		비탈면 보호공사	-	-	
		옹벽공사	184,281,000	184,281,000	
		석축공사	-	-	
		우.오수 공사	360,669,000	360,669,000	
		공동구공사	-	-	
		지하저수조 및 급수공사	124,072,000	124,072,000	
		도로포장공사	153,646,000	153,646,000	
		교통안전시설물공사	-	-	
		정화조 시설공사	-	-	
		조경공사	646,558,000	646,558,000	
		부대시설 공사	469,110,000	469,110,000	
		소계	2,556,127,000	2,556,127,000	
	건축	공통가설공사	1,356,294,000	1,356,294,000	
		가시설물공사	560,384,000	560,384,000	
		지정 및 기초공사	1,794,892,000	1,794,892,000	
		철골공사	-	-	
		철근콘크리트공사	11,484,887,000	11,484,887,000	
		용접공사	-	-	
		조적공사	446,549,000	446,549,000	
		미장공사	1,204,697,000	1,204,697,000	
		단열공사	427,813,000	427,813,000	
		방수,방습공사	708,858,000	708,858,000	
		목공사	580,826,000	580,826,000	
		가구공사	649,526,000	649,526,000	
		금속공사	121,786,000	121,786,000	
		지붕 및 홈통공사	56,209,000	56,209,000	
		창호공사	1,631,837,000	1,631,837,000	
		유리공사	227,958,000	227,958,000	
		타일공사	811,234,000	811,234,000	
		돌공사	792,498,000	792,498,000	
		도장공사	362,236,000	362,236,000	
		도배공사	299,781,000	299,781,000	
		수장공사	555,845,000	555,845,000	
		주방용 가구공사	1,064,175,000	1,064,175,000	
		잡공사	562,090,000	562,090,000	
		소계	25,700,375,000	25,700,375,000	
	기계설비 (9개공종)	급수설비공사	46,147,000	46,147,000	
		급탕설비공사	193,744,000	193,744,000	
		오배수 및 통기설비공사	682,867,000	682,867,000	
		위생기구 공사	250,771,000	250,771,000	
		승강기계공사	519,945,000	519,945,000	
		난방설비공사	325,388,000	325,388,000	
		가스설비공사	201,269,000	201,269,000	
		자동제어 설비공사	26,835,000	26,835,000	
		특수설비공사	177,787,000	177,787,000	
		소계	2,424,753,000	2,424,753,000	
	전기(15개 공사)		1,981,302,000	-	1,981,302,000
	정보통신(13개 공사)		616,199,000	-	616,199,000
	소방설비(2개 공사)		1,983,977,000	-	1,983,977,000
	계		35,262,733,000	30,681,255,000	4,581,478,000
일반관리비			1,516,676,000	1,227,250,000	289,426,000
이윤			1,137,507,000	920,438,000	217,069,000
총공사비 계			37,916,916,000	32,828,943,000	5,087,973,000

◈ 공사예정표 ◈

▣ 공사명 : 고창군 고창읍 석교리 11-2번지 일원 공동주택 신축공사

▣ 착공 예정일 : 2023년 04월 01일

▣ 공사 기간 : 2023년 04월 01일 ~ 2025년 04월 30일 (25개월)

년도	2023년									2024년												2025년				비고
월	4	5	6	7	8	9	10	11	12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3	4	
개월수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전체 공정																										2023.04.01 ~ 2025.04.30 (25개월)
건축 공사																										2023.04.01 ~ 2025.04.30 (25개월)
구조체 공사																										2023.08.01 ~ 2024.07.31 (12개월)
토목 공사																										2023.04.01 ~ 2023.11.30 2024.08.01 ~ 2025.04.30 (17개월)
설비 공사																										2023.08.01 ~ 2025.04.30 (21개월)

고창군 공고 제 2023- 250호

2023년 어업용 면세유 가격안정 지원사업 모집 공고

러-우 사태에 따른 휘발유, 경유 등 가격 상승으로 어가 경영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어업용 면세유 인상액 일부 지원으로 경영안정 도모하고자 다음과 같이 사업 희망자를 모집, 공고 하오니 접수기간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2023년 어업용 면세유 가격안정 지원사업

나. 근거법령

○ 「수산업법」 제86조(보조)

○ 어업용 면세유류 공급 및 사후관리 요령(해양수산부훈령 제610호)

○ 「전라북도 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조례」 제5조(농어업인등 소득증대 등 지원)

다. 사업기간 : 2023년 1월 ~ 12월(조기집행 시 기간단축)

라. 사 업 비 : 161,990천원

마. 사 업 량

(단위 : 리터, 천원)

구 분	사업량	계	도비(40%)	군비(60%)	비고
어업용 면세유 가격안정 지원사업	723,882	161,990	64,796	97,194	

※ 사업량은 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바. 사업내용

○ 23년 3월부터 6월(4개월)까지 사용한 어업용 면세유 정액 지원
(리터당 경유 290원, 휘발유207원, 중유 172원)

2. 사업대상

○ 도내에서 어업용 면세유류카드를 발급받은 연근해·내수면 허가어선, 양식장관리선, 어획물운반업, 양식장, 수산종자생산장

3. 지원품목

가. 지원유종 : 어업인이 배정받은 어업용 면세유류(경유, 휘발유, 중유)

나. 유종별 ℓ당 정액지원(경유 290원, 휘발유 207원, 중유 172원)

※ 지원액은 1인당 최대 2,000만원 이내 지원하며 집행금액 예산 초과 시, 시·군에서 지원단가를 조정하여 집행가능

※ 어가별 지원 유류비는 천원미만 단위 절사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4. 제외 대상

최근 2년이내(지원대상자 확정일 기준) 수산관계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특별사면 및 경고 처분받은 자는 지원 가능)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제외(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74호) 제3조 기준)

※ 수산관계법령 위반 과징금처분자, 과태료 및 수산자원 조성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 제외

※ 어선의 경우 허가사항이 타 시·도일지라도 소유자의 주소지 및 선적항이 도내이며, 어획물을 도내 수협위판장에 위판한 어선 지원 가능

※ 도내 연근해허가 등록어선 운영 어업인이 타 시·도 어선을 임차하여 대체 사용 시 지원 가능

5. 집행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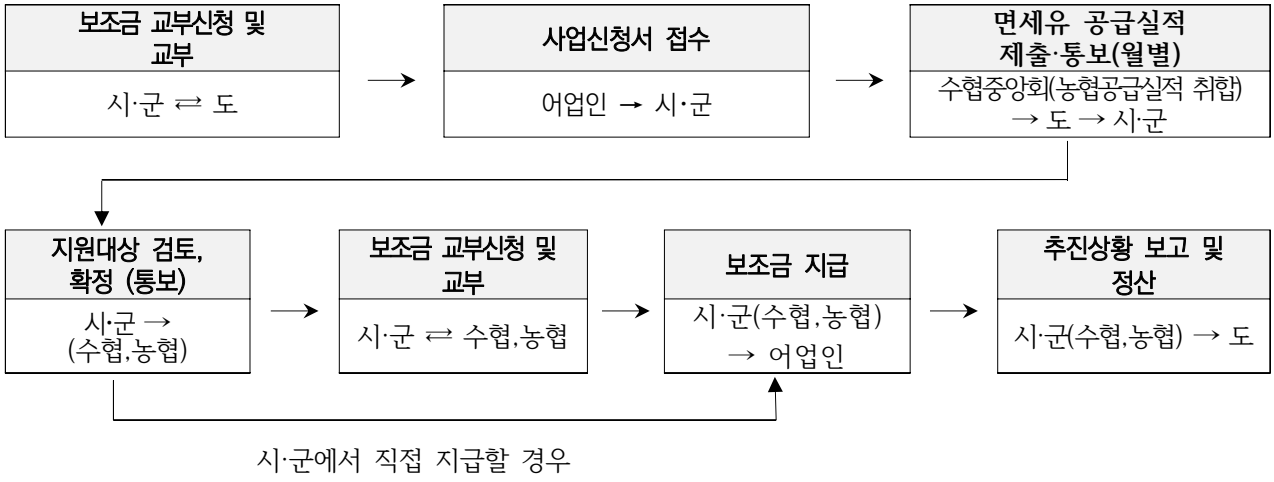

6. 신청서 접수

가. 접수기간 : 공고게시일부터 ~ 23년 2월까지(접수 미충족 시 연장)

나.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허가증서(면허증서), 신분증, 통장사본

다. 접 수 처 : 고창군청 해양수산과 수산자원팀 560-2634

7. 기타사항

가.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창군청 해양수산과(☏ 560-263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어업용 면세유 가격안정 지원사업 신청서

신 청 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번호)	
	주소 (사업장 위치)			
	연락처		면세유카드 번호	
			금융기관 계좌번호	
	어업기반			
제출서류		1. 어업허가증(허가내역서) 또는 양식어업 면허증(행사계약서) 사본 2. 신분증 및 통장사본		

어업용 면세유 가격안정 지원사업의 제반 규정을 준수 하면서 본 사업의 보조금 지원을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3년 00월 00일

신청인 : (인)

군산시장 귀하

개인(신용)정보 조회·제공 동의서

상기 본인은「어업용 면세유 가격안정 지원사업」의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라 개인정보 조회·제공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 조회·제공 목적 : 어업용 면세유 가격안정 지원사업 사업 보조금 지급
- ❍ 개인정보 조회·제공 대상기관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전라북도, 시·군(보조금 신청지자체)
- ❍ 조회·제공할 항목 : 주소, 성명, 생년월일(법인번호), 연락처, 면세유 사용실적, 면세유류구입카드의 금융기관 계좌번호, 어선·양식장 등록사항
- ❍ 조회·제공기간 : 동의일로부터 당해 지원사업 종료시점까지
  - * 단, 신용정보 조회·제공 효력기간 종료 후에는 민원처리 및 법령상 의무이행만을 위하여 보유·이용
-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시 면세유 보조금 지급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 동의자의 개인정보 관련 내용은 수산업·농업협동조합중앙회(구매사업정보시스템)에 제공되며 동의한 개인정보는 어업용 면세유류지원사업 관련 모든 업무에 사용함을 알려드립니다.

본인은 본 동의서 내용을 이해하였으며, 조회·제공할 항목의 개인(신용)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정보제공 동의자 성 명 : (인)

생년월일 :

수산업(농업)협동조합중앙회 / 전라북도(시·군) 귀중

※ 개인(신용)정보 조회 · 제공 동의서 작성시 밑줄 친 정보제공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중 1곳에 V또는 ○로 표시, 사업신청인과 정보제공 동의자는 동일인이여야 하며 서명은 "도장 날인 또는 서명" 모두 가능합니다.

고창군 공고 제 2023 - 255호

「고창군 아이돌봄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고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2일

고 창 군 수

「고창군 아이돌봄지원 조례」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을 군비로 지원하여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 및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으로 저출산해소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나.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사업 및 지원대상(안 제3~4조)
다. 아이돌봄지원신청과 중지 및 환수조치(안 제6~8조)
라. 아이돌보미의 처우개선(안 제10조)
마. 위탁 및 지도·감독(안 제11조~제12조)
바. 아이돌보미의 표창(안 제13조)

3. 의견제출

가.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나 개인은 **2023년 2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창군수(참조 : 인재양성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 54622 고창군 중앙로 245

- 고창군청 인재양성과 (전화 063-560-2931, Fax 063-560-2899)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인터넷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창군청 인재양성과 여성정책팀 (☎560-2931) 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조례안 1부.
2. 의견서(서식) 1부.

고창군 조례 제 호

고창군 아이돌봄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이돌봄 지원법」 제20조에 따라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 및 저출산 해소를 위하여 아이돌봄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이”란 만12세 이하 아동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이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아이돌봄서비스”란 아이의 주거지 등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보호 및 양육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4. “아이돌보미”란 「아이돌봄 지원법」(이하“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법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서비스제공기관을 통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원사업) 군수는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아이돌봄서비스의 비용지원
2. 아이돌보미의 처우개선 사업
3. 아이돌봄서비스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4. 그 밖의 군수가 아이돌봄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신청일부터 보호자 및 아동이 고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으로 한다.

제5조(지원기준)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아이돌봄지원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6조(지원신청 등) ① 제4조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고창군 아이돌봄지원 신청서를 주소지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원대상과 지원기준을 확인하고, 군수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지원한다.

제7조(지원 중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한다.

1. 지원대상자가 전출 또는 사망한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3. 지원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제8조(환수조치) 군수는 제7조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 중지 대상자가 아이돌봄지원금을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제9조(공동육아나눔터 설치) ① 군수는 아이양육 관련 정보교류, 부모교육 등을 위하여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르는 설치·운영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10조(아이돌보미의 처우개선) ① 군수는 아이돌보미의 활동수당을 유사 돌봄서비스의 종사자의 평균수준으로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아이돌보미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위탁) ① 군수는 효율적인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일부를 기관·단체·법인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③ 군수는 아이돌봄지원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지도·감독) 군수는 아이돌봄서비스와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사항에 대해 아이돌보미 및 서비스 제공기관에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표창) 군수는 돌봄노동을 존중하고 격려하기 위해 아이돌보미를 선정하여「고창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고창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기준

구분	소득유형 (중위소득)	본인부담금 지원율(군비)	비고
시간제 및 영아종일제	가형	50%	
	나형	50%	
	다형	50%	
	라형	50%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지침에 의거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한하여 지원

※ 정부지원 기준 및 시간을 적용하되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소득기준에 따름

[별지 제1호서식]

고창군 아이돌봄지원 신청서

신 청 인 (보호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서비스 이용 대상자	신청인과의 관계	성 명	생년월일	신청인과의 동거여부	서비스 유형 (담당자 확인)	
					시간제/종일제 가형 □ 나형 □ 다형 □ 라형 □	
					시간제/종일제 가형 □ 나형 □ 다형 □ 라형 □	
					시간제/종일제 가형 □ 나형 □ 다형 □ 라형 □	
연 락 처	자 택			휴대전화		
입금계좌	금융기관명		예금주		계좌번호	
양육공백 유 형	맞벌이 □ 다자녀 □ 취업 한부모 □ 장애부모 □ 기타 □					

○ **신청자 및 아동이 서비스 제공기간 동안 고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중지 및 그 기간 동안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함**

※ 제출서류 :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신청인 통장 사본 1부, 양육공백 증빙자료 1부

『고창군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따라 고창군 아이돌봄 지원을 신청합니다.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20 년 월 일

고 창 군 수 귀하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고창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입법예고명	「고창군 아이돌봄지원 조례」 제정조례 안			
의견 제출자	성 명 (개인/단체)		전화번호	
	주 소			
검토의견(의견제출 내용)				

「고창군 아이돌봄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의 입법예고에 대해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2023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고창군수 귀하

고창군 공고 제2023 -267호

공공하수도[하수관로] 사용개시 공고

하수도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하수도[서월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사용개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일

고 창 군 수

1. 사용개시 년월일

○ 2023년 2월 06일

2. 사용개시 공공하수도[하수관로] 위치

○ 전북 고창군 신림면 벽송리 일원

3. 사용개시내용

시설물명		형 식 및 규 격	단위	수량	비고
오수관	압송관로	내충격PVC관,∅75mm	m	1,404	
		내충격PVC관,∅50mm	m	540	
	오수관로	PE이중벽관,∅200mm	m	7,278	
		PE이중벽관,∅150mm	m	1,092	
	계		m	10,314	
배수설비			가구	240	240개소
오수맨홀		∅900mm외	EA	223	
맨홀펌프장		개소	개소	10	

6. 하수처리구역 공공하수처리시설 개요

○ 처리구역 : 흥덕처리분구 (0.104㎢)

○ 유입장소 : 서월 공공하수처리장

7.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8. 기타사항

○ 하수처리구역으로 공고된 지역은 하수처리장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대하여「하수도법」제65조 및「고창군 하수도 사용 조례」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창군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팀(☎ 560-899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고 제 2023-277 호

세대주명단 작성비용 공시

「공직선거법」(제60조의3제3항)·(제11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세대주명단의 작성비용을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2023년 2월 7일

고 창 군 수

일반명단 매당 작성비용	전산자료 복사본 비용	비 고
○ **일반명단 제공** - A4용지 1매당 80원 ○ **라벨용 명단 제공** - 라벨용지 1매당 240원	(10,000원×USB 16GB 메모리 개수) +(30원×면수)	

고창군 공고 제2023-288호

「고창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고창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고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9일

고 창 군 수

1. 개정이유

○ 「공직자윤리법」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

2. 주요내용

○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원 수와 명칭 변경(안 제2조)
-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원 수 5명 → 7명
- 3명의 위원은 법관·교육자 → 5명의 위원은 판사·검사·변호사·교육자
- 위원장은 3명중에서 선임 → 5명중에서 선임

3. 의견제출

○ 이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창군수(기획예산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 제출하는 곳 : (우) 56450 / 고창군 고창읍 중앙로 245
(☎ 063-560-2255, Fax 560-2259, Email yjh1158@korea.kr)

○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 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고창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23. 2.
제 출 자 : 고 창 군 수
제안설명자 : 기획예산실장

1. 개정이유

○ 「공직자윤리법」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원 수와 자격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원 수와 자격명칭 변경(안 제2조)
-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 → 7명
- 3명의 위원은 법관·교육자 → 5명의 위원은 판사·검사·변호사·교육자
- 위원장은 3명중 선임 → 5명중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공직자윤리법」제9조제3항
나. 예산수반여부 : 부
다. 입법예고 : 2023. 2. 9. ~ 3. 2.(20일간)

4. 따로붙임

○ 개정조례안 1부

고창군조례 제 호

고창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창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5명”을 “7명”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3명의 위원은 법관ㆍ교육자”를 “5명의 위원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ㆍ교육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3명중”을 “5명중”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3명의 위원은 법관·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사람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2. (생 략)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임한다. 1.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3명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2. (생 략) ③ (생 략)	제2조(구성) ① ---------- 7명----------. 1. 5명의 위원은 판사·검사·변호사·교육자 ----------. 2. (현행과 같음) ② ----------. 1. ---------- 5명중----------. 2.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입법예고명	고창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의견 제출자	성 명 (개인/단체)		전화번호	
	주 소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고창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2023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고 창 군 수 귀하

■ 건축법 시행규칙[별지 제27호서식] <개정 2012.12.12>

도 로 관 리 대 장

(2면 중 제1면)

지정번호		
대지위치 고창군 대산면 상금리		지번 75
건축주 박 동 호	생년월일	허가(신고)번호
도로길이 30.7m	도로너비 4m	도로면적 52㎡
이해관계인동의서		

아래 부분을 「건축법」 제45조에 따른 도로로 지정함에 동의합니다.
※ 지정된 도로는 「건축법」 제2조에 따른 도로로 인정됩니다.

관련지번	동의면적(㎡)	동의일자	토지소유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서명 또는 인
75	52	2022.04.	박동호		박동호

작성자: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2면 중 제2면)

위치도 및 현황도

• 위치도 및 현황도를 작성합니다.

위치도	축 척 <임 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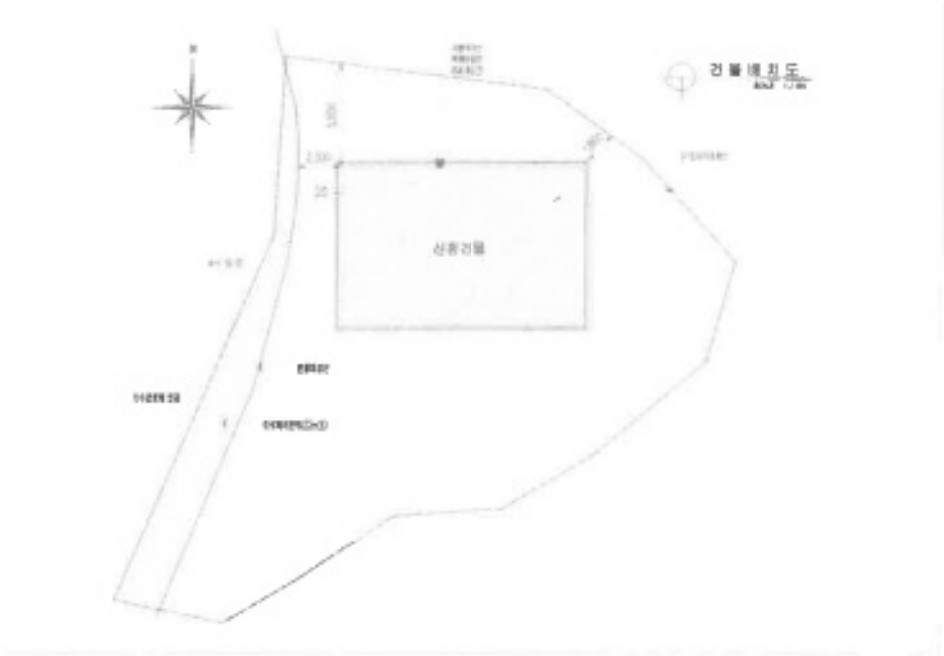

현황도	축 척 [ㅇ] 1 / 600, [ ] 1 / 1,200